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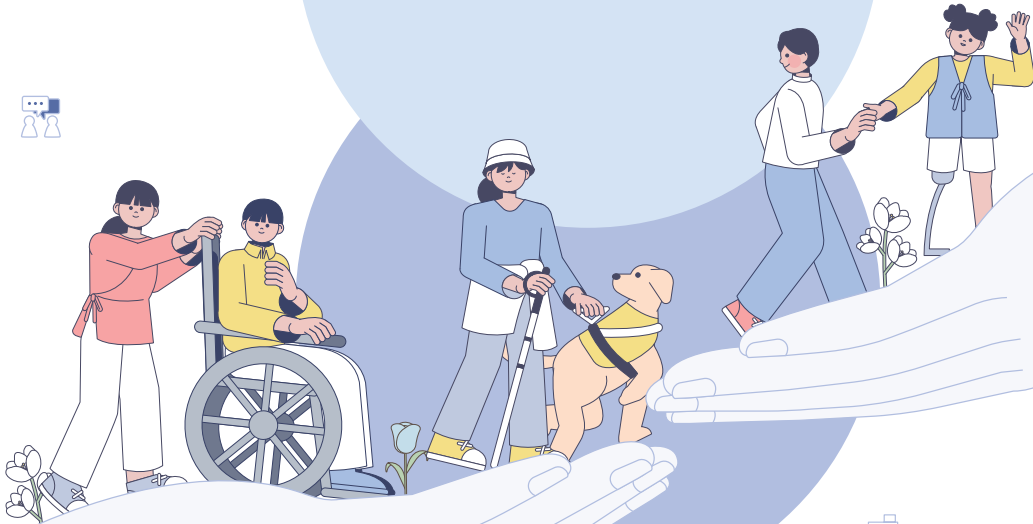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184-10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제1편

시범사업 개요

I. 시범사업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2024년 주요 추진현황	4
3. 2025년 사업개요	5
4. 2025년 추진방향 및 계획	7
5. 2025년 시범사업 추진체계	11
II. 시범사업 운영체계 조성	16
1. 계획 수립	16
2. 수행기관	16
3. 자립지원 전담인력	19
4.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23
5. 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24
6. 지역 내 환경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25
7. 자립지원위원회	27
8. 단기체험 지원	28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III.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35
1. 대상자 발굴	36
2. 자립지원 신청·접수	38
3.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	41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44
5. 대상자 선정 등 심의	47
6.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50
7. 이의 및 변경신청	51
IV. 대상자 지원	52
1. 개인별 자립 지원	52
2.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신청	60
3.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	62
4. 종결 및 사후관리	63
5. 개인정보 보호	64
6. 사고 대응체계(안) 수립	65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

V.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71
1. 시범사업 2025년 예산 개요	71
2. 세부 집행 기준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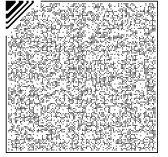
V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78
1. 전담인력 교육	78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80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81

VII. 자립지원 관련 정보	82
1. 자립지원 관련 정보	82
2. 공공임대주택 확보	91
3. 주거관련 제도	93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1. 관련서식	101
2. 부록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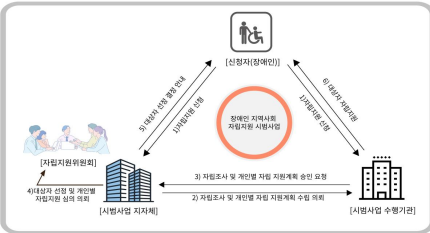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4	㉸ 2023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모형에 따라(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지원 - 시범사업 별도 예산지원사항(주택 수리비, 보조기기지원, 건강검진비 등)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복지제도·서비스, 민간 자원 연계	㉸ 2024년 시범사업 주요 추진현황 ○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모형에 따라(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지원 - 시범사업 별도 예산 지원(주거환경조성비,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비 등)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복지제도·서비스, 민간 자원 연계 ○ (대상자 확대) 보호자의 장기 부재로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1인 독립생활 발달장애인 등 재가 장애인 대상 범위 확대	대상자 확대
6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 예산 : '24년 11,734백만원(국비+지방비) (중략)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 예산 : '25년 10,666백만원(국비+지방비) (중략)	예산 변경
8	〈신설〉	나. 2025년 추진방향 ㉸ 자립신청 경로 확대를 통한 대상자 발굴 강화 ○ 누구나 자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읍면동) 및 수형기관의 자립신청 경로를 마련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시설 입소 예방 정책 추진 ○ 자립정보가 취약한 거주시설 장애인 등은 정기적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 계속 ○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시범 사업 설명회 등 홍보 추진 ㉸ 자립지원 모형 세분화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 시범사업 추가 활동지원 시간 및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다양화 *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으로 세분화 ○ 시설 입소 예방 정책 위한 의료비 및 주거환경조성비 등 탄력적 운영 - 보호자의 장기 부재 등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워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통합서비스 및 돌봄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주거 유지	자립지원 신청 경로 다각화 및 서비스 고도화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13	〈시범사업 수행기관별 추진체계도〉	〈시범사업 수행기관별 추진체계도〉	추진 체계도 변경
17	I. 시범사업 운영 준비 나.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기준) 장애인 자립 지원 또는 유사 사업 수행 이력,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 관련 연구실적, 기관 설립 목적 및 방향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 (중략)	II. 시범사업 운영체계 조성 가.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향 및 기준) - 공공성과 전문성, 협력 성과 등을 두루 갖춘 기관 -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 장애인 자립 지원 또는 유사 사업수행 이력, 지역사회 협력관계, 전문인력 자원, 장애인 자립 관련 연구실적, 기관 설립 목적 및 방향성,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 (중략) * 광역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군·구 기초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 기초지자체 지원 권역을 설정하고 선정 ** 예시 A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인 b, c, d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A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 수행기관을 선정	선정방향 확대
17	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지원) 대상자 4명당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운영비 1명 당 월40만원, 자립대상자 개별지원 사업비 * 운영비는 산출기준이며, 사업을 운영함에 필요한 경비일체(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 등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민간협력형-분리형으로 운영 시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모두 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운영(지자체 지원) ** 지자체는 분기별로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지방 재정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범사업 운영 지침 준수)	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지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자립대상자 개별지원 사업비 *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 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분리형으로 운영 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업비 지원, 광역 수행기관은 기초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및 대상자 발굴의 자립조사(육구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사용 가능	민관협력 분리형 보완 등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17	○ (선정기준) 기관설립 목적 및 방향성,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 수행실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 등 고려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사업수행 경험, 장애인 개인별 자립 지원 및 주요 성과, 거주시설 대상 자립교육 및 권익옹호 실적 간수, 자립지원 전문 인력 경력 등	○ (선정방향 및 기준) - 전문성, 협력 성과 등을 두루 갖춘 기관 -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 기관설립 목적 및 방향성,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 수행실적, 지역 사회 협력 관계,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 접근성 등 고려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실적, 장애인 자립성과 연구,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대내외 정책사업 및 연구사업 등, 종사자 전문성 (자격증 및 경력 등), 기관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등) 등	
19	라.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전문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단 사회복지사 2급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의 소지자는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 (호봉 기준)에 해당함 ○ (배치 및 보수기준) 자립대상자 4명당 1명,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기준 - 전담인력은 장애인 자립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고 대상자 장애 및 생활 정도, 주말·야간 지원, 문서처리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3. 자립지원 전담인력 가. 전담인력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 (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 (배치기준) - 자립대상자 지원유형별로 배치 - 전담인력은 자립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수행 기관에 배치하고 대상자 지원 유형, 주말·야간 지원, 문서처리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전담인력은 자립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지원 체계 조성 및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광역단위 수행기관에도 배치 가능 (광역단위 수행기관 역할 참조)	전담인력 자격기준 확대
19	〈산설〉	나. 선임 전담인력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자 (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025년 선임 전담인력 신규채용부터 적용 ○ (배치기준) - 수행기관별 최소 1인 이상의 선임 전담인력 배치하되, 전담인력 4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에서 채용 및 배치 가능	선임 전담인력 자격 도입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21	〈신설〉	마. 복무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을 위한 탄력적 근무 가능 (유연근무제 등) - 연장 및 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시간외 수당 지급 - 그 외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 출장의 경우 수행기관 운영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지자체는 출장여비와 사업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시범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립지원 전담 인력(선임 포함)은 시범사업 관련 업무 외 겸직이 불가함 - 전담인력 휴가 시 대상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간 휴가 조정,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필요사항 조치	복무관리 보완
24	〈신설〉	5. 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 (목적) 시범사업 대상자 발굴 - 시범사업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사업설명회, 안내문 발송, 관계기관(읍·면·동,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보호자, 장애인, 이웃 등의 다양한 발굴 경로를 조성하고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 ○ (자립육구 조사)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육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육구 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신청·접수 방안 수립) - 지자체와 수행기관으로 자립지원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지자체는 읍·면·동의 장애인복지 담당, 통합 사례관리 담당과 협의하여 시설 입소 희망자 및 위기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대상자 발굴 경로 다각화
36	Ⅱ. 사업운영 절차 가. 자립조사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Ⅲ.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1) 시설장애인 자립육구 조사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수행기관, 거주시설과 함께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자립육구 조사 체계화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36~ 37	- 지자체는 읍·면·동장에게 시범사업 추진을 알리고 자립을 희망하거나 시범사업이 필요한 장애인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해당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시범사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진행해야 함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시범사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자립요구 조사(자립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공문)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시설장, 신청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함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 지속 발굴을 위해 정기·수시로 조사 진행 가능 ○ (진행방식) - 시설과 자립요구 조사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의 조사일정, 조사 공간, 조사 내용 등을 협의 - 자립요구 조사는 인터뷰 방식의 대면조사로 추진 (단, 시설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자립요구 조사 시행은 수행기관 외에도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의뢰하여 공동추진하거나 지역의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 자립요구 조사로 발굴된 자립희망자는 자립지원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를 실시	
38	〈신설〉	2. 자립지원 신청·접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 절차〉  ○ (자립지원 신청) - 자립요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자 및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애인(보호자*) 등이 지자체와 수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	자립지원 신청절차 마련으로 대상자 서비스 누락 예방 등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39~ 40		○ (신청방법) 가. 방문(내방) 신청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장애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 신청 * 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방문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하여 초기 상담 및 시범사업 안내 - 초기 상담 시 자립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와 기초조사표를 작성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방문 일정을 조율 나.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직접 방문(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팩스·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전화·우편·팩스·온라인으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및 기초조사표를 확인하고 방문조사 여부를 결정해 자립조사 방문일정 조율 * 신청자가 장애인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신청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확인 후 장애인이 조사에 참여 가능한 일정으로 방문 일정 조율 ○ (신청서류) - 신분 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자립지원 신청서, 자립기초조사표 ○ (초기상담) -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자의 기본정보, 필요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범사업 및 자립 관련한 정보, 대상자 선정 과정(방문 자립조사 등)을 안내하고 신청접수를 지원 - 방문(대면) 또는 유선 등으로 자립지원 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초기상담지 기록 - 상담 시 신청자의 욕구, 신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신청자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러함에도 거부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기록 - 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담인력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기록 ○ (신청 서류 확인) - 지자체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으로 신청 받은 서류(내용)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통해 사전 확인 * 소득(기초, 차상위) 및 사회서비스(활동지원, 주간 활동 등) 등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40		○ (자립지원 대기 목록 관리)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자 중 예산 및 주거 공급 상황 등으로 신청 대기 상태 및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대기목록을 작성·관리 하여 추후 우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1	가. 자립조사 ○ (자립조사의 의의) 자립조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및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의 복지서비스(사례지원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보조기기, 주거환경 조성, 건강검진 등)신청에 필요한 자립서비스 욕구 및 선호도 정도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	3.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 ○ (자립조사) - 초기상담과 자립지원 신청서, 기초조사표를 작성한 신청자(장애인, 보호자)의 가정 또는 시설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실시 - 자립의 욕구와 지원의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종합적 의견을 담아 대상자 선정 심의 자료 및 향후 지원과정에서도 활용 ○ (수행주체)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수행기관의 시범사업 전담인력(지자체는 수행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조사시기) - 자립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일 :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접수된 일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체계화
43~44		○ (자립조사 결과보고)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후 자립조사지, 결과보고서를 완성 - 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 회의를 통해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 논의 - 수행기관은 자립신청자별 자립 신청 및 자립조사 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서와 함께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고 - 지자체는 결과보고 및 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유형 심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립지원 위원회를 개최 ○ (유의사항) - 자립조사는 개인특성, 지원 필요도 등의 복합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해야 함 - 방문 조사 일정 수립 시 신청자의 환경, 활동사항,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자의 일정에 맞춰 수립 - 방문 조사 시 조사원 증표 및 문서(공문)를 제시하고 사전 안내 후 실시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44		- 신청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전에 의사소통 방법, 주요 욕구 등을 파악하고 여행, 음악, 취미 활동, 요리 등 친근한 소재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후 자립조사를 진행 - 조사 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기록에 대한 양해, 조사 내용의 활용도를 안내 - 조사 시 상담자와 기록자 업무 분담을 통해 기록이나 업무 중심의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44~ 46	가. 계획 수립 및 동의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조사, 단기체험, 보호자 의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중략) *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가.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를 근거로 장애인(보호자)과 협의하여 자립목표(장·단기)를 설정하고 일자리, 낮 활동, 건강, 활동지원사 배정 등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 빈도 등 구체적이고 촘촘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다. 수립시기 - 자립조사 이후 라. 수립방안 - 장애인(보호자)의 장애 특성 및 지원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립목표와 지원방안 등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중략) *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 수행기관은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지자체로 공문으로 송부,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요청 * 신청서(수행기관으로 신청된 경우), 자립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결과보고서 - 지자체는 자립조사 결과보고 및 개인별 지원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한 후 자립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진행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절차 체계화
46	다. 계획 수립 유의사항 -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의 통합적 접근 및 개별지원 관점의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정기적·수시적 상담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를 형성	마. 계획 수립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의 통합적 접근 및 개별지원 관점의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정기·수시 상담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를 형성	유의사항 보완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47~49	5.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가.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자자체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적정성,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상황, 지원 유형 심의 등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 자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진행 시 조사 결과보고(기초, 심층), 단기체험 평가서 및 결과 보고서, 자립 신청서(의향확인서),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등 심의 자료 등을 준비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자립지원위원회 안전 상장에 필요한 자료 및 회의 운영 지원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적정 대상자 선정 시 결정 사유 등 보완 자료 필요 나.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심의 -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립의사, 지역사회 지원 여건,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자립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의사 확인, 지역사회 전환 적정 여부, 대상자 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자립 서비스 지원 유형, 지역전환 일정, 발굴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논의 및 결정 다. 지원유형 심의 (중략) ① (자립지원형) • (대상) 자립신청 장애인 중 일상지원과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및 낮 활동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 일자리, 활동지원, 주간활동, 이용시설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② (집중지원형) • (대상) 자립신청 장애인 중 건강과 의료,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도전적 행동, 지속적 질한 관리 등이 필요한 장애인)	5. 대상자 선정 등 심의 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유형 등 심의 - 자립 신청자의 자립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립욕구 및 지원 필요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등 심의를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나. 수행주체 - 자자체(자립지원위원회) 다. 개최시기 - 자자체 여건에 따라 개최(자립지원위원회 소분과 활용 가능, 자립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개최 가능)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라. 심의 준비자료 - 자립지원 신청자별 자립지원 신청서, 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대상자: 모니터링 담당자, 재사정 평가서, 개인별 지원회의록, 개인별 자립 지원(변경)계획서 등 2) 자립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심의 - 위원회는 신청자의 개인특성(기초조사표), 지원 필요도(자립조사), 종합평가를 참고하여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을 심의 (중략)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지원 유형】 <table><tr><th>구분</th><th>지원유형</th></tr><tr><td>자립유지형</td><td>-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기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 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td></tr><tr><td>자립지원형</td><td>-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td></tr><tr><td>집중지원형</td><td>-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 정착(시설장애인, 학대피해센터 등), 일상 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 인력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td></tr></table>	구분	지원유형	자립유지형	-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기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 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자립지원형	-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집중지원형	-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 정착(시설장애인, 학대피해센터 등), 일상 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 인력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대상자 지원유형 세분화
구분	지원유형										
자립유지형	-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기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 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자립지원형	-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집중지원형	-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 정착(시설장애인, 학대피해센터 등), 일상 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 인력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49	* 건강, 의료, 행동 지원, 집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 대상자	3) 개인별 지원계획 검토 - 자립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원 목표 설정과 지원방법 등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심의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지원의 충분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었는지 - 시범사업 지원 외 추가적인 자원연계, 부족한 자원 등의 해결방안 등 심의	
50	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대상자를 선정 -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필요시 보호자, 수행기관, 거주시설 등에게도 안내 필요	6.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①자립대상자 선정, ②지원 유형, ③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을 최종 결정 및 승인 -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서'를 공문과 함께 장애인(보호자), 수행기관에 안내하고 사설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에도 안내	선정결과 안내 명확화
51	〈신설〉	7. 이의 및 변경신청 ○ (이의 및 변경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 지원유형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신청 가. (신청인) - 자립대상자(보호자) 나. (신청방법) - 이의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이의신청 등을 접수 받은 지자체는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를 재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결정 다. (처리기한) - 이의 및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및 변경 신청 결과를 이의신청자(보호자)에게 안내	서비스 이의신청 절차 마련
52	〈신설〉	Ⅳ. 대상자 지원 가. 개인별 자립 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립대상자에게 담당 전담 인력 및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을 활용한 주거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개인별 자립을 지원 나. 수행주체 - 수행기관(전담인력,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 다. 지원방향 -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 자립지원 대상자의 상황(일자리, 건강 등)을 고려한 대응	대상자 지원 내용 변경 및 체계화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52		- 대상자의 자기 주도적인 '자립'의 관점에서 대상자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과 대상자의 욕구 및 활동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라. 지원내용 - 자립 대상자의 지원유형별(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근거해 활동지원 추가지원, 주거환경 조성, 의료지원,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지원	
53~54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명당 월평균 80시간 • 지역당 총 배정된 시간 내에서 지원모형에 따라 운영하되, 자립대상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활동지원시간의 탄력적 배정 가능(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시범사업 대상자 중 활동지원 △수급자, △수급 자격 대기자, △수급자격 불인정(판정결과 탈락), △제외대상자, △의료적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 △단기체험 대상자 등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및 전담인력 배치 1) 자립유지형 - (대상)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가능한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6명~8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2) 자립지원형 - (대상)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활동지원 추가지원) 월 20시간 이상~40시간 이하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3명~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3) 집중지원형 - (대상)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 정착 (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등), 일상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지원 등의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활동지원 추가지원) 월 200시간 이하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2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대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의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지자체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결정으로 시범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음	대상자 지원 유형별 세분화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58	〈산설〉	라)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 자립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유지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별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 수행기관은 공공임대주택, 자기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의사결정 지원, 주거 관리, 일상생활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
62~63	〈산설〉	3.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 가. 재사정 평가 - 수행기관은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따른 자립 목표 달성정도, 서비스 이행 상황 및 만족도, 자립 대상자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이상 재사정 평가를 진행해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실시 나. 수행주체 - 수행기관(개인별 지원 회의) * 필요한 경우 보호자, 활동지원사, 타서비스 사회 복지사 등 자립대상자와 연계된 관계인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진행시기 - (모니터링) 수시 * 필요에 따라 진행 - (재사정 평가) 연 1회 이상 라. 주요 내용 - (모니터링) 심리적, 신체적, 서비스, 주택 등 - (재사정 평가) 대상자의 자립 목표 달성 정도, 연계된 자원 및 서비스의 적절성, 이행상황 및 삶의 질 만족도, 대상자의 욕구 및 변화에 따른 자립 재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필요 여부 마. 진행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기점검 및 상담으로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에 따라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및 서비스 변경 등 진행 바.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 재사정 평가 후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 개인별 지원회의를 실시하여 자립대상자 목표, 지원 방법, 지원빈도, 연계자원, 지원 유형 변경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 재수립 한 개인별 지원계획서는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승인을 통해 자립대상자 (보호자)에게 최종 안내	만족도 점검 및 재사정 평가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63~ 64	〈신설〉	4. 종결 및 사후관리 가. 종결 및 사후관리 - 자립지원이 종료 되었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통해 지자체가 지원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 나. 종결 1) 종결사유 - 대상자의 타 시·군·구 전출(관할 행정 외 지역) - 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발적 서비스 거부 등 * 3개월 이상 ※ 종결은 대상자의 인정적 자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며 자립대상자 재선정 및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 필요 2) 종결절차 - 수행기관의 개별 자원회의 통해 종결사유, 대상자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결 심사회의 진행 - 수행기관은 종결심사서를 작성하여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자체가 결정 다. 사후관리 - 자립대상 지원이 종결된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종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무연고 대상자의 경우 2년) - 모니터링 상담을 진행하여 대상자의 자립상황, 건강상태, 연계된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여부, 주거생활 등 모니터링 - 종결 대상자의 사후관리 결과보고는 자립지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보고	타지역 전출 등 종결 절차 마련
64~ 65	● (개인정보 동의) - 자립조사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하므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정보 활용, 제공 범위, 목적 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가. 개인정보 보호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 자립조사(육구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립신청자(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자립대상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 2, 발달장애인법 제18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 정보 보호 보완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64~ 65		-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정보의 활용,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 필요 다. 대상자 정보의 이용·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자립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권한이 없는 내외부 관련자의 접근에 의한 정보훼손 및 유출에 대한 관리 필요 * 개인별 지원회의 등 자립조사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민감정보등의 유출 주의 - 대상자의 정보는 정보의 주체와 주 사례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개인정보의 파기 - 자립대상자의 자립지원이 종결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더 이상 불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정보 보유기관의 경각,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마. 비밀유지 - 시범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됨(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65~ 66	〈산설〉	6. 사고 대응체계(안) 수립 가. 수립 배경 - 시범사업 자립대상자에게 사고(학대, 범죄 피해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단계의 대응 체계(안) 수립 필요 나. 사전 예방 단계 1) 수행기관은 자립대상자 선정 이후 자립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이용 계약 진행 - 주택 공급 및 연계(주가전환 대상자), 자원자와의 관계, 이웃 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 (중략) 2) 안전한 주거생활 관련 교육 실시 - 범죄(전자 금융사기, 학대 등), 안전한 주거생활(가스, 소화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보건 위생관리(감염, 식중독, 약물 오남용 등) 등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구성하여 교육 - 지역 경찰서, 소방서, 권익옹호기관, 병원 등 기관 연계 교육 실시	사고 예방 및 사후 절차 마련

쪽수	2024년	2025년	비고
66		3) 사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확인 - 사기, 금전 피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및 필요 시 대상자 심층 면담 실시 다. 사후 조치 단계 - 지자체(수행기관)는 피해 상황 인지 및 우선 조치* * 경찰신고, 피해 및 가해 상황, 병원 동행, 분리 조치, 관계기관 협의 등 - 사고 시 회복을 위한 절차별 조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78~ 79	1. 시범사업 전문교육 - (세부 내용) 발달장애의 이해과정, 공적자원 연계 내용 및 과정, 자립 지원 절차의 실제, 개인별 전환 자원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개인별 자립 지원 사례 등	1. 전담인력 교육 나. 교육 내용 ○ (기본교육) - 시범사업의 이해, 자립지원 절차의 실제, 장애인복지 실천윤리, 자립조사 및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학대예방, 통합사례관리 ○ (심화교육) - 지원유형별 개인별 지원, 강점중심의 해결(사람중심교육), 주거유형별(시설, 재가, 학대)의 지원방법, 트라우마 경감, 심리정서 지지를 통한 소진예방교육(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 중간관리자 교육 등	신규 및 경력자 과정 구분

제1편

시범사업 개요

I. 시범사업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2024년 주요 추진현황	4
3. 2025년 사업개요	5
4. 2025년 추진방향 및 계획	7
5. 2025년 시범사업 추진체계	11
II. 시범사업 운영체계 조성	16
1. 계획 수립	16
2. 수행기관	16
3. 자립지원 전담인력	19
4.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23
5. 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24
6. 지역 내 환경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25
7. 자립지원위원회	27
8. 단기체험 지원	28

I 시범사업 개요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 '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회 비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제출 의무화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현 정부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국정47)로 채택하여,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추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 (목적) 지자체 자립 지원정책 간 서비스 편차*가 있어, 장애인 자립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등 중장기계획 수립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립정착금 등 지원 중이나, 편차 존재(500~1,500만원)
- (경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필요서비스 관련 거주시설 전수조사('20.9~'21.1월)
* 시설 거주 장애인 24,214명 대상 조사(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결과, 의사 표현 가능한 대상자의 약 2,000명(33.5%)이 지역사회 자립 희망
 -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자립 지원정책 방향, 서비스 지원방안 등 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21.3월~7월)
 - 단계적인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추진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월)

2 2024년 주요 추진현황

▶ 2024년 시범사업 주요 추진현황

- **(지자체 및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30개 지역* 선정
 - 지자체 주도형 2곳(경주, 화순), 그 외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등 민간기관에 위탁·지정하는 민관협력형(통합, 분리)으로 선정
 - * ('2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서산, 전주, 화순, 경주, 제주(10곳)
('23) 안산, 성남, 의왕, 익산, 군산, 거창, 인제(7곳)
('24) 전북, 충남, 구미, 영천, 안동, 강릉, 안성, 양평, 시흥, 이천, 구리, 포천, 부천(13곳)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대상자 발굴·사례관리를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장애인 4명당 1명 배치)
- **(인력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인개발원 전문역량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유도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이해와 지원 설계 교육(인재원), 자립조사 교육,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역량교육(개발원)
- **(주거 공급 및 연계)** 국토부, 지방공사, 지자체 제공 가능 물량 제공 및 지자체 확보(LH 등 협약)
- **(자립희망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①기초조사(거주시설 등을* 통한 기초 조사) → ②자립조사원 심층조사(대면 조사) → ③지역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립희망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 * 연구용역, 거주시설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등
 - 자립조사원을 활용하여 개인별 면담 및 자립조사 실시, 장애인 당사자·보호자 자립 의사에 기반
- **(자립지원위원회)** 지자체별로 지원과정 모니터링, 지역 내 자원 연계 등 협의를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장애인복지법 제32조7에 따른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등 활용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모형에 따라(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지원
 - 시범사업 별도 예산 지원(주거환경조성비, 보조기기지원, 건강검진비 등)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복지제도·서비스, 민간 자원 연계
- **(대상자 확대)** 보호자의 장기 부재로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1인 독립생활 발달장애인 등 재가장애인 대상 범위 확대

3 2025년 사업개요

제1편

시범사업
개요

비전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추진 원칙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자립 지원 ◇ 시범사업 → 법·제도·인프라 정비 → 본사업 시행
목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① 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 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예상 결과물	① 지역사회 자립대상자 발굴기준 및 지역별 대상 규모 추계 ②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자립지원 인력 역할 규정 ③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서비스 수요 등 파악 및 개발 ④ 지역사회 자립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중단연구)
시범 사업 주요 추진 방안	① 참여 지자체 공모 ■ 지자체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사업추진 의지 고려 ■ 주택 공급, 예산, 전담팀 구성 등 사업추진 여건 고려 ② 대상자 특성별 모형 마련 ■ 대상자의 장애특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립 지원모형 마련 * 시범사업 연차별 모니터링 및 모형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③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의 기존 복지제도·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 * 기초생활급여, 활동지원, 일자리, 사회서비스기관, 의료기관 연계 등 ■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원 체계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년~)

㉮ 2025년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2년부터 법* 시행일 기준 본사업 전환 전까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25.3월 공포, 공포 2년 후 시행)

○ (사업 운영 주체)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 (사업대상) 총 600명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1인 독립생활*을 하는(1년 이내 세대 분리 예정 포함) 발달장애인

* 동거인(장애인) 1인까지 가능

○ (사업규모) 시범사업예산 +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구성

- 시범사업 예산 : '25년 10,666백만원(국비+지방비)

* 국비 50%, 지방비 50%(광역:기초 매칭비율은 광역·기초 간 협의하여 결정)

- 기존 장애인 대상 사업 및 지자체 자체 지원 연계 활용

○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립 경로 조성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수립

4 2025년 추진방향 및 계획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가. 시범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 2022년 : 도입기 〉

- 지역별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선정(지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 자립지원 사업 안내·홍보와 함께 거주시설별 자립육구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 수요 파악 및 대상자 발굴·지원
- 중앙 및 지자체의 주거·고용·복지서비스 등 자원 발굴 및 연계
- 연차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관련 연구
- 시범사업 지침 마련(연차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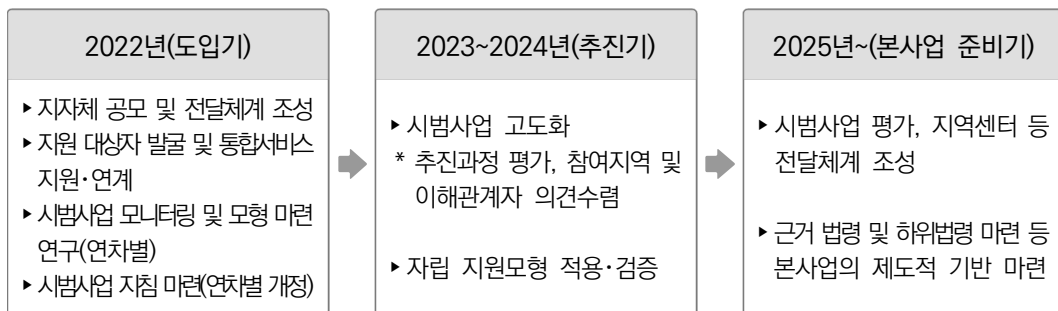
〈 2023~2024년 : 추진기 〉

- 사업추진과정 평가,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범사업 고도화
- 대상자의 육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모형 적용·검증

〈 2025년~본사업 준비기 〉

- 시범사업 평가, 지역센터 등 전달체계 조성
- 근거 법령 및 하위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차별 연구를 통한 자립 지원모형 체계화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나. 2025년 추진방향

㉮ 자립신청 경로 확대를 통한 대상자 발굴 강화

- 누구나 자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읍·면·동) 및 수행기관의 자립신청 경로를 마련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시설 입소 예방 정책 추진
- 자립정보가 취약한 거주시설 장애인 등은 정기적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 계속
-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등 홍보 추진

㉮ 자립지원 모형 세분화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 시범사업 추가 활동지원 시간 및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다양화
 - *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으로 세분화
- 시설 입소 예방 정책 위한 의료비 및 주거환경조성비 등 탄력적 운영
 - 보호자의 장기 부재 등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워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통합서비스 및 돌봄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주거 유지

다. 2025년 추진 계획(안)

구분		추진계획(안)	수행 주체
1분기	2025년 시범사업 준비	◎ 2025년 시범사업 안내 - 2025년 시범사업 변경 의견수렴 및 최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5년 지자체 시범사업 이행계획 승인 - 지자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5년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 지자체, 수행기관 대상 2025년 주요계획 및 일정 공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5년 시범사업 자문단 개최 - 3차년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모니터링 연구 결과 공유 - 4차년도 및 본 사업 계획 공유 등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분기	자립조사 교육	◎ 자립조사 교육 - 수행기관 대상으로 자립조사 운영과정, 조사원의 역할, 조사 방법, 조사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한국장애인 개발원
	시범사업 주택협의	◎ 시범사업 주택 협의 - 지자체 주택 수요 확인 및 국토부(나) 주택 공급(특화형) 협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담인력 교육 (기본)	◎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기본) -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조성하기 - 대상자 유형별(장애, 주거, 위기, 지원유형별)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의 실제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자립조사 가이드북 개정	◎ 자립조사 가이드북 개정·배포 - 시범사업 신청자(장애인)용, 조사원용으로 구분지어 개정·배포	한국장애인 개발원
	상반기 모니터링	◎ 자립지원대상자 모니터링 - 자립지원대상자 지원유형 및 주거형태 등의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등의 모의적용 연구 병행)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구분		추진계획(안)	수행 주체
3분기	2차 지침개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안) 등의 지침 개정 - 모의적용 결과 발표, 대상자 선정기준안으로 지침 개정 * 지원유형(급여량) 변경 등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자립지원위원회	◎ 자립지원위원회 - 변경 선정기준 도입 - 개정된 선정기준으로 서비스 재조정 - 선정기준 적용 결과 보고(지자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
	자립지원 인식개선	◎ 시범사업 지원사례 -영상컨텐츠 공모 - 심사위원회 조성 및 지원 사례 영상 컨텐츠 공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특화형 주택 설명회	◎ 특화형 장애인 주택 사업 협의 및 설명회 개최 - 2025년 특화형 공모안 협의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4분기	전담인력 교육(심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심화) - 워크숍 1박 2일 추진, 컨텐츠 상영회	한국장애인 개발원
	하반기 모니터링	◎ 대상자 선정기준(안) 등 모니터링 - 선정기준(안) 및 서비스 지원 적정성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 사례별 우수성과 공유 - 본 사업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5 2025년 시범사업 추진체계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가. 시범사업 유형모형

▶ 지자체 주도형

구분	내용	역할
지자체 (광역시·도)	광역 및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배분, 예산 교부 - 주택 확보 협조 및 기초단위의 시범사업 협의 등	추진 및 총괄
↓		
지자체(시·군)	☐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자립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 - 자립조사 및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지원유형 및 서비스 제공 결정 - 필요한 개인별 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연계·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개인별 서비스 직접지원	운영주체·직접사업 수행
↓		
지역 내 민간기관	지자체로부터 연계 요청된 개인별서비스 연계 및 제공(민간협력)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지자체 주도형 ▶ 장애인복지과 내에 자립지원팀 등 전담조직 설치 및 지자체에서통합사례관리 인력 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배치 관리 ▶ 자립장애인 대상 세부 서비스는 지역 민간기관과 협력(자립전문기관 등)		

Ⅱ 민관협력형

구분	내용	역할
지자체 (광역시·시·도)	광역시 및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배분, 예산 교부 - 주택확보 협조 및 기초단위의 시범사업 협의 등	추진 및 총괄
↓		
지자체(시·군)	시범사업 운영 주체	주체
↓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신규 선정 또는 지정(통합형, 분리형)	사업수행
↓		
(서비스제공기관)	자립대상자 직접지원 서비스	서비스제공

※ 민관협력형

① (통합형) 사업수행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 ▶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1개 기관에서 통합수행
- ▶ 주로 지역 간 이동이 짧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② (분리형) (광역)사업수행기관과 (기초)서비스제공기관을 분리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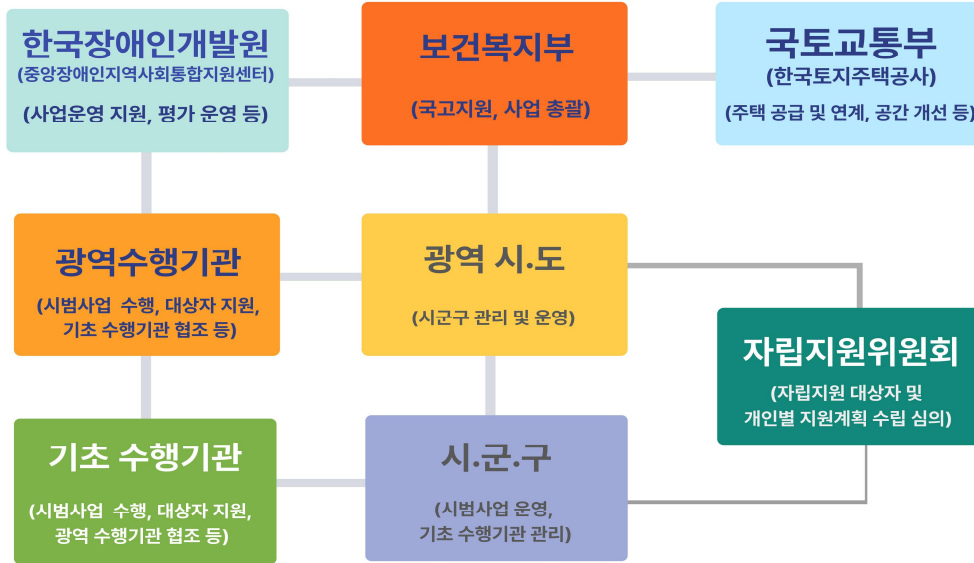
- ▶ 대상자 발굴·관리 업무와 직접 서비스제공을 각각 특화된 기관에서 별도 지원
- ▶ 관할지역이 넓고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 적합

나.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및 주체별 역할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시범사업 수행기관별 추진체계도〉



〈2025년 수행 주체별 주요 역할〉

추진주체		역 할
보건 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 시범사업 총괄 - 시범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마련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국고보조금 교부
광역지방 자치단체 (시·도)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기초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지도·감독 - 광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지역별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재정지원 - 사업시행 지자체 및 광역단위 수행기관 선정 - 광역단위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사업홍보 및 거주시설 인식개선, 대상자 연계 - 사업시행 지자체 관외지역 시설 대상자 발굴 협조 - 주거확보 추진(LH지사 협약 등) - 예산 및 실적 등에 대한 사업전반 관리·감독 • 광역수행기관 운영·관리·감독

추진주체		역 할
기초지방 자치단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관리·감독 - 기초단위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 자립지원위원회 관리 및 운영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신청 접수 경로 마련 및 정보제공 (읍·면·동 및 사회복지기관) - 자립욕구 조사, 자립조사 및 대상자 선정 결정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유형 변경, 이의신청 검토 및 승인 -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주거확보 추진(LH지사 협약 등) - 수행기관 관리· 감독
한국장애인 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센터	- 시범사업 운영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침 수립 지원, 자립조사 가이드북 마련, 시범사업 모형 검증 및 종단 연구 수행 -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지원, 수행기관 및 사업 중간 점검, 모니터링, 시범사업 컨설팅, 평가 - 공무원 및 수행기관 책임자 및 전담인력 등 전문 교육 - 자립지원 인식개선, 성과공유회 등
광역단위 수행기관	시범사업 수행기관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운영 지원 등 - 대상자 발굴 협조 - 대상자 자립주택 확보를 위한 지원(LH지역본부 및 지역공공간 협의) - 대상자 사업 전반 현황 보고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평가 -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 지역별 운영 유형에 따라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역할 분담 조정 필요
기초단위 수행기관	시범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재가장애인, 유관기관 대상 정보제공 및 자립서비스 안내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신청 접수 경로 마련 및 정보제공 - 자립욕구 조사, 자립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유형 변경 및 이의신청 지원 - 단기체험 지원 과정 계획 수립·진행 및 의뢰 - 장애인 자립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 계약 및 자립(입주)장애인 입주 계약 등 추진 - 공적서비스 및 지역사회추진 사업 연계 목록 및 방안 마련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추진주체		역 할
기초단위 수행기관	시범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 대상자 개인별 자립 지원 - 정보제공, 자립조사,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별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립생활에 필요한 관련 교육 제공(생활, 안전, 금전 등) • 장애인 입주 주택 소규모 수선 및 임대료 등 관리 •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관계기관 협력관계 조성 • 사업 관련 현황, 실적, 점검 대응, 결과보고 등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II 시범사업 운영체계 조성

1 계획 수립

가. 사업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목표치, 추진 계획 등 구체적 서술)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제출
 - * 국비: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도비 비율 협의)
 - *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제출(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목표 및 운영 계획, 자립지원 전담인력 운영 및 교육 방안,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운영체계 구성 방안 수립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홍보(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설명회 등) 및 장애인 대상 자립조사(육구조사) 및 정보제공 계획, 대상자 선정 계획 등
- 주거 연계 및 지역 내 각종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지원계획, 예산편성·집행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포함
 - ▶ [서식 36]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참조

2 수행기관

가.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대상) 지역 내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 * 예시 사회복지서비스원, 복지재단, 기타 사회복지 법인 등
- (역할) 지역 내 거주시설 관계형성 및 유지,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 내 자원조사 및 발굴 및 연계, 시범사업 주택 운영주체로 주거 관리
 - * 대상자 발굴: 정보제공, 자립조사 지원, 자립서비스 안내, 개인별면담, 개인별전환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자립지원교육, 주거전환 과정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선정방향 및 기준)

- 공공성과 전문성, 협력 성과 등을 두루 갖춘 기관
-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 장애인 자립 지원 또는 유사 사업수행 이력, 지역사회 협력관계, 전문인력 자원, 장애인 자립 관련 연구실적, 기관 설립 목적 및 방향성,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
 -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실적, 장애인 자립성과 연구,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대내외 정책사업 및 연구사업 등, 종사자 전문성(자격증 및 경력 등), 기관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등) 등
 - * 광역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군·구 기초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 기초지자체 지원 권역을 설정하고 선정
 - ** 예시 A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인 b, c, d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A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방식) 공모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춰 기관 선정

- * 유사사업·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수행기관 선정(민관협력형)

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자격) 장애인의 자립서비스 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예시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 (역할)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자립조사, 대상자 주거전환 지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에 따른 개인별자립지원 서비스, 자원 발굴 연계, 기초지자체 시범사업 주택 운영주체로 주거 관리 등
- (지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자립대상자 개별지원 사업비
 - *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 분리형으로 운영 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업비 지원, 광역 수행기관은 기초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자원 및 대상자 발굴의 자립조사(육구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사용 가능
- (선정방향 및 기준)
 - 전문성, 협력 성과 등을 두루 갖춘 기관
 -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 기관설립 목적 및 방향성,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 수행실적, 지역사회 협력 관계,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 접근성 등 고려
 - * 선정기준 지표: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사업수행 경험, 장애인 개인별 자립 지원 및 주요 성과, 거주시설 대상 자립교육 및 권익옹호 실적 건수, 자립지원 전문인력 경력,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등
- (선정방식) 공모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춰 기관 선정

▶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시 사업수행기관(제공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역할과 선정·채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기준 예시〉

구분	구분	선정 기준 내용	비고
수행 기관	자립지원 사업 수행 관리 및 실적	-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공개심사 등 지자체 여건에 맞춰 기관 선정
		- 자립지원 사업수행 관리 및 지원 실적	
		- 장애인 자립 성과 연구	
		-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체계 구축 역량 등	
	사업운영 공공성, 전문성	- 기관 설립 목적 및 공공성	
		- 주요 운영사업 전문성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자립지원 경력 등)	
		- 재정능력, 접근성,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	
제공 기관	사업 수행 경험	-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	공개심사 등 지자체 여건에 맞춰 기관 선정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사업수행 경험	
		- 장애인 개인별자립 지원 경험	
		- 자립체험 및 자립주택 운영 실적	
	사업운영 공공성, 전문성	- 자립교육 및 권익옹호 실적 건수 등	
		- 기관 설립 목적 및 공공성	
		- 주요 운영사업 전문성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문성(자립지원 경력 등)	
		- 재정능력, 접근성,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	

3 자립지원 전담인력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가. 전담인력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 경력인정 기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 자립지원 경력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 (배치기준)

- 자립대상자 지원유형별로 배치
- 전담인력은 자립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수행기관에 배치하고 대상자 지원 유형, 주말·야간 지원, 문서처리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 전담인력은 자립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지원 체계 조성 및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광역단위 수행기관에도 배치 가능(광역단위 수행기관 역할 참조)

나. 선임전담인력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025년 선임 전담인력 신규채용부터 적용

○ (배치기준)

- 수행기관별 최소 1인 이상의 선임 전담인력 배치하되, 전담인력 4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에서 채용 및 배치 가능

다. 채용

- 수행기관(광역, 기초)은 1회차 채용공고에 전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고부터 2급 이상 자격소지자의 사회복지경력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가능(단, 선임 전담인력은 완화된 자격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채용공고 후에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경력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준 조정
 - * 기 참여지역 중 전담인력 채용에 어려움(3회 이상 공고에도 미채용 등)이 있었던 경우, 1회차 공고부터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채용 가능
- 수행기관은 전담인력 신규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상황에 따라 기존 인력도 제공인력으로 가능함
 - * 전담인력 채용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을 우선채용(2인~3인), 자립대상자 확정 시 추가채용 등을 지자체와 협의
 - * 전담인력 채용 확정 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종사자 결격사유)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결격사유 확인 및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사전 조회 실시

라. 근무조건

○ (보수기준)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4급 5호봉) 및 제수당 등을 고려하여 지급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 시간외 근로 월 20시간 인정, 자립대상자를 지원할 경우 월30시간 인정(지자체는 불필요한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 선임전담인력 수당 (월 10만원),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시범사업 1년 이상 근무자 대우수당(월 5만원) 등 행정사항의 예산집행 기준 참조
 - *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보수체계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인원 추가 등 가능

○ (근무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시범사업 운영기간)

- * (고용노동부 혁신) 동 시범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 종료시점까지 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다만, 본사업이 시행된 경우 「기간제법」제5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채용

마. 복무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을 위한 탄력적 근무 가능(유연근무제 등)
- 연장 및 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시간외 수당 지급
- 그 외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 출장의 경우 수행기관 운영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지자체는 출장여비와 사업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시범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선임 포함)은 시범사업 관련 업무 외 겸직이 불가함
- 전담인력 휴가 시 대상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간 휴가 조정,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필요사항 조치

바. 업무

○ (주요역할)

- (지원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개별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전환을 목표로 지원
- (조력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주간·야간·주말 활동 등을 지원하고 정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대상자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 재산관리, 일자리, 건강, 관계 형성 등 지역 정착을 위해 조력
- (동행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 시 돌발행동·부적응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개별 습관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옹호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옹호 및 지지자 역할 수행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담인력 주요 업무 예시〉

구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업무 예시	주요목표
시범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자립욕구 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단기체험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선정절차 지원	- 자립신청 접수	자립희망 장애인 발굴
	- 초기상담 및 접수 처리	
	- 자립 대기 목록관리	
	- 방문 자립조사 및 결과보고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지원유형 심의 등)	
	- 자립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립 지원 계획 이행 준비	
개인별 자립지원	- 사전지원 서비스 및 지역 자원 발굴·연계	자립목표 달성 및 지역사회 안정적 주거생활
	- 퇴소 및 퇴거지원	
	- 주거환경조성	
	-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 종결 및 사후관리	

4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제1편

시범사업 개요

가. 시범사업 홍보

- **(홍보)** 지자체(수행기관)는 보도자료, 설명회, 간담회,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의 홍보 추진
-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지자체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 등을 관할 시·군·구, 읍·면·동,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 외에 지역 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단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지자체(수행기관)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장애인단체,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범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나. 정보 제공

- **(장애인, 보호자 등 직접 제공)**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입소자,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이해하기 쉬운 그림정보 및 소그룹으로 정보제공)
 - *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정보제공 여부 확인
 - * 지자체(수행기관)는 거주시설 방문 전 거주시설 담당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설 방문계획 마련 등 협조 추진
- **(자립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서 관내 거주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

5 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 (목적) 시범사업 대상자 발굴

- 시범사업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사업설명회, 안내문 발송, 관계기관(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유관 기관, 보호자, 장애인, 이웃 등의 다양한 발굴 경로를 조성하고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

○ (자립욕구 조사)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욕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욕구 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서식 5] 자립조사지 ▶ [서식 6]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 (신청·접수 방안 수립)

- 지자체와 수행기관으로 자립지원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지자체는 읍·면·동의 장애인복지 담당, 통합사례관리 담당과 협의하여 시설 입소 희망자 및 위기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자립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방안 예시〉

주체	자립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방안 예시
지자체	- 지자체 자립지원 신청·접수 절차 마련 • 읍·면·동 장애인복지, 통합사례 신청 창구 등을 활용하여 시설입소 신청자 또는 위기장애인 가구 중 자립희망 또는 필요 사례 발굴 협조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범사업 설명회,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통한 대상자 발굴
수행기관	- 수행기관 자립지원 신청 절차 마련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과 협조하여 시설입소자 또는 위기장애인 가구 중 자립희망 또는 필요 사례 발굴 협조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추진 - 시범사업 설명회,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통한 대상자 발굴 협조

6 지역 내 환경조성 및 안전체계 구축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가. 지역 환경조성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 사전 구축
- 자립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자립함과 동시에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준비

나. 주거지원

- (업무협약)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지사),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제공 협약추진

다. 활동지원·주간활동·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이용시설 연계) 지자체(수행기관)는 활동지원·주간활동·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목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활동 지원사 지원, 주간활동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등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수립)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의 안전 관련 위급상황 시 연락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업무분장 등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자립대상자 주택 및 수행기관 내 게시

- | | |
|---------------------|--------------------------|
| • 경찰서, 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 | • 관할 시·군·구와의 비상연락체계 |
| • 비상대피도 | • 위급상황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내용 |
| | * 안전담당자 지정 등 |

- **(위급상황 대응 등)**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주택입주자를 대상으로 위급상황*을 사전 예방 또는 사후 지원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등의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
 - *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집단발생,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학대, 사기, 사망 등
 - ** 성폭력 예방, 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보건 위생 관리(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화재 대비, 교통안전 등의 관련 교육 및 실습
- **(주택 안전 관리 점검)** 지자체(수행기관)는 화재 감지기구(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설비(가스 및 전기 차단기, 스프링클러 등)에 대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월 1회) 점검 권고
 - * [서식30]_자립대상자 주택 안전 관리 점검표 참조
- **(보고 체계)**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급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조치 후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보고받은 상황을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 [서식31]_사고보고서 참조
- **(전담인력 등 교육)**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담인력, 대상자 지원 활동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권장

교육예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안전관련 교육 시행 시 적극 참여 권고(신규 교육대상자 우선 참여 유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 실습 교육 이수 권장

- **(보험가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장애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야외 활동 시 여행자 보험 등 가입 안내
- **(의료 지원체계 확립)** 지자체(수행기관)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연계, 정기진료, 응급상황 대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확립

7 자립지원위원회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 (설치) 지자체에서 구성 및 운영 관리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별도 구성 또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7에 따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 분과) 등 활용 가능

○ (구성) 8인 이상

- 자립지원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의료인, 사업수행기관장, 지역사회 전문인력, 권익 옹호기관 담당자, 해당 시설관계자 등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참여 권고, 기존 구성인력이 있는 경우 기존 운영방식 준용
 - *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 기관 포함 필요(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의료기관 등)
 - * 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 * 광역단위 사업수행 시 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자립하는 해당 시설관계자가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운영 시기)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기능 가능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시범사업 담당공무원이 필수 참여하여 자립 심의 과정을 확인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대상자 자립 심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는 대면 회의로 운영
 - * 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은 서면회의 개최 가능
 - *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변경 및 상황 변화(건강상 문제, 법적 분쟁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립지원위원회 소분과 등 운영 가능
 - *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시 수행기관은 회의 운영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해야 함
 - * [서식18]_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참조

○ (위원회 역할)

- (자립대상자 및 지원유형 심의) 자립지원위원회는 지자체(수행기관)가 준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서비스 연계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합성 심의
 - *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자립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범사업 대상자의 선정 필요성 및 지원 유형 적합성 심의
 -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검토) 자립 과정과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추가 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사항 등 논의
 - * (모니터링) 자립대상자 정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례지원 과정 및 결과, 재사정 평가 및 지원유형 변경,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참여

8 단기체험 지원

○ (지원 목적 및 지원기관)

- 단기체험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실제 자립 전 지역사회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등에 대한 단기체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서 지원

* 단기체험 절차는 '선택사항'으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신속한 자립을 지원해야함

○ (지원 대상)

- 단기체험은 자립 의사는 있으나, 자립에 대한 경험 부족, 장기간 시설 거주와 장애 특성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당사자, 보호자) 등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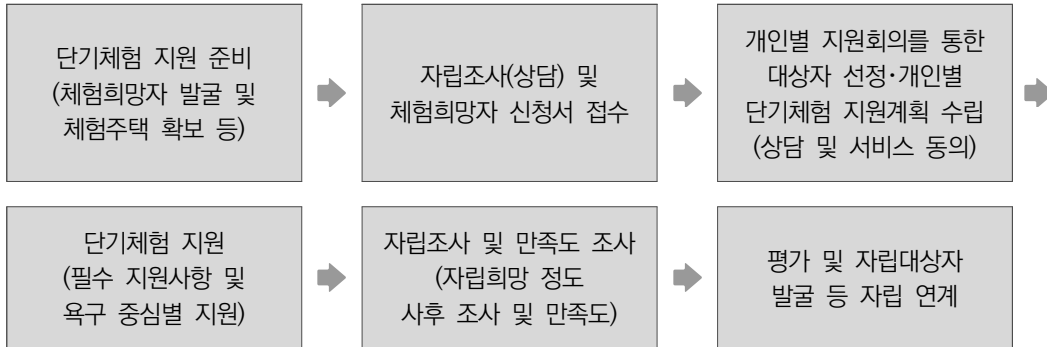
○ (기간 및 운영)

- 단기체험은 최소 1주일 이상으로 하되, 개인별 욕구 및 의사 등에 따라 연장 등 가능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연장 시 그간 모니터링 상담 결과 등을 확인하여 연장 필요성 및 실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체험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필요
- 단기체험은 필수 지원과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으로 진행하되,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 사항이 우선되어야 함(일정 및 예산 배정 등)
- 단기체험은 집단 체험 지원 방식 지양, 1:1개인별 맞춤형 단기체험으로 지원

〈단기체험 지원 사항 예시〉

구분	필수 지원 사항	개인별 욕구 중심 지원 사항
목표	- 다양한 접근의 단기체험을 통해 자립의 의미 및 장애인 자립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함	- 개인별 맞춤 단기체험을 통해 자신감 및 자기결정 능력 향상 등의 자립 역량강화 도모
내용	- 자립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및 교육(활동지원 서비스, 자립주택, 자립정착금, 건강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장애인콜택시) 이용, 근린생활시설, 주민 센터 복지상담 등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 자립한 동료장애인 집 방문 및 동료상담	-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선호하는 활동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 : 자유시간 갖기, 친구와의 맛집 탐방, 콘서트 관람 등)
평가	- 자립기초조사, 심층조사 -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 인터뷰 1회 이상 - 체험 장애인의 사전·사후 자립조사 및 평가	-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지원방식으로 평가(동료와 함께 체험 희망, 대상자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 (지원절차)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 (지원 준비)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목적의 주택 마련, 자립체험 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지역 자원 연계
- 체험주택은 자립 주택 공실 활용, 관내 거주시설 체험홈 활용 또는 지자체(수행 기관)에서 마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상담, 자립체험 프로그램 등 연계 등

○ (신청서 접수)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결과 또는 거주시설 및 보호자 등에 의한 의뢰 등으로 단기 체험 희망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
- * [서식3]_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1]_단기체험 신청서 활용

○ (단기체험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은 장애인의 육구 정도, 예산과 자원(인력,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단기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별 지원 회의 개최
- 단기체험 대상자는 수행기관 개인별 지원회의로 선정하여 지자체 안내
- * [서식7]_개인별 지원 회의록 활용

○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 수립 및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 수행기관은 체험기간, 지원 내용 등 개별 사정을 통한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
- * 수행기관은 필수지원 사항, 개인별 육구 중심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 계획 수립
- * 필수지원(자립교육-활동지원서비스, 금전관리, 자기관리 등), 육구 중심 지원(당사자 선호 활동)

-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보호자, 시설담당자간의 협의 및 지원 회의 추진
 - * 장애인, 보호자, 시설담당자는 수립된 계획 일정으로 서비스 동의 등
 - * [서식12]_개인별 단기체험 지원계획서 및 동의서, [서식13]_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활용

○ (단기체험 지원)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장애인의 낮 활동, 서비스 연계 과정 등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
 -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등
- 안정적인 단기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대응체계 마련 및 전염병 예방 수칙 등 안내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수행기관은 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로 자립 체험 과정 및 결과를 평가
 - * 단기체험 대상자 : 자립에 대한 이해, 단기체험 만족도, 자립 체험 전과 후의 비교 등
 - *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 : 단기체험 지원 관련 의견,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변화 등
 - * [서식14]_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서식15]_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활용
- 단기체험 평가 시 자립조사를 진행하여 자립 의사 확인, 체험 만족도 등의 평가회의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 * 보호자, 시설관계자 등 체험 결과 공유 및 향후 지원방향(자립, 체험연장 등) 논의
- 자립의사가 확인된 장애인은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립대상자로 선정 필요
 - * [서식5]_자립조사지, [서식6]_자립조사 결과보고서, [서식7]_개인별 지원 회의록 [서식16]_단기체험 결과보고서 활용

○ (고려사항)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지원 전 체험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건강관련 정보**를 시설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지원 내용 결정
 - * 의사소통, 건강상태, 도전적 행동, 보조기기 사용 여부, 지역사회 활동 경험 등
 - **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질병 이력을 고려한 약물복용, 식단, 생활습관 등
 - *** 개인정보(주민번호, 질병 이력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 필요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주의 사항, 체험기간 내 지켜야 할 공동수칙,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 등의 지원인력 및 수행기관 소개, 주택 내 가구 및 가전 사용 방법, 체험 일정 등 안내

- 수행기관은 단기체험 과정 중 주말 또는 야간 지원 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인력 배치 필요

* 활동지원, 단기체험비, 지원인력, 운영비, 체험주택 공간 임대료 등 제3편 행정사항 및 지원사항의 예산 집행 기준 참조

제1편

시
범
사
업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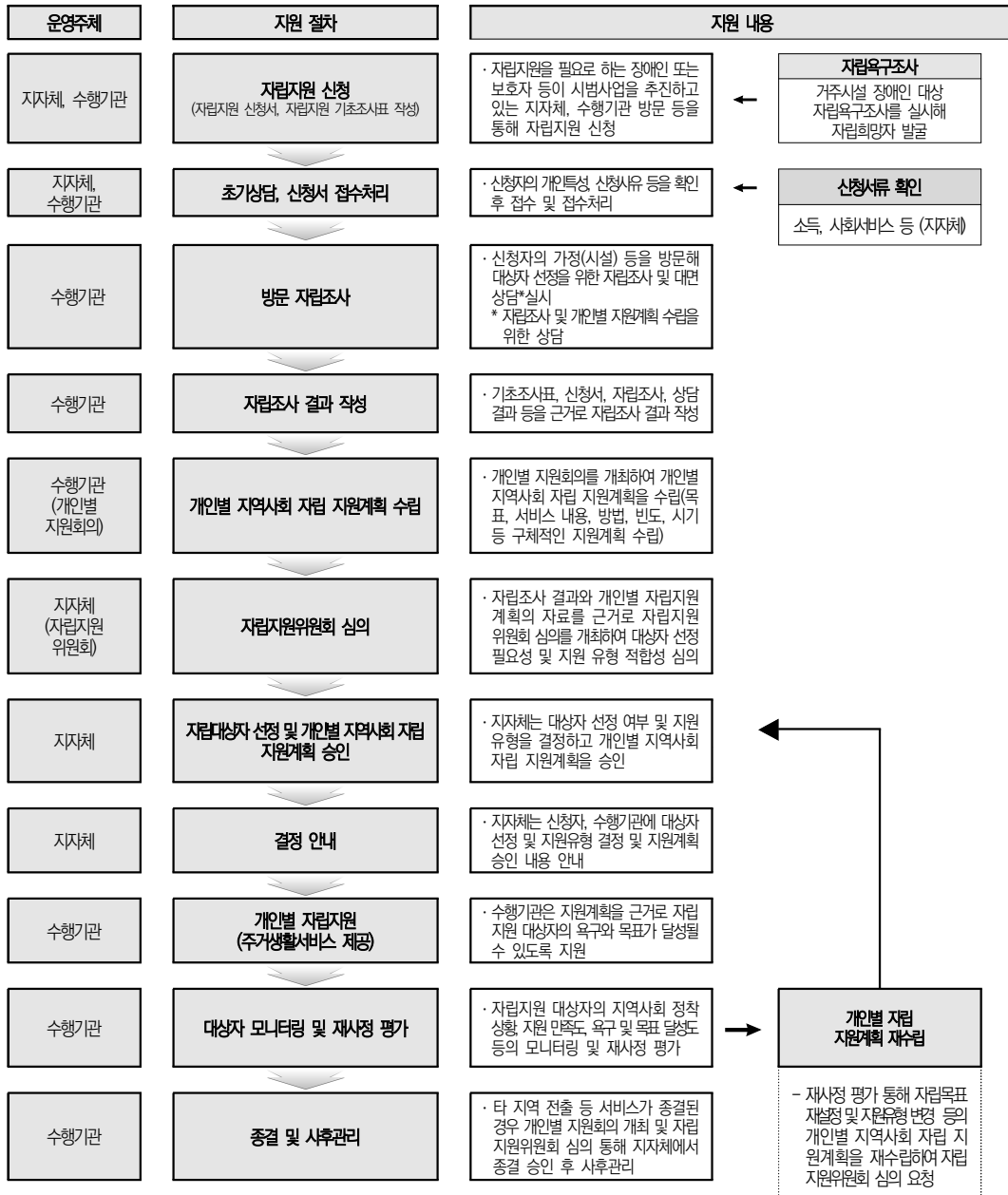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Ⅲ.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35
1. 대상자 발굴	36
2. 자립지원 신청·접수	38
3.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	41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44
5. 대상자 선정 등 심의	47
6.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50
7. 이의 및 변경신청	51
Ⅳ. 대상자 지원	52
1. 개인별 자립 지원	52
2.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신청	60
3.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	62
4. 종결 및 사후관리	63
5. 개인정보 보호	64
6. 사고 대응체계(안) 수립	65

III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대상자 발굴

가. 대상자 발굴

- **(시설)**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등 집단적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를 발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권고)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해 시범사업으로 연계
- **(재가)**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연계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을 발굴 및 지원

1) 시설장애인 자립욕구 조사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수행기관, 거주시설과 함께 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거주시설 등 협조 필요기관에 공문발송 및 안내
 -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함께 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시범사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거주시설(장, 종사자)은 지자체(수행기관)에서 자립조사 추진 시 상담실 제공 및 종사자 조사 참여 등 협조
 - 자립욕구 조사(자립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공문)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시설장, 신청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함
 - 지자체(수행기관)는 대상자 지속 발굴을 위해 정기·수시로 조사 진행 가능
- **(진행방식)**
 - 시설과 자립욕구 조사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의 조사일정, 조사 공간, 조사 내용 등을 협의
 - 자립욕구 조사는 인터뷰 방식의 대면조사로 추진(단, 시설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자립욕구 조사 시행은 수행기관 외에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의뢰하여 공동추진 하거나 지역의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 자립욕구 조사로 발굴된 자립희망자는 자립지원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립 조사를 실시

2)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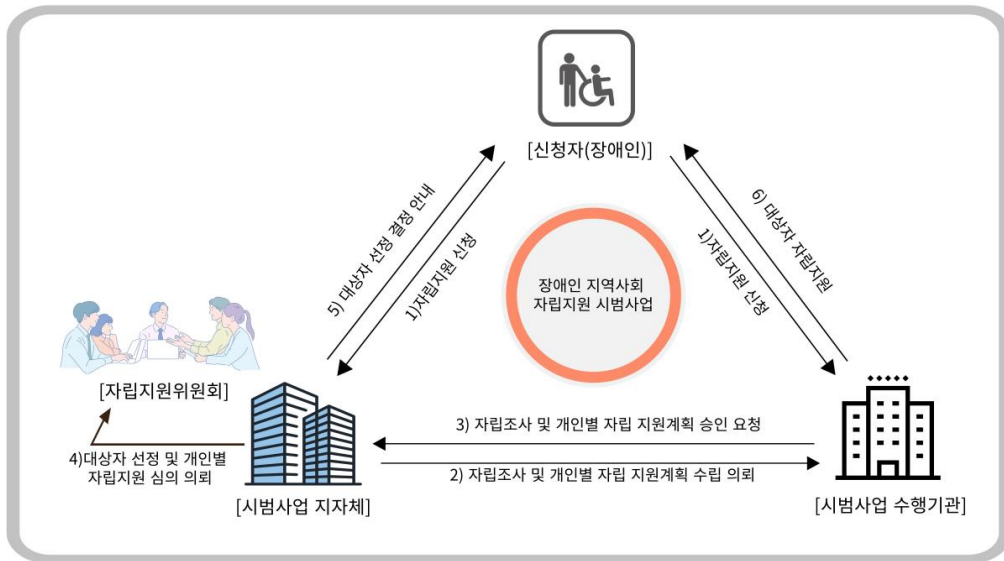
- 지자체는 타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과의 협력, 입소 대기 장애인 현황 관리 등을 통해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 적극 발굴
- 시범사업 지자체(수행기관)는 발굴된 재가장애인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주거상황, 보호자 돌봄상황 등을 확인하여 종합의견 정리

나. 자립희망자 발굴 및 관리

- (자립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목록화 하고 자립 신청서 접수 및 자립지원위원회 상정, 전환 지원 일정 등을 준비
- (자립 비희망자)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사유 등과 함께 자립비희망 장애인을 목록화하여 필요시 상담과 단기체험을 통해 자립의사 재확인

2 자립지원 신청 접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 절차〉



○ (자립지원 신청)

- 자립욕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자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애인 (보호자*) 등이 지자체와 수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

○ (신청대상)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1인 독립생활*을 하는(1년 이내 세대 분리 예정 포함) 발달장애인

* 동거인(장애인) 1인까지 가능

○ (신청방법)

가. 방문(내방) 신청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장애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 신청
 - * 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방문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하여 초기 상담 및 시범사업 안내
- 초기 상담 시 자립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와 기초조사표*를 작성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방문 일정을 조율
 - *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지원 할 수 있음

나.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직접 방문(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팩스·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전화·우편·팩스·온라인으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및 기초조사표를 확인하고 방문조사 여부를 결정해 자립조사 방문일정 조율
 - * 신청자가 장애인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신청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확인 후 장애인이 조사에 참여 가능한 일정으로 방문 일정 조율

○ (신청서류)

- 신분 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신청서,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 ※ [서식1]_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신청서, [서식3]_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_자립지원 기초조사표

○ (초기상담)

-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자의 기본정보, 필요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범사업 및 자립 관련한 정보, 대상자 선정 과정(방문 자립조사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를 지원
- 방문(대면) 또는 유선 등으로 자립지원 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초기상담지 기록
- 상담 시 신청자의 욕구, 신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 신청자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러함에도 거부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기록
- 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담인력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기록

○ (신청 서류 확인)

- 지자체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으로 신청 받은 서류(내용)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통해 사전 확인

* 소득(기초, 차상위) 및 사회서비스(활동지원, 주간활동 등) 등

○ (자립지원 대기 목록 관리)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자 중 예산 및 주거 공급 상황 등으로 신청 대기 상태 및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대기목록을 작성·관리 하여 추후 우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서식8]_자립지원 대기 목록 대장

3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

○ (자립조사)

- 초기상담과 자립지원 신청서, 기초조사표를 작성한 신청자(장애인, 보호자)의 가정 또는 시설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실시
- 자립의 욕구와 지원의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종합적 의견을 담아 대상자 선정 심의 자료 및 향후 지원 과정에서 활용

※ [서식5]_자립조사지, [서식6]_자립조사 결과보고서

○ (수행주체)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수행기관의 시범사업 전담인력(지자체는 수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조사시기)

- 자립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일 :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접수된 일자

○ (자립조사 운영 절차)

〈자립조사 운영 절차〉

조사절차	세부 내용
자립조사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주최의 자립조사 교육 이수 및 자체 수행기관 교육 운영
자립조사 계획 수립	-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립조사 일정 등 운영 계획 수립
조사 대상자 목록 등 자료 준비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참여 희망 장애인을 목록화하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AAC자료 등을 준비
방문 자립조사	-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
자립조사 등 결과보고 및 지자체 송부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지와 결과보고,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신청서, 기초조사표, 개인정보동의서)를 지자체에 문서 송부(공문 첨부하여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요청)

○ (조사 운영 방식 및 원칙)

- 자립조사 전 자립조사교육*을 이수

* 장애의 이해, 시범사업의 이해, 조사 방법 등 자립조사 관련 전문 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실시), 신규입사 등으로 자립조사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교육 실시(교육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문서화)

- 자립조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자의 초기상담, 신청서, 기초조사표의 내용을 인지하고 방문 조사일정을 조율

- 자립조사는 2(조사원):1(장애인) 원칙으로 진행

- 자립 욕구 확인 및 주거, 돌봄, 건강, 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 선호도와 필요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면상담으로 진행

- 자립조사 시 장애인 상담 외에도 보호자 및 담당 생활지도원과 상담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

- 자립조사는 거주시설(원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 가능

* 시설 또는 원가정 밖의 편안한 공간에서 면담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AAC**도구, 조사지, 자립조사 가이드북, 시범사업 안내문, 자립 관련 영상자료물 등을 충분히 준비·활용해 신청자가 정보 이해와 습득이 어렵지 않도록 함

* 자립조사 시 보호자, 시설 담당 생활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AAC : A(Augmentative): 말을 보완하거나 A(Alternative):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 C(Communication): 의사소통한다는 뜻으로, 장애인들이 그림이나 글을 가리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안대체 의사소통'을 뜻함

- 자립조사지 및 결과보고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자립욕구, 가구 특성, 돌봄상황 등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함

○ (자립조사지 구성)

- 선호도, 자립욕구, 지원 요구 및 필요도

항 목	내 용
장점 및 알아보기	- 장점, 당사자 알아보기 - 좋아하는 것(음식, 취미, 활동, 교육, 사람)
자립욕구	- 어떤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당사자 지원하기	-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자립조사 결과보고)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후 자립조사지, 결과보고서를 완성
- 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 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논의
- 수행기관은 자립신청자별 자립 신청 및 자립조사 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서와 함께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고
- 지자체는 결과보고 및 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유형 심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립지원위원회를 개최

○ (유의사항)

- 자립조사는 개인특성, 지원 필요도 등의 복합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해야 함
- 방문 조사 일정 수립 시 신청자의 환경, 활동사항,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자의 일정에 맞춰 수립
- 방문 조사 시 조사원 증표 및 문서(공문)를 제시하고 사전 안내 후 실시

〈자립조사원(전담인력) 증표 예시〉

〈앞면〉

(앞쪽)

제 호

자립지원 전담인력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000**

54mm×85mm[백상지 150g/㎡]

〈뒷면〉

(뒤쪽)

자립지원 전담인력 신분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000
수행기관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국이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전에 의사소통 방법, 주요 욕구 등을 파악하고 여행, 음악, 취미활동, 요리 등 친근한 소재부터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립조사를 진행
- 조사 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기록에 대한 양해, 조사 내용의 활용도를 안내
- 조사 시 상담자와 기록자 업무 분담을 통해 기록이나 업무 중심의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시 자립 의사가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안내와 설명을 진행했을 때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를 작성
 - * 긍정·부정적 욕구(‘좋다, 싫다’, ‘예’, ‘아니오’ 등), 생각, 표현 등을 언어적·비언어적(눈빛, 몸짓 등) 형태로 표현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당 장애인을 장기간 가까이에서 관찰했거나 지원했던 사람(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의 의견 등 고려 필요
-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는 자립조사 시 의향을 확인한 조사원 2인이 작성하고 서명(자립조사 후 첨부 자료)
 - ※ **[서식2]** 의사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조사원(자립의사를 확인한)이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접수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가.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를 근거로 장애인(보호자)과 협의하여 자립목표(장·단기)를 설정하고 일자리, 낮 활동, 건강, 활동지원사 배정 등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 빈도 등 구체적이고 촘촘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 ※ **[서식17]**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나. 계획 수립 주체

- 수행기관(개인별 지원 회의)

*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자립대상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개인별 지원회의를 통해 수립

** 운영주체별 모형의 지자체 주도형과 민관 협력형에 따라 작성 기관 구분

〈개인별 지원 회의〉

- (운영주체) : 수행기관
- (역할) : 신청자 및 자립대상자의 자립조사 계획,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변경, 이의신청 논의 등), 모니터링, 재사정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수행기관 회의체
- (구성) : 수행기관 장, 선임 전담인력, 전담인력
 - * 선임 전담인력이 부재인 경우 수행기관의 중간관리자가 참여 가능하며 수행기관 여건, 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자립대상자의 사고, 민원 등 고난이도 사례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설치 가능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운영주체별 개인별 전환지원 계획 수립 기관〉

구성요소	지자체 주도형	민관협력형	
		통합운영	분리운영
사업운영 총괄		〈지자체〉 ▶ 사업운영 주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자체〉 ▶ 사업운영주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대상자 발굴	〈지자체〉 ▶ 사업운영주체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전담인력 채용 ▶ 자립조사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사업수행기관〉 * 위탁 및 지정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지원 ▶ 자립조사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심의지원 ▶ 전담인력 채용 및 자체교육, 사업관리 및 서비스 시행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 ▶ 모니터링, 재사정평가,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등	〈사업수행기관〉 * 위탁 및 지정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지원 ▶ 자립조사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심의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 전담인력 자체교육, 사업관리 〈제공기관〉 ▶ 전담인력 채용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 ▶ 모니터링, 재사정평가,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등

※ [서식기] 개인별 지원 회의록

다. 수립시기

- 자립조사 이후

라. 수립방안

- 장애인(보호자)의 장애 특성 및 지원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립목표와 지원방안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 자립목표는 자립지원 신청대상(장애인)의 의사와 결정에 근거한 장·단기 계획으로 수립
 - * 자립조사 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신청대상의 의사 및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담 여부 결정)
-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단기체험, 보호자 의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자립 신청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 자립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 시 자립신청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유형과 지원 사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특히, 수행기관은 지역 내 제공 가능한 공적자원 및 민간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여 수립
 - *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 수행기관은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지자체로 공문으로 송부,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요청
 - * 신청서(수행기관으로 신청된 경우), 자립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결과보고서
- 지자체는 자립조사 결과보고 및 개인별 지원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한 후 자립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진행

마. 계획 수립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자립 신청 장애인의 통합적 접근 및 개별지원 관점의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정기·수시 상담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신뢰 관계를 형성
- 자립 신청 장애인의 삶의 주거선택지를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하도록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안
- 주거 형태, 장소 등에 대한 자립신청 장애인의 욕구 고려하여 수립
 - * **예시** 독립적 주거, 아파트, 살고 싶은 동네, 활동지원사, 이용서비스, 이용기관 등
- 자립신청 장애인의 선택 내용과 선택 방식, 선택하는 환경과 맥락을 기록(고르기, 가리키기, 가져가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 등을 이해)

5 대상자 선정 등 심의

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유형 등 심의

- 자립 신청자의 자립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립욕구 및 지원 필요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등 심의를 위한 자립지원 위원회 개최

나. 수행주체

- 지자체(자립지원위원회)

다. 개최시기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최(자립지원위원회 소분과 활용 가능, 자립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개최 가능)
- 자립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진행

라. 심의 준비자료

- 자립지원 신청자별 자립지원 신청서, 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 *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재사정 평가서, 개인별 지원회의록,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변경)계획서 등
 -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자립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 및 회의 운영 지원

마. 심의내용

1) 자립조사의 충실성 및 적정성 사전 점검

- 위원회는 대상자 선정 심의 전 자립조사의 충실성, 자립욕구 및 필요도 등의 파악, 신청자 의사반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
 - * 자립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사전점검표(안) 참고

〈자립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사전점검표(안)〉

구분	연번	주요항목	여	부
자립 조사	1	자립조사의 사전 준비과정(자립조사 교육, AAC 도구 준비, 조사계획 수립 등)이 충실했는가?		
	2	자립조사를 장애인과 신청인(본인이 아닌 경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되었는가?		
	3	자립조사가 장애인의 상황(장애 특성, 의사소통 방법, 가구 환경 등)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 되었는가		
	4	자립조사가 장애인의 자립 욕구 및 필요서비스 등이 충분히 파악 되었는가		
	5	자립조사지 및 결과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되었는가		
개인별 지원 계획	6	개인별 지원계획이 자립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의 욕구, 지원 필요도, 시급성 등 장애인(보호자)의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수립 되었는가		
	7	장애인의 자립목표가 달성 가능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있게 수립 되었는가		
	8	전담인력의 지원방법, 빈도 등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9	장애인의 지원계획 및 연계 자원(서비스)등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 유지가 가능하도록 수립 되었는가		
	10	대상자의 만족도, 정착상황, 건강관리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2) 자립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심의

- 위원회는 신청자의 개인특성(기초조사표), 지원 필요도(자립조사), 종합평가를 참고하여 대상자 선정의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을 심의
- 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특정 장애유형 쏠림 등을 방지하여 사례별 자립과정을 다양하게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립 신청 장애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춰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

【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지원 유형 】

구분	지원유형
자립유지형	-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자립지원형	-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집중지원형	-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 정착(시설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등), 일상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로 전담인력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서식9]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참고표 및 활용기준 설명 참조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개인별 지원계획 검토

- 자립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원 목표 설정과 지원방법 등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심의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지원의 충분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었는지
- 시범사업 지원 외 추가적인 자원연계, 부족한 자원 등의 해결방안 등 심의

6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 자립대상자 선정 등 결과 안내

-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①자립대상자 선정, ② 지원 유형, ③개인별 지원계획을 최종 결정 및 승인
-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계획서’를 공문과 함께 장애인(보호자), 수행기관에 안내하고 시설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에도 안내

〈시범사업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절차〉



7 이의 및 변경신청

- (이의 및 변경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 지원유형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신청

가. (신청인)

- 자립대상자(보호자)

나. (신청방법)

- 이의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이의신청 등을 접수 받은 지자체는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 자립조사를 재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결정

※ [서식20]_이의신청서 참조

다. (처리기한)

- 이의 및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및 변경 신청 결과를 이의 신청자(보호자) 에게 안내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IV 대상자 지원

1 개인별 자립 지원

가. 개인별 자립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립대상자에게 담당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을 활용한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개인별 자립을 지원

나. 수행주체

- 수행기관(전담인력,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

다. 지원방향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 * 자립지원 대상자의 상황(일자리, 건강 등)을 고려한 대응
- 대상자의 자기 주도적인 ‘자립’의 관점에서 대상자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과 대상자의 욕구 및 활동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라. 지원내용

- 자립대상자의 지원유형별(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개인별 지원 계획에 근거해 활동지원 추가지원, 주거환경 조성, 의료지원,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및 전담인력 배치

1) 자립유지형

- (대상)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업,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정기적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6명~8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2) 자립지원형

- (대상)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로 전담인력의 사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활동지원 추가지원) 월 20시간 이상~40시간 이하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3명~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3) 집중지원형

- (대상)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정착(시설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등), 일상생활 지원,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지원 등의 필요도가 높아 전담인력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활동지원 추가지원) 월 200시간 이하
-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2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 대상자 지원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자립유지형	- 시범사업 지원(필요 시) + 지역사회 자원 연계(필요 시) + 자립대상자 6명~8명당 전담인력 1인 배치
자립지원형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이하 활동지원 추가지원 + 시범사업 지원(필요 시) + 지역사회 자원 연계(필요 시) + 자립대상자 3명~5명당 전담인력 1인 배치
집중지원형	- 월 200시간 이하 활동지원 추가지원 + 시범사업 지원(필요 시) + 지역사회 자원 연계(필요 시) + 자립대상자 2명당 전담인력 1인 배치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대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의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지자체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결정으로 시범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음

※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_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참조]

» 의료비 지원

- 자립대상자 지원 필요도에 따라 지원
- 1인 최대 40만원 지원
- 자립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의료적 지원으로 서비스종합조사,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등 검사항목 발생 시 비용지원

» 보조기기 지원

- 신규 자립대상자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지원
-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 및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와 사례관리 서비스 등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보조기기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기기 구매 지원

* 정부지원보조기기 지원 품목 이외의 장애상태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 가능하며, 본인 사용 여부 등 자체 점검 필수

» 안정적 주거지원

가) 주거환경조성비 지원

- 신규 자립대상자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지원
- 1인 최대 600만원 지원
- 수행기관은 확보된 주거지 또는 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신규 자립대상자 주거환경 조성 필요에 따라 지원

- 자립대상자가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시설장애인 주거전환 등) 대상자 입주 전·후 주택 개선 및 보완사항을 확인해 주택 공급사업자 (LH, 지역공사 등)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 ▲경사로, ▲단차 제거, ▲미닫이문, ▲바닥 미끄럼방지, ▲세면대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소음차단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
- 수행기관은 자립대상자의 안전과 보완장치가 필요한 경우 자립대상자와 상의하여 설치
 - * 가스차단기, 도어록, 방범창, 경고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수행기관 의뢰) 등
 -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 내 장애인편의증진 시설 설치
 -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체계 구축 및 소방 안전시설 설치

나) 주택 공급 및 연계

- 자립대상자 중 주거전환 지원 필요도에 따라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 경우 주거 전환이 필요한 자립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연계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전환에 필요한 주택 물량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입주 계획 등을 수립
- 지자체(수행기관)는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시범사업 대상자 중 주거 전환이 필요한 대상자가 입주하도록 계약 추진
- 지자체(수행기관)는 자립대상자의 주택 계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무주택자, 소득기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추진
 - * 입주할 장애인의 정서적인 사유(단독생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등)로 동거인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주택운영기관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와 계약 후 대상자에게 제공 및 임대료 납부, 주택관리 등 주택 전반에 관한 사안을 관리
- 지자체(수행기관)는 지역적 상황으로 공공임대주택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세자금 지원 등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주거 확보
 - ※ 자자체별 주택공급 연계 사례

- 지자체별로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주택공급 방안, 임대보증금 지원 사항 등 지자체 사업 연계·활용
 - * ▲ LH-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 지역 내 민간임대아파트(전세보증금 지원), ▲ 민간임대주택(빈집 임차 및 리모델링 후 임대) 공급 등
- 주택 공급 시 공급사업자(LH, 지역공사 등)와 지자체 간 별도 임대조건* 설정 협의
 - * **예**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 자립장애인으로 지정, △입주지정기간 연장, △계약금(개별 입주 시점에 보증금 납부), △입주 전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주택 공급 및 임대조건 협약사례

□ 지자체-LH지역본부-수행기관 3자 협약에 따른 주택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등 LH매입임대주택 177호
- (공급사업자) LH지역본부
- (주요 협약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12개월(다량의 주택이 공급되어 입주 시기가 다양한 경우)
 - 세대별 개별 입주 시 보증금 수납
 - 커뮤니티 공간(공공편의시설) 무상 공급(일부 지역)
 -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 자립장애인으로 지정

□ 지자체와 지역공사 간 주택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다가구주택 10호
- (공급사업자) 지역공사, LH지역본부
- (연계사항)
 - 공급사업자와 기초지자체장의 주택 임대 계약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 지자체 지원

□ 전세주택 공급 사례

- (주택유형 및 지원호실) 아파트, LH전세임대 3호
- (공급사업자) LH지역본부
- (연계사항)
 - 장애인 개인 전세계약 및 LH전세임대대여금 7천만원

다) 주거전환 지원

- 수행기관은 자립대상자 중 주거를 전환 하는 경우(시설장애인, 학대피해실태 등)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구매, 전입신고, 급여관리자 지정, 가스·인터넷 신청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 대상자 자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별 주거전환 지원 예시〉

전환 절차	지원 내용
전환 준비	1. 대상자의 자립 안내 (사는 곳, 동네 이름, 사회서비스 안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등) 2. 자립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자립 선배 주택 방문, 독립 주거 가정 방문, 자립 동영상 시청 등) 3. 대상자의 준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 찾기, 사는 공간을 희망대로 공간 꾸미기 연습 등)
주거 전환	1. 사전지원 가. 가전제품 구입하고 배치하기 (대상자와 함께 주택가전과 집기를 구매하고 배치해보기) 나. 주택환경 조성 (대상자와 함께 살 곳에 대한 주택 환경 조성 - 도어락 설치, 방범창, 씽크대, 가스안전 장치, 보일러 확인 등) 다. 사회서비스 및 자원연계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 * 장애재판정은 필수가 아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신청 재산관리, 식사지원, 주간활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전연계 가능한 서비스 신청 - 의사결정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공공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의 신청 고려 - 주택 계약, 입주 청소, 편의시설 주택개조 등 * 거주시설 퇴소 절차 지원(시설장애인의 경우) - 대상자 개인 물품 등 인수인계(통장 및 도장, 카드, 개인 자료 등) - 대상자 건강 관련 인수인계(건강진단서, 소견서, 약복용, 이용병원 정보, 검진 일정) - 대상자 특성 관련 인수인계(장애특성, 습관, 식사 상태 및 지원, 가족 상황, 지인 관계, 선호 활동 등) -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등)은 반드시 확인 2. 입주 지원 가. 이사지원 - 이사업체 선정 및 날짜 조율, 이사과정 안내, 짐싸기, 집 정리 등 나. 전입신고 - 주택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등 신청 다. 조력자그룹 형성 - 지원기관, 제공인력, 활동지원사 등 조력자그룹 면담 및 당사자 이해 등
안정적 주거생활 유지	1.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보건의료 연계, 기관서비스 연계 등 2. 서비스 자체 모니터링 - 대상자의 자립생활 만족도, 주거환경, 지역 내 관계 형성 정도, 서비스 연계 현황, 건강 상태 등)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라)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 자립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유지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 생활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별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 수행기관은 공공임대주택, 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의사결정 지원, 주거 관리, 일상생활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별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대상	전담인력 지원	지원 내용(예시)
자립 유지형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에서 직업,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나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 자기관리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6명~8명	- 의사결정, 옹호, 금전 등의 자기관리 지원 - 복지서비스 이용 - 주거관리 및 유지 - 의사결정 지원, 금전관리 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등
자립 지원형	직업, 복지서비스, 자기옹호와 건강, 자기관리 등의 필요도 및 지역사회 활동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3명~5명	- 직업, 복지서비스, 의사결정, 옹호, 건강, 금전관리, 일상 등 자기관리 지원 - 복지서비스 이용 - 주거관리 및 유지 - 의사결정 지원, 금전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일상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등
집중 지원형	주거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초기정착, 일상생활 및 주거 생활에 상당부분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2명	- 주거전환의 초기정착 집중지원 - 주택계약, 이사, 주택관리, 주거관리 및 유지 서비스 - 의사결정, 옹호, 건강, 금전, 일상, 사회생활 등의 집중지원 - 의사결정 지원, 금전관리 지원,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주거생활서비스 예시〉

서비스 분류	상세 분류	서비스 내용
일상 생활	신체활동지원	· 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보장구 관리
	가사활동지원	· 식사관리, 가사유지관리, 의복관리
	금전관리지원	· 수입 지출 관리 지원, 통장·도장·카드 보관 지원
	의사소통지원	· 의사소통방식 확인, 의사확인이 어려운 이용자 소통지원
	개인안전 관리	· 안전한 환경구성, 안전관련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안전을 위한 점검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 입주 전 확인사항,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사회 참여	낮 활동 지원	· 복지시설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 종교 활동, 여가 활동
	관계지원	· 자조모임, 가족관계 지원, 친구관계 지원
	직업 활동	· 취업 상담 알선, 공공 일자리, 직업 유지
건강 의료	건강관리	· 식단관리, 전염병 예방, 운동관리, 수면관리, 약물 관리
	의료기관 이용	· 이용 정기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의료지원	· 응급상황 대응, 치료, 입원
옹호	위기대응지원	· 인권침해사건 대응, 사회서비스 이용 사고 대응, 금융사고 대응, 법률 및 구제지원
	의사결정지원	· 성년후견제도 및 신탁 연계, 권익옹호기관 이용, 공공후견인 지원
주거	주택계약	· 주택계약,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임대차계약 갱신
	입주지원	· 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가스/인터넷연결, 전입신고, 공적서비스 신청
	주택관리	· 편의시설 설치, 화재보험, 주택 유지보수,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출처: 2024년 서울시 주거서비스 사업안내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신청

○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 신청

- 수행기관은 자립대상자 결정 안내서를 받은 즉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직업재활시설 참여, 후견인 지정, 건강주치의 연계 등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사업 안내 지침 참조하여 신청
- * 수행기관은 시설에서 자립 할 대상자의 공적 서비스 연계 시 시설 퇴소 전 연계 완료 추진
- * 자립대상자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급여(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자립할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시설 전환 대상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누락 시 유선 연락 등 조치 필요)
- * 보장시설 퇴소 2개월 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전신청·조사 가능

〈사회보장급여 및 사전 신청 서비스 예시〉

구분	지원서비스	신청기관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일자리	-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기초단체 - 직업재활기관
보건의료지원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건강주치의제도, - 보조기기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별 의료기관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재산관리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익옹호	- 공공후견인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안심서비스	- 소방안전 및 재난 관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소방서 - 위탁운영기관

※ **(장애재판정 확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한 장애재판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중복장애 등록 및 장애 정도 상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 책정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의뢰 (영구장애로 등록된 경우 장애 재판정 불필요)

[재판정 필요 대상]

- 의무적 재판정 : 재판정 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재판정(담당공무원 안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연금, 수당 등 개인별 사업 신청을 위함
- * 장애연금 또는 수당이 기책정된 자는 불필요

참 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자 주요 연계

구분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유형별 대상		• 지역사회 거주하며 금전 관리 및 자기옹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일자리, 낮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주거전환, 의료 및 도전적 행동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 준비	주거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 시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자체) 자립정착금 지원 * 전국 광역 시도별 5백~15백만원 규모로 자체 지원 중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		
주간 활동 및 지역 사회 참여	자립지원 인력	• 지원유형별 배치(자립유지형 6인~8인, 자립지원형 3인~5인, 집중지원형 2인) • 사례관리 및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48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100시간 내외)		
		추가지원 없음	• 시범사업 추가 지원 (+월 20~40시간이하)	• 시범사업 추가지원 (+월 200시간 이하)
	일자리 참여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참여(선발 우대) • (본인희망시)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방문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의료지원비 1명당 40만원 • 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 시 보조기기 구매 지원 1명당 300만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 및 신탁서비스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지역주민활동 등 민간사업 등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안전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사업 연계		

* 음영은 '25년 시범사업 별도 예산지원 사항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

가. 재사정 평가

- 수행기관은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자립 목표 달성정도, 서비스 이행 상황 및 만족도, 자립대상자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이상 재사정 평가를 진행해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실시

나. 수행주체

- 수행기관(개인별 지원 회의)
 - * 필요한 경우 보호자, 활동지원사, 타서비스 사회복지사 등 자립대상자와 연계된 관계인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진행시기

- (모니터링) 수시
 - * 필요에 따라 진행
- (재사정 평가) 연 1회 이상

라. 주요 내용

- (모니터링) 심리적, 신체적, 서비스, 주택 등
- (재사정 평가) 대상자의 자립 목표 달성 정도, 연계된 자원 및 서비스의 적절성, 이행상황 및 삶의 질 만족도, 대상자의 욕구 및 변화에 따른 자립 재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필요 여부

마. 진행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기점검 및 상담으로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및 서비스 변경 등 진행
 - * [서식25]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서식26] 자립대상자 재사정평가지, [서식29] 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참조

바.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 재사정 평가 후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 개인별 지원회의를 실시하여 자립대상자 목표, 지원방법, 지원빈도, 연계자원, 지원 유형 변경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 재수립 한 개인별 지원계획서는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승인을 통해 자립대상자(보호자)에게 최종 안내

4 종결 및 사후관리

가. 종결 및 사후관리

- 자립지원이 종료 되었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통해 지자체가 지원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

나. 종결

1) 종결사유

- 대상자의 타 시·군·구 전출(관할 행정 외 지역)
- 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발적 서비스 거부 등

* 3개월 이상

※ 종결은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며 자립대상자 재선정 및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 필요

2) 종결절차

- 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회의 통해 종결사유, 대상자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결 심사회의 진행
- 수행기관은 종결심사서를 작성하여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자체가 결정

다. 사후관리

- 자립대상 지원이 종결된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종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무연고 대상자의 경우 2년)
- 모니터링 상담을 진행하여 대상자의 자립상황, 건강상태, 연계된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여부, 주거생활 등 모니터링
- 종결 대상자의 사후관리 결과보고는 자립지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보고
 - * [서식27]_자립지원 종결신청서, [서식28]_자립대상자 종결심사서 참조

5 개인정보 보호

가. 개인정보 보호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신청, 자립조사(육구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립신청자(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자립대상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6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 2, 발달장애인법 제18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정보의 활용,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 필요

다. 대상자 정보의 이용·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자립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권한이 없는 내·외부 관련자의 접근에 의한 정보훼손 및 유출에 대한 관리 필요
 - * 개인별 지원회의 등 자립조사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의 유출 주의
- 대상자의 정보는 정보의 주체와 주 사례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개인정보의 파기

- 자립대상자의 자립지원이 종결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더 이상 불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마. 비밀유지

- 시범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됨(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6 사고 대응체계(안) 수립

가. 수립 배경

- 시범사업 자립대상자에게 사고(학대, 범죄 피해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단계의 대응 체계(안) 수립 필요

나. 사전 예방 단계

1) 수행기관은 자립대상자 선정 이후 자립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이용 계약 진행

- 주택 공급 및 연계(주거전환 대상자), 지원자와의 관계, 이웃 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

〈자립대상자 서비스 이용계약 예시〉

- (목적)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와 수행기관 관계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과 주체별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의 내용
- (서비스 지원기간) : 서비스 지원 기간 및 연장 기간 명시 등
-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자립에 필요한 지원, 상호 지켜야 할 제반규칙, 사고와 문제에 대한 책임, 대상자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의 내용
- (수행기관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책임, 중재자, 동행자, 조력자 역할 등의 내용 등

2) 안전한 주거생활 관련 교육 실시

- 범죄(전자 금융사기, 학대 등), 안전한 주거생활(가스, 소화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보건 위생관리(감염, 식중독, 약물 오남용 등) 등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구성하여 교육
- 지역 경찰서, 소방서, 권익옹호기관, 병원 등 기관 연계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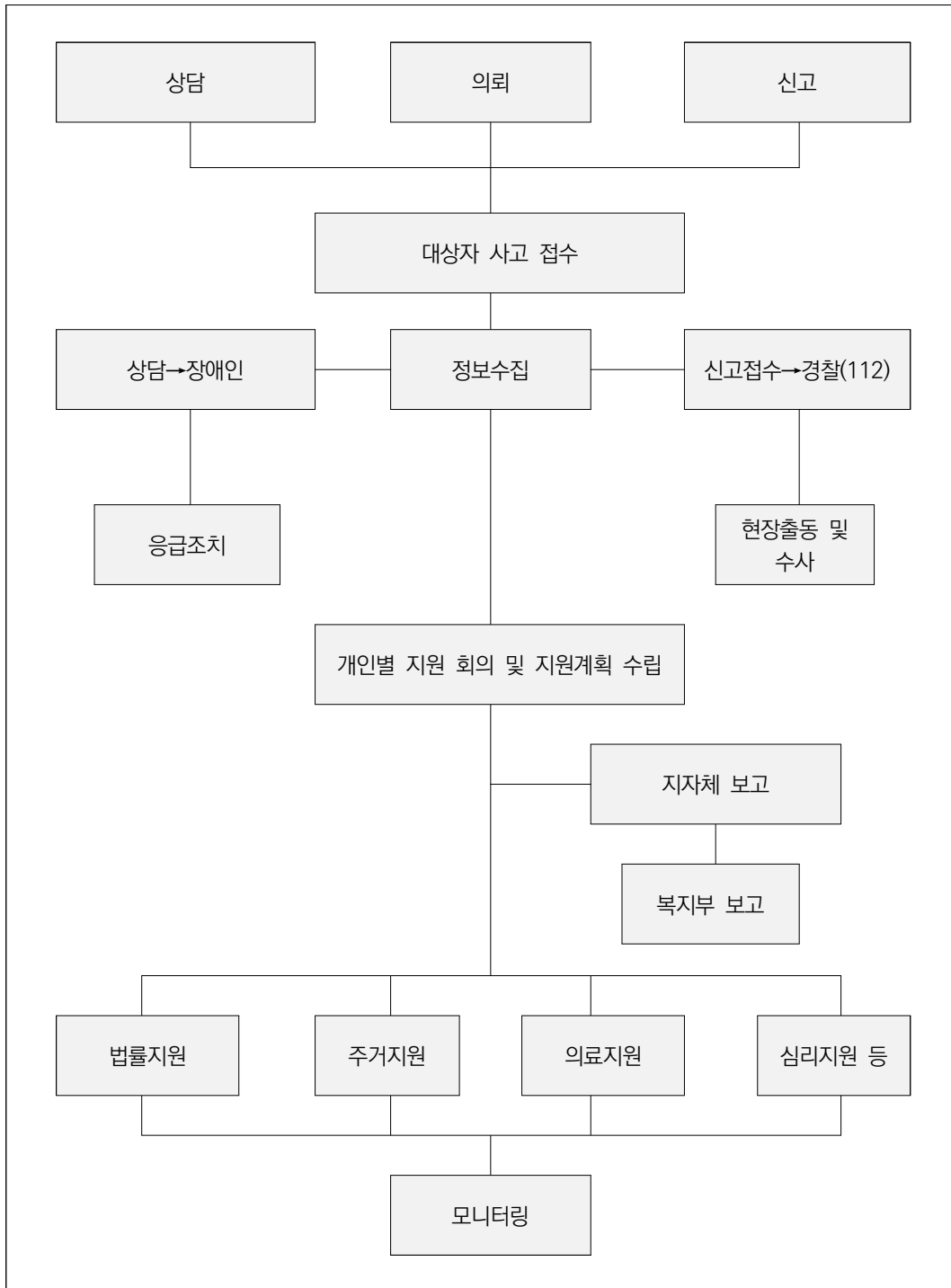
3) 사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확인

- 사기, 금전 피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및 필요 시 대상자 심층 면담 실시

다. 사후 조치 단계

- 지자체(수행기관)는 피해 상황 인지 및 우선 조치*
 - * 경찰신고, 피해 및 가해 상황, 병원 동행, 분리 조치, 관계기관 협의 등
- 사고 시 회복을 위한 절차별 조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시범사업 사고대응 절차 흐름도 예시 〉



제2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사고 발생 시 절차별 조치사항 〉

절차	절차별 조치사항
대상자 사고 접수	당사자,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등의 상담, 신고에 의한 사고 접수
정보수집 및 응급조치	- 기본정보(신고자,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경위, 피해자 및 가해자 현 상황, 위급성 및 심각성, 사고 관련 과거 이력 등) 확인 - 사고 관련 현장 증거 즉시 확인(사진, 동영상 등) - 수행기관은 확인된 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와 공유 - 지자체, 수행기관은 사고의 위급성,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여 분리조치, 응급조치 등 실시(쉼터, 병원 이송, 경찰서 신고, 권익옹호기관 연계 등)
사례 회의 및 지원계획 수립	- 사고유형에 따라 관계기관*과 사례 회의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 * 지자체,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변호사, 의료인 등 - 대상자가 가해자일 경우 법률상담 및 필요시 합의 과정 조력
상황 보고	- 시범사업 지침 서식(26. 사고보고서)을 활용하여 지자체에 보고 - 지자체는 사고 경위,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등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 * 필요시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한 대응
회복 지원 (대상자가 '피해' 사고로 추정)	- 법률지원 : 가해자 고소, 고발 /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등 - 주거지원 : 피해자 별도 거주지 마련(쉼터 등) - 의료지원 : 심리치료, 병원 동행, 의료비 지원 등 - 상담 및 교육 : 재발 방지를 위한 당사자 상담 및 교육 - 심리지원 : 상담 과정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동료 상담 등 - 권익지원 : 공공후견 및 신탁 등 지원
사건 지원 (대상자가 '가해' 사고로 추정)	- 법률지원 : 고소/ 고발 / 소송 등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국선변호사 선임 등) - 의료지원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통원·입원 치료비 지원 - 상담 및 교육 : 재발 방지를 위한 당사자 상담 및 교육 - 심리지원 : 상담 과정과 연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 권익지원 : 공공후견 및 신탁 등 지원
모니터링	(피해 사고) 회복 지원 상황점검 * 야간 추가 인력(전담인력, 활동지원사 등) 배치 등 (가해 사고) 사건 지원 상황 및 일생 생활 모니터링 * 야간 추가 인력(전담인력, 활동지원사 등) 배치, 상담, 교육 등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

V.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71
1. 시범사업 2025년 예산 개요	71
2. 세부 집행 기준	72
V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78
1. 전담인력 교육	78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80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81
VII. 자립지원 관련 정보	82
1. 자립지원 관련 정보	82
2. 공공임대주택 확보	91
3. 주거관련 제도	93

V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1 시범사업 2025년 예산 개요

▶ 2025년 전체 시범사업 예산

- 보조사업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국고 보조율 : 50%
- 보조 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 내역 : 총 10,66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구분	내역
인건비	• 자립지원 전담인력 기본급, 제수당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자산취득비 • 회의비 • 여비 등
사업비	(주요 기본제공 사업) • 주거환경조성비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비 • 보조기기 구매 지원 • 의료지원비 • 단기체험비 등

- * 지자체는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시 자립목표치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간 지역별 여건, 대상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배정 가능(탄력적 예산 배정 시 구체적 사유 및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 *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단기체험 과정 등)로 집행 가능
- * 국비 및 지방비 포함(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자체 예산 추가 편성 가능)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

2 세부 집행 기준

㉮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구분	내역	비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 기본급 : 4급5호봉 기본급 지원(호봉 인정 X) • 제수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비과세)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본사업 시행시 호봉인정 검토

- (기본급) 월 2,391,600원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보건복지부)-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4급 5호봉

- (제수당)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적용하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기본급의 60%, 설, 추석(연 2회)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등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고)

* 가족수당 지급 제외 : 국고 또는 지방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배우자의 근무 기관 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사항을 분기별 확인 필요,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시간외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대우수당,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 월 최대 20시간 인정, 단 자립대상자가 주택 입주 후 전담인력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야간·휴일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월 최대 30시간까지 인정(근로기준법 준수,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시간외 수당 집행 시 시간외 근무계획 →기관승인을 득하여 집행(대상자 긴급 지원으로 불가피한 경우 선 근무 후 승인)

* 대우수당 지급기준 : 월 5만원, 시범사업 만 1년 근속한 전담인력 대상으로 근속된 날의 익월부터 지급 가능

* 선임전담인력 수당 지급기준 : 월 10만원, 선임전담인력 대상으로 지급 가능(선임전담인력 선정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및 근무조건 등 참조)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전담인력 정액급식비 지급

- 퇴직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적립금 반환처리,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 가능
 -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운영비 : 자립지원 인력 1명당 월 40만원

- 시범사업과 무관한 운영비 집행 불가

구분	내역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합기 임대료, 수수료, 조사참여수당, 외부교육 참가비 등
회의비	• 회의 참가수당, 회의진행 다과비 등
여비	• 사업 수행 목적의 회의, 교육 등 출장 여비 등
자산취득비	• (신규채용 전담인력용) 책상, 컴퓨터 구입 등(에어컨, 냉장고 등 시범사업 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물품 제외)

- * (여비지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출장여비는 월 운영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외부교육 참여, 타 기관 견학, 직원 연수 및 워크숍 등 주최 또는 참여 시 사업계획서 첨부한 출장신청서 및 결과 보고(공무원 여비 기준 적용)
- * 자립조사 및 보호자 설명 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조사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태블릿 PC 구입 가능 (전담인력 1명당 1대 제한, 비품등록 등의 자산관리 필수)
- * 사무실 및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공간 임차료는 운영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단, 법인 또는 제공기관 소유 건물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존 임대료를 시범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
- * 주거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공과금 등)은 당사자 부담 원칙(단, 주택 계약 시 지정한 입주일에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실료는 시범사업비로 집행 가능)

○ 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간 지역별 여건, 대상자의 규모,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배정 가능

- (주거환경조성) 2025년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신규대상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화재예방, 위급 시 대피용 설비, 안심서비스(현관문 앞 보안 CCTV) 등 자립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의 설비 설치 및 집행(스프링클러, 방염벽지, 방염커튼, 소화기 등)

- 주택임대보증금 납부, 자립 초기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 구입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되, 자립정착금(지자체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닌 대상으로 소득 및 사회보장 정도 등 대상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 * 사전 협의 시 대상자의 주거 및 재정 상황, 필요 지원 내역 등 자료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명당 월평균 80시간

- 지자체 활동지원 추가지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유형에 따라 운영하되, 자립대상자의 장애 특성 및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 지원 가능(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시간 단가 16,620원(일반단가)
- * 시범사업 지원유형별 활동지원 추가지원 참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의거하여 시범사업 추가지원이 제한됨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대기자, 활동지원급여 제외대상자 등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시범사업 지원유형으로 지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시범사업 지원유형〉

구분		대상자	지원기간	지원유형(택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대기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대기중에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신청 후 급여 개시 전까지	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 자립유지형
활동지원급여 제외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결과 탈락)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도 수급 자격이 불인정 된 사람	- 자립대상자로 선정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자립지원형
	65세 이상 자립대상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장기요양수급자	생애 최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해 장기요양 급여로 자립을 유지하는 65세 이상 자립대상자	- 자립대상자로 선정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

구분	대상자	지원기간	지원유형(택1)
활동지원보전 급여 제외대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 활동지원보전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자립대상자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활동지원보전급여를 신청했으나 수급자격이 불인정 된 사람	- 자립대상자로 선정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시범 사업 종료시까지
			자립지원형

- * 6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시범사업 활동지원 추가지원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함(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보전급여 참조)
- * 자립지원 대상자 중 의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 활동지원 추가지원 가능(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기존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 추가지원 이외에 추가로 방문목욕·간호서비스 등 제공
- 유형별 지원(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을 통해 일상생활, 긴급상황 등 지원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연계(방문간호 및 장기요양 등 동일)

* 대상자에게 매칭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근로자로 파견 받아 매칭(자격, 교육 등 인력관리 책임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서식 활용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급여제공 일정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제공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방식)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행방식 결정
 - * **예시** 대상자에게 매칭된 활동지원사를 파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월 단위로 계좌이체 방식의 사업비 집행
- 자립지원 대상자에 시범사업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편성 가능

- (보조기기 구매 지원) 2025년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신규대상자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의료지원비) 대상자 1명당 40만원

-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 사업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검사비 지원 등)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그 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과 연계

○ (단기체험비 등) 활동지원서비스, 개별 단기체험비, 주택 마련 시 월세 지원 등 시범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구분	단기체험	참조
인건비	- 체험주택 2호당(2인 1실, 4명 입주)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지원	4:1배치 후 추가지원 필요 시
운영비	- 주택 마련에 따른 월세(지역별 시세에 따라 협의) 및 공과금 등 지원 - 회의 운영비,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의 수송비 및 수수료	
사업비	- 활동지원서비스 1일 12시간 (16,620원*12h*7일=1,396천원) - 개별 체험비 1일 5만원(식비, 다과비, 활동비 등) - 주택 마련에 따른 주거환경조성 지원(협의) - 자립교육 등	* 체험비 상한액 초과분은 자부담 및 지자체 추가지원 가능 * 개별세면도구 자부담

○ (지자체 추가지원) 지자체는 시범사업 지원 외의 추가적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지자체 추가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사업 운영 가능

○ (지도점검 실시)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수행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고발 접수 및 관련 정황을 인식한 경우 현장 지도 점검 수행 후 보건복지부에 즉시 결과를 보고

- 시정조치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 결과를 확인

* [서식32]_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서식33]_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 **(모니터링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등의 유형 선정기준, 지원시간 배정사유 등 지역별 서비스 기준 책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사업 기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서식 34]_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서식35]_시범사업 평가지표(안)

» 유의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기관 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보조금통합포탈 www.bojo.go.kr)을 사용하여야 함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품 등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비품 관리대장 및 취득자료 등(물품사진, 견적서 등)을 구비하고 철저히 관리(정기점검 및 현행화 등)해야 함
- 지자체는 수행기관이나 시범사업 대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VI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협조

1 전담인력 교육

가. 전담인력 교육

- **(목적)**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정에 대한 담당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운영
- **(교육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시범사업 실무책임자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상
- **(전문교육)**
 - (교육방식)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제공
 - (교육 내용) 기본교육, 심화교육

구분	교육과정		비고
	기본(이론+실무)	심화(연수)	
대상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자체 담당 공무원, 수행기관 실무책임자 참여 가능
교육주기	연 1회	연 1회	매년 필수 이수
교육일정	4월~5월 중	8월~9월 중	*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교육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나. 교육 내용

- **(기본교육)** - 시범사업의 이해, 자립지원 절차의 실제, 장애인복지 실천윤리, 자립 조사 및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학대예방, 통합 사례관리

- **(심화교육)** - 지원유형별 개인별 지원, 강점중심의 해결(사람중심교육), 주거유형별 (시설, 재가, 학대)의 지원방법, 트라우마 경감, 심리정서 지지를 통한 소진예방교육 (스트레스 관리, 감정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 중간관리자 교육 등

〈시범사업 전담인력 교육 과정 예시〉

구분		교육 내용	비고
기본교육	이론	시범사업의 이해	현장 컨설팅/ 집합 or 온라인 교육
		자립지원 절차의 실제	
		장애인복지 실천윤리	
		자립조사 및 상담	
		학대예방	
	실무	자립조사 및 상담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계획부터 지원까지	
		통합사례관리	
심화교육		지원유형별 개인별 지원	
		강점중심의 해결(사람중심 교육)	
		주거유형별 지원 방법	
		트라우마 경감	
		소진 예방(스트레스 관리, 감정관리 등)	
		사후관리	

- **(외부 기관 직무 관련 교육 및 자체교육)**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지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례관리 관련 외부기관 교육 등

- (사회서비스 연계 및 법정 의무 교육) 자립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 즉시 공적서비스 자격채정을 위한 신청서류·방법·채정기간 등의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개인정보, 직장내 성희롱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퇴직연금) 등 전담인력 및 읍·면·동 접수 담당자 교육 실시

* 제3편 VII. 자립지원 관련 정보 참고

- **(지자체 공무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
- **(자립조사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전담인력, 자립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전반의 운영과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 자립조사의 이해, 운영과정, 조사원의 역할, 조사 방법 등
 -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전담인력은 수행기관에서 자체 교육 실시

〈자립조사 교육과정 예시〉

구분	교육 내용	구분	비고
자립조사 교육과정	시범사업의 이해	외부조사원 참여과정	온라인 교육
	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자립조사 운영과정 및 조사 방법	외부조사원+ 전담인력참여 과정	
	자립조사원의 역할 및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2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가. 시범사업 컨설팅 지원

- **(목적)** 신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
- **(지원일정)** 2025. 3.~ 11.
- **(지원 대상 및 지원기관)**
 - (대상) 신규 지자체 및 수행기관
 -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운영방식)

- 시범사업 설명회, 자립조사 운영 등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

나.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목적) 시범사업 운영 과정, 목표 달성 및 운영 실태, 자립정착 상황, 만족도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로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체계 마련 등
- (운영일정) 2025년 연중
- (대상 및 진행기관)
 - (대상)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및 수행기관, 자립대상자
 - (진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내용)
 - 개인별 자립 정착 상황, 자립지원 경로 및 환경조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운영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

3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조 등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자립조사 계획,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전담인력 채용, 주택확보 현황,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 시범사업 대상자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경위 및 계획을 보고
- 자립대상자 관련 문서 및 파일, 취득자산 등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관리하게 된 자료, 물품 등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필요

VII 자립지원 관련 정보

1 자립지원 관련 정보

가.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3급 중복)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수준)

* 중전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내용) 기초급여(최대 342,510원)+부가급여(30,000~432,510원)

(‘25년 기준)

연령·소득계층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32,510원**	432,5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2,510원	-	342,5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50,000원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여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심사를 통한 장애정도 확인 필요. 장애심사 결과 장애등급 하향 또는 장애인등록 취소 가능하므로 주의 필요
(이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도 동일)

참고: 관계 공무원 직권신청 권고(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직권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제3편

행정 및 지원 사항

○ 장애수당(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월 6만원(재가인 경우 월 3만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관할 공무원 직권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 장애아동수당(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월 3만원~월 22만원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할 것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소득인정액)하여 기준 중위 소득 32%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 * 기준액(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
(‘25년 현재 1인가구 기준액 76만 5,444원)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25년 1인가구 114만 8,166원) 가구에 대하여 지역별 임대료 차등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 * 생계·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생계급여의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지급 제외)
- (시설입소자 자격관리) 시설수급자의 경우 퇴소즉시 거주할 주거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지에서 자격이 변경되었는지 자격(일반수급자)변경확인
 - *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때는 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정부양곡 신청 필요
- 주거급여자격 책정을 위해 주거급여 조사의뢰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대행)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여 감면 혜택 연계

나. 일자리 활동

○ 장애인일자리(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참고)

- (지원대상) **일반형**(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복지형**(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년도 기준 전공과 학생), **특화형**(18세 이상 시각, 발달 장애)
- (지원내용)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특화형**(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연계
- (신청방법) 매년 11월~12월경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 해당 시·군·구 모집공고 참조(시·군·구 필요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직업재활시설

- (지원대상) 일반사업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 (지원내용)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생활** 등 지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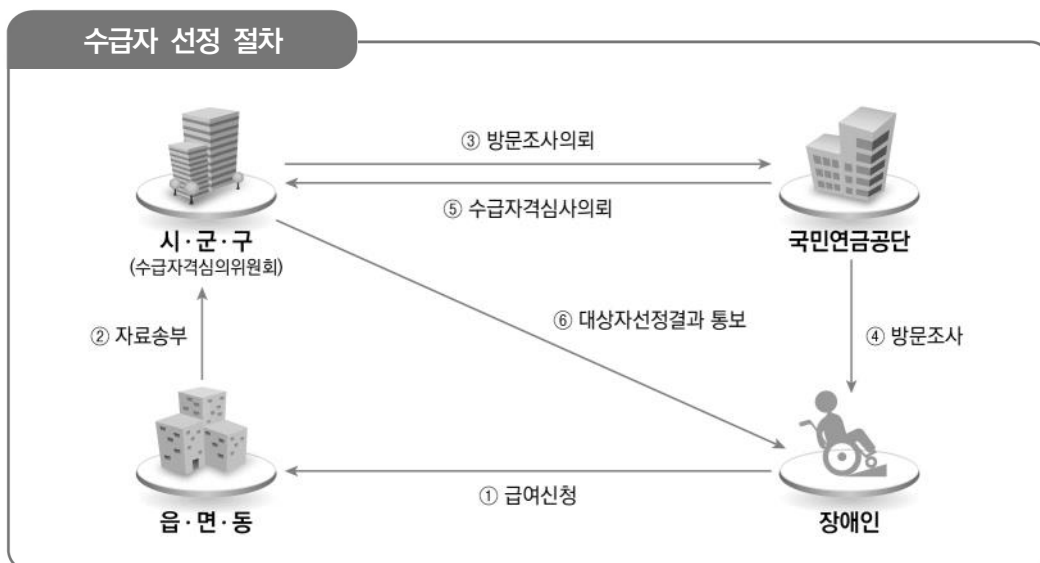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지원내용)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 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와 취업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소재 수행기관에 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가능)
 - * 지자체에 따라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인근 지역 수행기관에 신청 가능

다. 일상생활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방문목욕·간호서비스 등 제공

- ① (국비지원)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구간 판정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월별로 약 60시간~480시간 상당의 바우처 지원(주간 활동보조 급여비용 기준)
 - 신청 절차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직접 방문 및 팩스·우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 신청 후 서류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군·구(수급자격심의회)에서 급여 대상선정 및 통보



-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 신청 필요
- 긴급활동지원(등급결정전 60일), 시설퇴소 시 **특별지원급여 지원**(6개월, + 월 20시간)
- 시설거주 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필요한 병원 서류 등을 준비하고 최소 주거전환일 2개월 전 활동지원 신청
- ② **(지자체 추가지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와상, 자녀양육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지원 중
- ③ **(시범사업 추가지원)** 추가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지원유형별로 **추가지원을 통해 일상 생활지원, 긴급상황 등 지원**
 - 자립지원형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월 20~40시간 이하 범위에서 지원
 - 집중지원형은 월 200시간 이하 추가지원
 - * 사업비 지급은 지자체로 지원
 - * 제공일지 등 관련서식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서식 활용

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신청 가능(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낮 시간의 활동(독서, 산책, 체육, 음악, 미술 등)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 기본(132시간)·확장형(176시간) 2가지 유형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이용자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 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22시간 차감
 - 중복장애, 신변처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1인 집중지원 서비스 제공**
 - * 집중지원 서비스는 기본단가(16,620원)에 50%(8,310원)를 가산(24,930원)
 - (신청절차)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소요시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사회참여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전국 43개소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제공 중(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 제공기관에 신청

○ 장애인 생활체육

- (지원내용) 요가, 수영, 사이클 등 특수 전문 체육 종목들을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체육 지원

○ 지자체 자체사업

- (지원내용) 각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 중인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과 자조모임 지원 등

○ 민간연계

-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연계, 취미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식개선사업 활동 및 지역주민조직 활동(통·반장, 이웃관계 등)

* 공동체 형성 및 자조모임 등 권익옹호, 문화·생활체육 등 지원프로그램

바. 보건의료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지역장애인 등록관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등),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지원 연계(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장애인 건강증진, 교육사업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 운영 중

○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 (지원내용) 연 1회 1명당 40만원 비용 지원(시범사업 별도)

*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병원급 이상 19개소)과 연계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원내용) 전국 261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을 통해 사례관리, 자조 모임 참여 등 장애인 건강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지원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발달증진프로그램, 행동평가, 문제행동 프로그램, 부모교육,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언어평가 및 치료, 지역사회 연계 등

*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 내 12개소 지정

○ 건강주치의 제도

- (지원대상)
 - (건강주치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24.2.28.~)
 - (치과주치의) 중증장애인 +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 유형)
 - (건강주치의)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서비스(의원),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 주 장애관리서비스(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함께 받는 통합관리서비스(의원)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의료기관
 -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원 및 병원급)
- (서비스 내용)
 - (건강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방문서비스(진료+간호),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
 - (치과주치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 (주치의)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서 주치의 교육 신청 및 이수 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 (장애인)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www.nhis.or.kr)을 통해 이용할 주치의를 선택 후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받은 대상 지원
- (지원내용) 지역 보조기기 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 및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와 사례관리 서비스 등 지원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보조기기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명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기기 구매 지원(시범사업 별도)
- * 기존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의 대기수요 등 고려하여 시범사업 별도 지원
- 시범사업 대상자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참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1인당 1,500만원(중증장애인 2,000만원) 한도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ttps://hub.kead.or.kr>)

사. 권익옹호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대상) 의사결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법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 필요 대상 발굴부터 후견심판청구 등 전 과정 지원
-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비용(1명당 연 최대 50만원), 제3자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활동비 월 최대 50만원)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진행절차 :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후견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결정 → 서비스 이용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시설 거주 및 재가 발달장애인 등
- (지원내용) 신탁계약 및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asksupport@hanmail.net)으로 접수
 - * 신청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또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상담 : 1544-6912
 - 진행절차 : 서비스 신청 → 방문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설계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원대상) 학대 피해장애인 등 지원
- (지원내용)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 * 문의·상담 : 02-6951-179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https://www.naapd.or.kr>)

아. 야간 등 긴급상황 대응

○ 자립지원 전담인력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 야간 순회 및 긴급상황 대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취약가구가거나, 그 외 장애인은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화재·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의 연계*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벨 누를 수 있도록 사전 훈련, 장시간 실내 움직임 미감지 시 자립지원 전담인력 통해 확인

○ 지역기관 연계

- 소방서 안전 점검, 경찰서(또는 파출소) 등 협조요청

* **예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지역 내 경찰서에 실종예방 지문등록, 실종 시 긴급대처 요청 등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지원사, 이웃관계망 형성,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 개발 및 확산(서울시 야간순회서비스, 활동지원사 24시간 지원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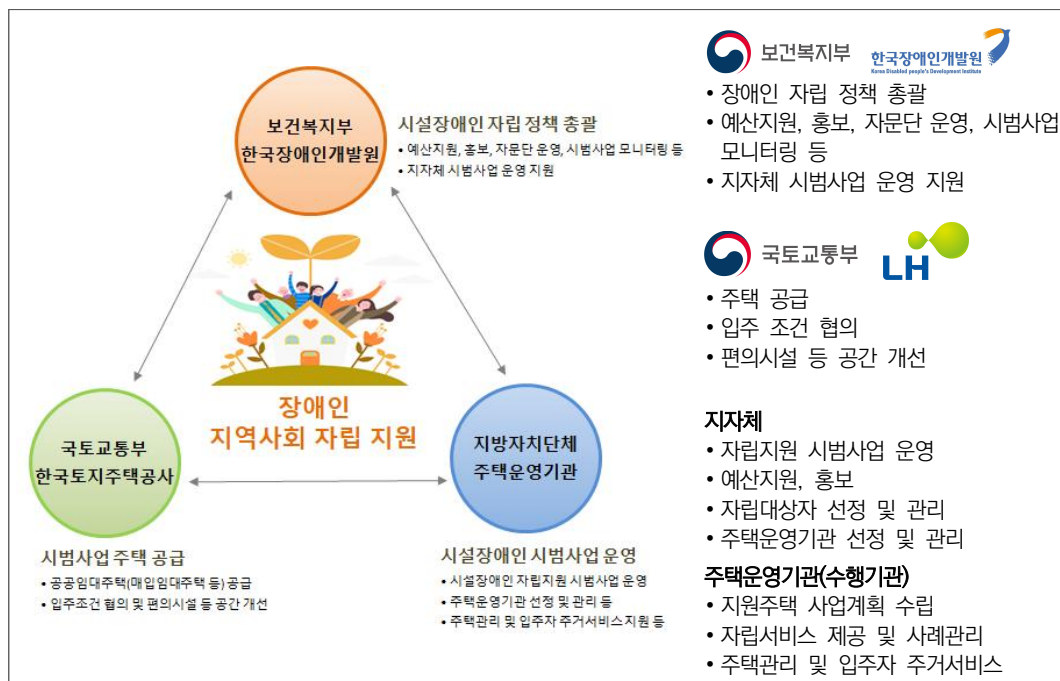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사업 연계

- 현관 문열림 도어센서 설치, 자립지원 전담인력 명함·키즈폰·배회감지기(GPS) 등 소지, 현관 앞 CCTV 설치 등

2 공공임대주택 확보

가. 주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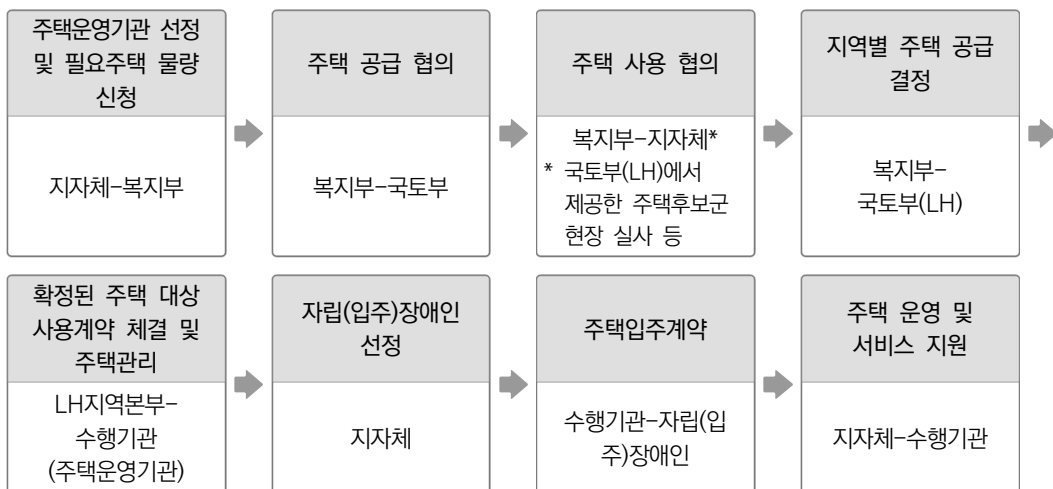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LH), 지자체는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력하여 자립대상자의 주거 전환을 위한 주택 확보·공급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교통부(LH) 협의

- ① 시범사업 목표량(지자체 수요)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지자체 → 복지부 → 국토부(LH))
-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LH ↔ 복지부, 지자체)
- ③ 주택 사용 계약(LH ↔ 지자체, 수행기관)
- ④ 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 ⑤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 자립(입주)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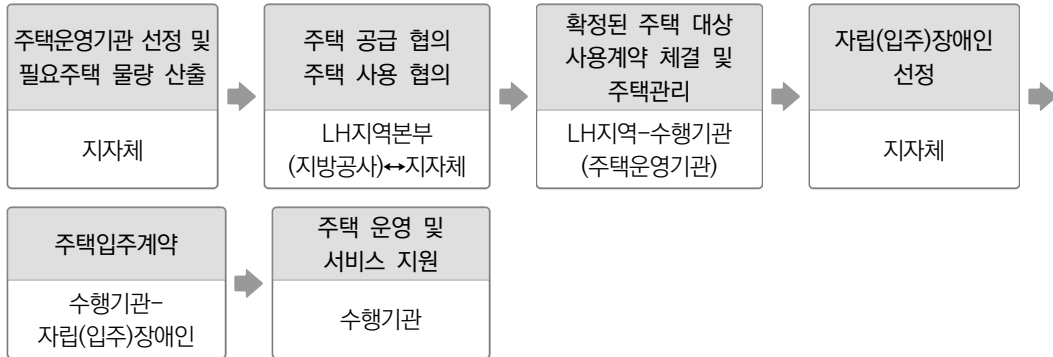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국토교통부(LH)-지자체(LH지역본부) 간 협의 절차〉



○ 지자체와 LH지역본부, 도시(개발) 공사 등 협의

- 지자체(수행기관)는 LH(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시범 사업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
- 지자체(수행기관)는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
 - ① 시범사업 목표량에 근거하여 주택 요청(지자체 → 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 ② 지역별 주택 공급 결정 및 사용 협의(LH지역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 지자체)
 - ③ 주택 사용 계약(LH지역본부 ↔ 수행기관) → 자립(입주)장애인 선정(지자체)
 - ④ 주택 입주 계약(수행기관 ↔ 자립(입주)장애인)

지자체와 LH지역본부, 도시(개발) 공사 등 협의절차



* 지자체는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주택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대상자가 거주할 임대주택의 계약 및 관리 등) 수행 능력을 고려

3 주거관련 제도

▶ 임대주택

- (사업개요)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직접 건설 또는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주택유형)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 임대	통합공공 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35~9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 임대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 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 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세 임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전세 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2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LH)

- 민간사업자가 LH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와 건축기준에 맞춰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여 준공 및 LH가 매입한 후, 테마에 맞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는 특화형 임대주택(특정테마형)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 ▶ 2023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 (규모) 20호 이상의 30호 이하의 집합화된 주택*
 -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
 - (전용면적*) 각 층에 청년 또는 일반유형 세대 50%와 장애인 세대 50%의 혼합세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36㎡ 이상으로 1.5룸 이상으로 계획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기준 적용
 - (입주대상) 시범사업 선정 장애인
 -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1.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라운지 등의 다목적공간과 등 장애인 돌봄공간 등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상주 지원인력을 위한 사무실 조성
 - 공사 계획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의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 ① 청년 + 예술창업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 ② 신혼부부 + 공동육아
(서울 중랑, 도란도란공동육아방)
- ③ 청년 + 귀농귀촌
(경남 함양, 아이토피아)
- ④ 장애인 + 자립지원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신청 후 입주까지 2~3년 소요, 중·장기적인 주택 확보방안으로 활용

* (사례) 사회복지법인이 LH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재활병원, 재활체육센터 등 장애인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과 5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주거급여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임차가구	자가 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1. 관련서식	101
2. 부록	172

관련 서식 안내

본 지침의 제공 서식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식으로 각 지자체 상황과 장애인 지원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하는 범위 내 수정 활용 가능합니다.

서식 NO	서 식 명	쪽수	비고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신청서	103	변경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확인서	105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06	
4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108	변경
5	자립조사지	109	변경
6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113	변경
7	개인별 지원 회의록	114	변경
8	자립지원 대기 목록 대장	115	신설
9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참고표	116	변경
10	초상권 사용 동의서	121	
11	단기체험 신청서	122	
12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123	
13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124	
14	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125	
15	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127	
16	단기체험 결과보고서	128	
17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133	변경
18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135	
19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료) 안내서	136	변경
20	이의신청서	137	신설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 NO	서 식 명	쪽수	비고
21	자립대상자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138	
22	자립대상자 인수인계 확인서	140	
23	서비스 의뢰 요청서	141	
24	자립대상자 개인별 지원 일지	142	
25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143	
26	자립대상자 재사정평가지	144	신설
27	자립지원 종결신청서	145	신설
28	자립대상자 종결심사서	146	신설
29	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147	
30	자립대상자 주택 안전 관리 점검표	148	변경
31	사고보고서	149	
32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150	변경
33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53	
34	시범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표	155	변경
35	시범사업 평가지표(안)	156	변경
36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58	
37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65	
부록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72	
	2.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신청 관련 법령	183	
	3.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189	

서식1

(2쪽 중 1쪽)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10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지자체장 / 수행기관장 귀하

(2쪽 중 제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장애인 자립지원 신청 및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 자립지원 신청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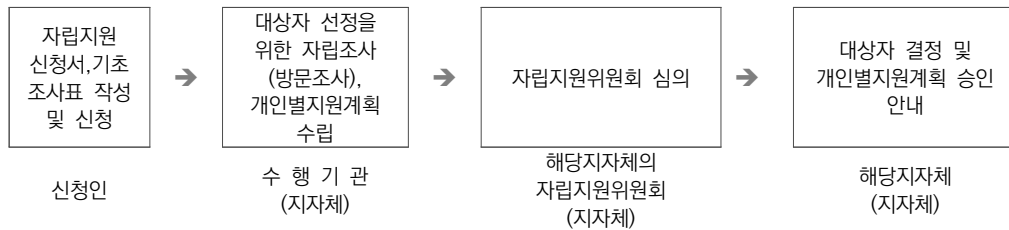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자립지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상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1. 신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2.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자립기초조사표

처리절차



서식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장애인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장애인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장애인 (본인) 인적사항	이 름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중복장애 :)	장애정도	[]심한 []심하지 않은
	보호자 (연고자)	(연락처:)	소득수준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입소시설	(연락처:)	시설거주기간
확인자 인적사항	이 름	소속 및 직위	장애인과의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사, []기타()
	이 름	소속 및 직위	장애인과의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사, []기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 선정 및 자립 신청을 위해 신청인 본인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상자 신청서 작성에 정서적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향 확인자1 (서명 또는 인)

의향 확인자2 (서명 또는 인)

〇〇〇지자체장 귀하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1. 최소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이 장애인 당사자 의사 파악 필요
2. 구비서류 : 자립신청서, 자립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자립 신청에 대한 의향 확인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역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서식 및 의학적 건강정보(질환, 수술병력, 복용약, 병원 진료, 도전적행동 등), 서비스 이용 실태(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정보 등, 입소경위 및 입소 희망 사유, 입소 및 지역사회 거주기간, 이용요금, 평일 주요 낮활동, 시설 및 지역 참여 프로그램, 거주시설 외 경험/기간 등) 등 시범사업 참여 및 연구 참여에 필요한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위한 내용 포함(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연계·조정 결과 등 포함) ③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이용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및 의료기관, (해당기관 추가 가능)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자립대상자 발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③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④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⑤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내	역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서식 및 의학적 건강정보(질환, 수술병력, 복용약, 병원 진료, 도전적행동 등), 서비스 이용 실태(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실태 정보 등, 입소경위 및 입소 희망 사유, 입소 및 지역사회 거주기간, 이용요금, 평일 주요 낮활동, 시설 및 지역 참여 프로그램, 거주시설 외 경험/기간 등) 등 시범사업 참여 및 연구 참여에 필요한 항목 *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위한 내용 포함(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연계·조정 결과 등 포함) ③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④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이용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자실시기관 및 의료기관, (해당기관 추가 가능)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자립대상자 발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③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애등록 여부 ④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⑤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서식4

자립지원 기초조사표(신청자 작성용)							
1. 성명				2. 성별	☐ 남자 ☐ 여자		
3. 연령		()세 (생년월일 : 년 월 일)		4. 등록 장애유형 및 정도 (중복장애유형)			
5. 장애인판정(서비스 자원 종합조사) 이력		① 재판정(서비스 자원 종합조사) 받은 적 있음(시기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 보조기기 신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추가가능표지 발급 ☐ 기타() ② 재판정(서비스 자원 종합조사) 받은 적 없음 ☐ 위 서비스 신청이력 없음 ③ 영구판정(시기 :)					
6. 보호 및 지지체계		①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 차상위가구 ☐ 일반 ②-1.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학대피해쉼터 ☐ 기타() * 시설 및 쉼터 거주기간(년 월 입소, 년 월 거주) ②-2. 재가(지역사회) ☐ 독거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다장애인(2인 이상) 가구 ☐ 형제자매가구 ☐ 장기투병(암등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가족 동반가구 ☐ 기타 가구()					
7. 건강		질한	☐ 유() ☐ 무	수술 경험	☐ 유() ☐ 무	복용 약	☐ 유() ☐ 무
		진료	☐ 유() ☐ 무	도전적 행동	☐ 유() ☐ 무	기타	
8. 의사소통		소통 수단	☐ 음성 ☐ 수어 ☐ 필담 ☐ AAC(보완 대체소통) ☐ 몸짓 ☐ 기타()	표현 정도	☐ 두 단어 이상 또는 문장 ☐ 명확한 단어 ☐ 불명료한 단어 ☐ 불분명한 소리	이해 정도	☐ 상대방 말 대부분 이해 ☐ 상대방 간단한 말 이해 ☐ 상대방 몸짓표현 이해 ☐ 상대방 억양, 톤 이해
9. 소득 구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조건부 수급자 ④ 긴급지원대상 ⑤ 기타() ⑥ 해당없음					
10. 타서비스 이용정도		1. 이용서비스명 () - 이용 기간 및 이용횟수(년 월~ 년 월, 주 3회) 2. 이용서비스명 () - 이용 기간 및 이용횟수(년 월~ 년 월, 주 3회)					
11. 재가 장애인 해당	11-1. 주거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단기임대 ⑤ 친·인척집 ⑥ 친구(자인)집 ⑦ 기타()					
	11-2. 주거 취약상황	① 지하주택 ② (아동에 제한이 있고)승강기 없는 2층 이상의 주택 ③ 곰팡이 등의 취약주택 ④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상당한 거리가 있는 주택 ⑤ 휴광이 인근 및 소음 등이 잦은 취약주택 ⑥ 기타() ⑦ 해당없음					
	11-3. 부양(돌봄) 상황(중복 선택가능)	☐ 고령 및 건강상, 경제적인 상황의 이유로 부양(돌봄) 어려운 상황 ☐ 장애인사자의 도전적 행동 등의 사유로 부양(돌봄) 어려운 상황 ☐ 부양(돌봄) 부담 및 보호자 부재가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사설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 ☐ 학대 등의 사유로 시설입소 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 ☐ 자립욕구가 강하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함 ☐ 기타상황()					
기타 상담 및 요구내용		<초기상담기록>* 접수자/상담자가 작성					
유의사항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자립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식5 자립조사지

I. 자립조사지

자립 기초조사는 현재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거주장애인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의 복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자립서비스 욕구 및 선호도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립조사 시작 전 읽어주세요

- ① 조사에 응하는 장애인이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장애인 당사자를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 ② 장애인 당사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호자 또는 시설종사자 등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야기를 시작해주세요
- ⑤ 장애인 당사자의 속도에 맞춰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자료(동영상, 그림자료, 이모티콘 등)를 활용해 이야기해 주세요.
- ⑥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기 소개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말, 필담, 도구, 몸짓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⑦ 자립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와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진심 어린 존중과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 인사나누기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000 님에게 자립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하러 자립지원 전담인력 000이에요.
- 000님 제가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하고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괜찮을까요?
- 혹시 대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 말로 하기 어렵거나 싫으시면 고개만 끄덕이셔도 괜찮아요. 글씨를 쓰시거나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으니 000 님이 좋은 방법으로 대답해주세요
- 그리고 000 님의 이야기를 옆에 계신 000 지원자(보호자)께 물어봐도 괜찮으실까요?
- 오늘 옆에 계신 000 지원자(보호자)님은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1. 기본정보

신청자(장애인)		성별/생년월일	
상담일시		장 소	
조사원 / 소속 및 직책		사전 준비사항	
1	000시 장애인복지과 000주무관	- 자립지원 신청서, 기초조사표, 초기상담지 - AAC도구, 심층조사지 등	
2	000기관 000전담인력		

2. 장애인 당사자의 강점(좋은 점)

문 항		조사기록
강점 좋은점	- 본인의 좋은 점 -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칭찬, 기분 좋은 말 - 나를 자랑한다면	

3. 장애인 당사자가 좋아하는 사람, 활동, 음식 등

문 항		조사기록
관계 사람	-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 가족 - 다투거나 불편한 사람	
감정 표현	-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음식	-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 음식점(식당)또는 배달 음식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 평소 자주 먹는 음식 - 생일이나 특별한 날 먹는 음식	
낯활동 취미, 교육, 직업	- 평일 주요 낯 활동 - 주말에 하는 활동 - 좋아하는 활동 -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	

4. 자립체험/ 지역사회 체험

문 항		조사기록
자립 체험 (경험)	- 자립체험 경험(기간, 내용, 장소등) - 자립한 친구(동료) 소식 - (시설 또는 자립)체험홈 이용 경험 -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등의 경험 - 자립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지역사회 경험	- 시설 또는 집 밖에서 경험한 지역사회 활동(여행, 외출-미용실, 식당, 노래방 등) -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 - 학교, 보호작업장 등의 경험	

5. 자립욕구 - 주거형태

문 항		조사기록
어떤 집에서 누구와 살고 싶나요?	- 시설 또는 집에서 나가고 싶은지(이유) - 혼자 살고 싶은지,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지 - 나의 집이 생긴다면, 나의 방을 한번 꾸며본다면 - 어떤 물건을 가장 갖고 싶은지 - 자유롭게 나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지	
	- 시설 또는 집에 계속 있고 싶을 경우 외출지원은 희망하는지 - 일주일 정도 단기체험을 했다가 자립하는 것은 - 자립에 걱정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6.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

문 항		조사기록
생활지원	- 화장실, 옷입기, 음식준비, 식사준비, 목욕, 가사 및 청소	
일자리지원	- 일자리 장소 이동, 동료와의 상호작용, 관리자와의 상호작용, 직무 습득 및 익힘정도, 직무 도움 얻기	
지역사회 활동	- 장소이동, 여가활동 참여, 공공서비스 접근 및 이용, 쇼핑 및 상품구매	
사회활동	- 타인과 함께 교류,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친목활동 및 사교활동, 적절한 사회기술 활용	
건강안전	- 약물복용, 보행 및 이동,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정신적 안녕 및 신체 건강 유지	
권익옹호	- 자기자신을 옹호, 선택과 결정하기,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돈관리 및 재정관리, 법적/시민적 책임수행	
그 외 필요한 지원	- 도전적 행동 등, 살면서 어려운 점, 힘든점 - 가족과의 관계, 갈등 상황 등	

7. 기타

문 항		조사기록
행복, 즐거움	- 지금 행복한지 - 어떤 때 가장 행복하거나 즐거웠는지	
자유로운 주제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예시) - 행복했던 추억, 기억에 남은 추억 - 슬펐던 일, 보고싶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 -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8.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조사

지원내용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점수
1	Ⅰ. 생활지원	1. 화장실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옷 입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음식 준비 및 식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목욕 및 개인위생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가사 및 청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Ⅱ. 일자리 지원	1. 일자리/직업 편의 접근 이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동료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관리자/코치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직무 습득 및 익힘 정도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직무 도움 얻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Ⅲ. 지역 사회 활동	1. 지역사회 내 장소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지역사회 여가활동 참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선호하는 지역사회 활동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공공서비스 접근 및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쇼핑 및 상품 구매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Ⅳ. 건강 및 안전지원	1. 약물복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보행 및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정신적 안녕 유지 및 신체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Ⅴ. 사회활동	1. 타인과 함께 교류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친목활동 및 시설 밖 사교활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적절한 사회기술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1	Ⅵ. 권익옹호	1. 자기자신을 옹호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2. 선택과 결정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3.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4. 돈 관리 및 재정관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5. 법적/시민적 책임 수행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자립욕구													욕구정도					점수
1	Ⅶ. 자립욕구	1. 시설 또는 집(원가정)에서 나가고 싶다.											0	1	2	3	4	
2		2. 혼자 또는 누군가(내가 원하는 사람)와 같이 살고 싶다.											0	1	2	3	4	
3		3. 나만의 집 또는 공간을 갖고 싶다.											0	1	2	3	4	
4		4. 자유롭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1	2	3	4	
5		5. 자립을 체험 또는 경험하고 싶다.											0	1	2	3	4	

서식6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자립조사 결과보고

		작성자(작성일)	()
성명		성별	
나이(생년월일)	만 세 (yyyy . mm . dd)	장애명·정도	
		의사소통수단	☐ 음성 ☐ 수어 ☐ 필담 ☐ AAC(보완대체소통) ☐ 몸짓 ☐ 기타()
거주유형	☐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학대피해쉼터 ☐ 재가장애인 ☐ 기타 ()		
작성자	☐ 조사원 1 : (성명, 소속, 직책) ☐ 조사원 2 : (성명, 소속, 직책)		

항목	기초조사 내용
초기상담 및 기초조사	- 장애재판정(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여부 - 보호 및 지지체계, 타서비스 이용 상황 - 주거상황 등
자립조사(방문조사)	- 당사자의 강점 - 자립체험, 지역사회 체험 -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 영역별 지원 필요도 - 자립욕구
조사원(전담인력) 종합의견 (지원방향 및 개별지원계획 등)	☐ 신청자의 지원 방향 및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 합의된 자립목표 - 서비스 및 자원 연계 계획 - 주거전환 계획(해당 시) ☐ 종합의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

첨부서류

1. 자립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3. 자립기초조사표
4. 자립조사지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7 개인별 지원 회의록

개인별 지원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지원단계	☐ 자립조사 ☐ 단기체험 ☐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 ☐ 주거전환 결정/변경 ☐ 서비스 모니터링/재사정 평가 ☐ 기타		
안전			
참석자	이름(소속) _____ 총 명		
회의내용	[대상사례 개요] - (가족사항) 조손가정 • ○○○(조부, 86세) 뇌경색으로 정기적 치료 • △△△(조모, 83세) 인공관절 수술환자로 거동이 불편, 관절염약복용 중 • □□□(손자, 21세, 남,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구등급 지적1급) 23년 2월 000특수학교 졸업 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로 000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하고 있음 - ○○○은 경제적 문제, 조모의 건강상태 등으로 000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 - □□□은 할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높고 본인이 돈을 벌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함 [주요 욕구와 문제] - 손자000의 자립 : 건강상의 문제 등을 호소하며 손자 000의 자립(돌봄)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음. - 자립능력향상 : □□□은 자립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전무하고 독립생활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일자리 : □□□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함. - 자산관리 : △△△은 손자의 장애로 인해 조부와 조모의 지원이 어려울 시 안정된 자산관리 등을 맡기고 싶어함.		
회의결과	[개입방안] - 자립목표 단기체험 지원 : 단기체험 통해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준비 지원 - 일자리 :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직활동 등 지원 - 자산관리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및 후견인 연계 고려		
향후계획	- 대상자 상담 추가진행 및 체험지원과정 안내 자료 제공 - 구체적 체험지원 과정 계획 수립		

서식8 자립지원 대기 목록대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지원 대기자 목록

연 번	신청인 (성명)	관계	연락처 (핸드폰)	장애인 (본인 신청의 경우 작성 불필요)		신청일	신청방법	신청사유 (주요육구)	접수처 (접수인)	비고 (대기 사유 등)
				성명	장애유형 (정도)					
1		☐ 본인 ☐ 보호자 ☐ 기타()				'25.0.00	☐ 방문 ☐ 유선 ☐ 기타()	☐ 자립 ☐ 당사자, 보호자 건강상이유 ☐ 경제적 어려움 ☐ 돌봄부담 ☐ 기타()	수행기관 (000)	
2										
3										
4										
5										
6										

※ 자립지원 대기자는 자립지원 신청 단계 시 필요서류* 함께 첨부
(자립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립기초조사표)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9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참고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참고표]

- 개인특성 영역, 지원필요도 영역, 종합평가 영역 3개 영역으로 구분
- 개인특성영역(연고유무, 주거형태,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의사소통)
 - 지원 필요도 영역(생활, 일자리, 지역사회활동, 건강 및 안전, 사회활동, 권익옹호, 자립욕구, 시급성)
 - 종합평가 영역(조사원 평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유형(정도)			신청자	☐ 본인 ☐ 가족() ☐ 공무원() ☐ 기타()	
접수방법	☐ 방문 ☐ 전화 ☐ 우편 ☐ 기타()		접수창구	☐ 지자체 ☐ 수행기관 ☐ 기타()	

영역	항목	세부항목	구분		
			하	중	상
Ⅰ. 개인특성 (기초조사표)	연고자	무연고			
		취안한 보호자			
		일반보호자			
	주거형태	시설장애인			
		확대파해장애인 (재가)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Ⅱ. 지원 필요도 (자립조사)	지원내용		지원유형	빈도	일일지원시간
	지원 요구 정도	생활지원			
		일자리지원			
		지역사회활동			
		건강 및 안전지원			
		사회활동			
		권익옹호			
	자립지원 욕구 정도				
	지원의 시급성 정도				
Ⅲ. 종합평가	조사원(전담인력) 평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참고표 활용 기준 설명]

영역	항목	활용기준												점수 (기본점)						
개인특성 (기본조사표)	연고자	- 무연고												상						
		- 취약한 보호자(보호자가 장애인, 중증질환자, 폭력가해자, 알코올중독자, 고령자, 분가한 형제·자매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보호자로서 기능적인 역할이 어려운 경우)												중						
		- 일반보호자(무연고, 취약한 보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												하						
	주거형태	- 시설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시설체험 등 집단거주시설)												상						
		- 학대피해장애인(보호자에 의한 학대, 시설 또는 지역사회 학대, 학대피해센터 입주자)												상						
		- (재가)장애인(재가장애인, 거주기간의 종료를 앞둔 임시거주 형태(체험) 거주자 등)												하						
	소득 및 재산	- 기초생활수급자												상						
		- 차상위												중						
		- 일반												하						
구분		자원유형					빈도					일일 자원시간								
		점수					계	점수					계	점수					계	
자원 필요도 (자립 조사)	1. 생활지원	1. 화장실 이용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옷 입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음식 준비 및 식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목욕 및 개인위생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가사 및 청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2. 일자리 지원	1. 일자리/직업 편의 접근 이용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동료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관리자/코치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직무 습득 및 익힘 정도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직무 도움 얻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지역 사회 활동	1. 지역사회 내 장소 이동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지역사회 여가활동 참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선호하는 지역사회 활동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공공서비스 접근 및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쇼핑 및 상품 구매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건강 및 안전지원	1. 약물복용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보행 및 이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정신적 안녕 유지 및 신체 유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사회활동	1. 타인과 함께 교류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친목활동 및 시설 밖 사회활동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적절한 사회기술 사용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구분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점수					계	점수					계	점수				
6 권익옹호	1. 자기자신을 옹호	0	1	2	3	4	(0-20)	0	1	2	3	4	(0-20)	0	1	2	3	4	(0-20)
	2. 선택과 결정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3.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4. 돈 관리 및 재정관리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5. 법적/사민적 책임 수행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자립의 욕구								욕구정도					점수(계)					
7. 자립욕구	1. 사설 또는 집원가정에서 나가고 싶다.						0	1	2	3	4	(0-20)							
	2. 혼자 또는 누군가(내가 원하는 사람)와 같이 살고 싶다.						0	1	2	3	4								
	3. 내만의 집 또는 공간을 갖고 싶다.						0	1	2	3	4								
	4. 자유롭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1	2	3	4								
	5. 자립을 체험 또는 경험하고 싶다.						0	1	2	3	4								
자립지원의 시급성								시급성 정도					점수(계)						
8. 시급성	자립지원의 시급성 정도						0	1	2	3	4	(0-4)							
지원필요도-지원요구정도			- 참고표에는 각 영역별 지원유형, 빈도, 지원시간의 합계 점수(0-20점) 작성 - 점수가 클수록 지원유형, 빈도, 지원시간 요구도가 높음																
자원의 시급성 정도			- 자립지원 시급성 정도를 다음 우선순위에 참고하여 작성 ※ 우선순위에 참고(예시)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장애인 - 장애특성 및 주 보호자의 고령, 건강문제,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거나,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는 고립 장애인 · 보호자 및 지지체계 없고 옹호 및 금전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종합평가	자립조사원		- 자립조사원의 종합의견 반영 - 자립시급성 우선순위에 관련 조사내용 작성																
대상자 선정 심의 적합성 및 지원 유형			- 적합 : 시범사업 대상자로 적합하여 자립유지, 자립지원, 집중지원 3가지 으로 의견 제출 - 인원이 많을 경우 고득점자 우선 - 동점일 경우 시설장애인파 자원의 시급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 부적합 : 시범사업 대상자로 부적합하여 타사업 및 타기관 연계 - 보류 : 시범사업 대상자로 적합 하나 가족반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심의 대상자 - 단기체험 : 시범사업 대상자로 적합 하나 단기체험 과정 후 재심의 대상자																

〈지원 필요도 조사〉

(SIS A를 일부 편집하여 제공하오니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게 대상자 지원 시 참고)

- 지원정도척도(Support Intensity Scale-A. Version)

- SIS A(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는 지적장애 또는 관련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상대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지적발달장애 학회에서 설계한 도구. 이는 사람 중심 계획 과정과 함께 사용되어 장애인의 요구와 선호에 반응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발하는 계획 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출처(AAIDD, 2015. Supports Intensity Scale Adult Version User's Manual: 1)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 작성방법〉

구분	내 용
지원 유형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0 : 지원 필요 없음 1 : 모니터링 필요(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여 그 사람이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2 : 언어 또는 제스처 자극을 요구하는 것 3 : 부분적으로 신체적 지원 필요 4 : 집중적인 유형의 신체적 지원 필요
빈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자주 지원이 필요한가? 0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1 :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특별한 지원 필요 2 : 주 단위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일은 아님 3 :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4 : 시간마다 그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함(추가 지원 없이는 한 시간도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냄)
일일 지원 시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일 총 지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0 : 지원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 지원이 필요한 평균적인 날에 30분 미만의 지원이 제공됨 2 : 30분에서 2시간 미만의 지원 시간 3 :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 : 지원이 필요한 날에 4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함
자립 욕구	해당 개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욕구와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0 : 욕구가 전혀 없음 1 : 욕구가 일부 있으나 낮음 2 : 욕구가 있고 보통 3 : 욕구가 있고 높음 4 : 욕구가 있고 매우 높음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참 고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 여부	☐ 유() ☐ 무	
거주유형	☐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학대피해쉼터 ☐ 재가장애인 ☐ 기타 ()				
심의결과					
대상자 선정 적합성	☐ 적합 ☐ 부적합 ☐ 보류 ☐ 단기체험				
대상자 지원유형	☐ 자립유지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종합의견					

심의일자 :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

위원 : (서명)

서식10 초상권 사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시 촬영된 대상자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사용 목적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홍보매체 및 인쇄물(브로셔,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물 등), 언론 매체(신문, 잡지 기사 등) 등 사업 홍보

■ 사용 형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참여 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위의 사항에 따라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귀 기관에 위임합니다.

초상권 주체 성명	성 명
예) 홍길동 (본인)	(서명 또는 인)

※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대상자에 한해 동의 필요

※ 본인(대리인) 동의에 의한 경우만 사용

년 월 일

000 지자체장 / 수행기관장 귀하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11 단기체험 신청서

단기체험 신청서

신청인	이 름	장애인과 관계 []법정대리인 []보호자 []기타()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신청자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장애유형	(중복장애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구, 급)	
	사용 보조기기	☐ 유 ☐ 무 (보조기기:)		소득수준	☐ 기초수급 ☐ 차상위 ☐ 일반	
	연고자	☐ 유 ☐ 무 (관계:)		주요특성	(개인별 주요 특성-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일자리, 지역사회 활동 등 간략)	
거주지 정보	시설명		부서		담당자	
	주 소				연락처	Tel : Fax :

위와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단기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2. 자립기초조사표, 자립조사지,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각 1부
------	--

서식12

개인별 단기체험 지원 계획서 및 동의서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상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계획된 단기체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20 . . .

신청인(대리신청인) : (인)
 담당자 : (인)
 수행기관 : (인)

수행/제공기관명 귀중

서식13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 개인별 단기체험 일정표 예시

시간	날짜/요일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8:00~09:00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09:00~10:00		주택 → 순천만 (기관차량)	숙소 → 주민센터 (도보)			외출 준비 및 만족도 조사
10:00~11:00	수행기관명 → 00의집 (기관차량)	순천만여행하기 (점심식사 공방 체험 카페)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받기	상담 및 개별 자립교육 (체험주택)	자립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체험주택)	숙소 → 자립주택 (기관차량)
11:00~12:00				점심 식사 (배달음식)	장보기 (주택 근처)	자립주택 (주택 둘러보기, 이야기 나누기)
12:00~13:00	점심 식사 (00의 집 근처)		지역사회 내 식당 및 카페 이용하기	집안일 해보기 (체험주택)	요리활동	00의집 복귀 및 점심 식사 (기관 차량)
13:00~14:00	협약서 작성 (00의집)			체험주택 → 000동 (대중교통)	체험주택 → 00IL센터 (대중교통)	
14:00~15:00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미용실 이용	자립선배(000님) 만나기 (카페가기, 이야기 나누기, 저녁식사)	자조모임 참여하기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15:00~16:00						
16:00~17:00	00의집 → 수행기관 (기관차량)	순천만 → 마트 (기관 차량)				
17:00~18:00	주택입주 (체험주택)	장보기 (주택 근처)	주택입주 (체험주택)			
18:00~19:00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요리활동 (밀키트)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000동 → 체험주택 (대중교통)	00IL센터 → 체험주택 (대중교통)	
19:00~20:00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21:00~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낮활동	000,000지원 / 00활동지원사 (20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야간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서식14 단기체험 사전·사후 설문지(장애인용)

- 설문방법 : 사전설문은 체험 초기상담 시 작성, 사후설문은 체험 과정 종료 후 총 2회 실시
- 설문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 설문내용 : 자립에 대한 이해, 활동 경험, 행복, 체험만족도

1. 자립에 대한 이해

내용	(0점)모른다↔ 잘 안다(3점)			
1. 누구나 자립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0	1	2	3
2. 다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나와 함께 살 사람, 내가 살 곳, 나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대인관계,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식	0	1	2	3
3. 나는 자립에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주택, 자립정착금 등)를 알고 있다.	0	1	2	3

2. 활동 경험

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식사) 식사준비, 식품구입과 준비, 식료품관리, 요리 등		
2. (의류) 적절한 의류 선택, 의류관리, 내가 입을 옷을 직접 선택하거나 구매		
3. (청소/세탁)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4. (사회참여) 지역사회 내 활동(동호회, 모임, 음악회, 공공기관 프로그램), 공공시설 이용 등 예. 모임이나 단체 가입 및 활동		
5. (이동방법 선택 및 이용) 길 찾기,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보 등의 선택 및 이용		
6. (활동보조) 가사 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외출동행) 등		
7. (지원제도) 지원 이용방법, 공공부조 등 복지관련 지원금, 행정, 공공기관 이용 등		
8. (상담/교육) 개별상담, 자립생활관련 교육, 직업교육 등		
9. (금전관리) 돈의 직접 지출, 가계부작성, 금전계산, 구매 등		
10. (관계 맺기)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 이해, 지역사회(이웃, 자원자, 복지 자원)에서 우정관계 맺기 등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3. 삶의 만족

3-1.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내용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5점)				
1. 나의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2. 나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3. 나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나의 사회적 친분관계(친구 및 이웃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7. 나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단기체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단기체험 주택(공간)	0	1	2	3	4
2. 단기체험 시기(기간)	0	1	2	3	4
3. 단기체험 지원 전담인력	0	1	2	3	4
4. 단기체험 프로그램	0	1	2	3	4
5. 활동지원서비스	0	1	2	3	4
6. 추가가능					

서식15 단기체험 설문지(보호자용)

- 설문시기 : 단기체험 과정 종료 후
- 설문방법 : 1)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가족 등)에게 단기체험 과정에 참여한 장애인의 체험 과정 결과 안내 2)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및 인터뷰
- 설문내용 : 단기체험 과정, 단기체험 참여 장애인의 변화 등

1. 단기체험 과정

내용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단기체험은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0	1	2	3	4
2. 단기체험은 시설 종사자 등 보호자(가족 등)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발달장애인 자립 등)	0	1	2	3	4
3. 단기체험 과정은 자립준비 등에 필요하다	0	1	2	3	4
4. 단기체험 후 장애인의 행동 및 변화가 있다	0	1	2	3	4
5. 단기체험 과정을 다른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족 등)에게 추천하겠다.					

2. 인터뷰(체험 전·후 비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체험 개선점 등)

- 단기체험에 참여한 장애인 생활의 변화(구체적)
- 체험 지원 과정의 개선사항
-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 추가가능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16 단기체험 결과보고서

1. 단기체험 개요

구 분	진행 개요
참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시설 또는 재가 등의 구분
진행기간	04/24(월) ~ 04/27(목)
진행장소	000 전역 , 000 일대
소요예산	금 000,000원
담당자	000 전담인력, 000전담인력

2. 지원인력 및 협력기관 운영계획

협력기관	성명	직책	활동시간	지원내용	비고
00수행기관 전담인력					
외부기관명1					
외부기관명2					

3. 진행 일정

내용		기간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0월 0주
단기체험 기획	체험자 상담, 시설 및 기관 협의 등	●	●			
단기체험 계획 수립	개인별 단기체험 계획수립 및 서비스 동의					
단기체험 진행	자립교육 및 선호하는 활동 등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립조사 및 만족도 평가 등 결과보고서 작성				●	●

4. 단기체험 일정

시간	날짜/요일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월 00일(0)
08:00~09:00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09:00~10:00		주택 → 순천만 (기관차량)	숙소 → 주민센터 (도보)	아침 식사 및 정리	아침 식사 및 정리	외출 준비 및 만족도 조사
10:00~11:00	수행기관명 → 00의집 (기관차량)	순천만여행하기 (점심식사 공방 체험 카페)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받기	상담 및 개별 자립교육 (체험주택)	자립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체험주택)	숙소 → 자립주택 (기관차량)
11:00~12:00						자립주택 (주택 둘러보기, 이야기 나누기)
12:00~13:00	점심 식사 (00의 집 근처)			점심 식사 (배달음식)	장보기 (주택 근처)	00의집 복귀 및 점심 식사 (기관 차량)
13:00~14:00	협약서 작성 (00의집)		지역사회 내 식당 및 카페 이용하기	집안일 해보기 (체험주택)	요리활동	
14:00~15:00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미용실 이용		체험주택 → 000동 (대중교통)	체험주택 → 00IL센터 (대중교통)	사례지원 회의 (00의집 00님, 전담인력00님)
15:00~16:00						
16:00~17:00	00의집 → 수행기관 (기관차량)	순천만 → 마트 (기관 차량)		자립선배(000님) 만나기 (카페가기, 이야기 나누기, 저녁식사)	자조모임 참여하기	
17:00~18:00	주택입주 (체험주택)	장보기 (주택 근처)	주택입주 (체험주택)			
18:00~19:00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요리활동 (밀키트)	저녁식사 (체험주택 인근식당)	000동 → 체험주택 (대중교통)	00IL센터 → 체험주택 (대중교통)	
19:00~20:00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익일 일정 확인 가계부 써보기	
21:00~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개인 활동 및 취침	
낮활동	000,000지원 / 00활동지원사 (20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09시~18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000 / 활동지원사 (19시~22시)	
야간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000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활동지원사 (22시~익일09시)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5. 진행 내용 및 결과

일 정	내용		
	진행 내용	참여자의 긍정	참여자의 어려움 등
00/00 (요일)	- 협약서 작성 - 자립조사(사전) - 사례회의 진행 - 전동휠체어 연습 - 저녁식사(김치찌개) - 일일 만족도조사 - 가계부 작성		
1일차 활동 사진			
00/00 (요일)	00공원 산책 점심식사(닭갈비) 뜨개질 공방체험 마트 장보기 저녁식사 (초밥) 일일 만족도 조사 가계부 작성		
2일차 활동 사진			
00/00 (요일)	- 요리활동(새우 감바스) - 집안일 해보기 (세탁기, 설거지 등) - 대중교통이용 (지하철, 저상버스) - 자립선배 만나기 - 일일 만족도 조사 - 가계부 작성하기		

일 정	내용		
	진행 내용	참여자의 긍정	참여자의 어려움 등
3일차 활동 사진			
00/00 (요일)	- 신속항원검사 받기 - 점심식사 - 가계부 작성하기 - 일일 만족도 조사 - 단기체험 소감		
4일차 활동 사진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6. 사업평가

1) 성과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평가도구	평가방법	계획	결과	달성율
1. 단기체험을 통하여 자립과 지역사회 삶을 이해한다.						
2. 자립 후의 삶의 모습을 당사자가 직접 그려보며 자립을 준비한다.						
3. 당사자 보호자가 당사자의 자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만족도 및 주요변화

00님에게 중요한 것 (주관적 선호)	00님을 위해 필요한 것 (객관적 필요)
1. 혼자 보내는 시간 2. 재활치료(걷기운동) 3. 뜨개질 4. 재택근무 5.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	1. 00님의 일상 속 새로운 도전 (대중교통 이용, 집안일 함께하기 등)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2. 00님에게 완벽한 일주일을 위한 주간 활동 (뜨개질 공방, 소규모 활동 등) 탐색 및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사전·사후 설문 내용 참고하여 작성(보호자 및 종사자는 사후 변화 기록)

사전 참여자/보호자/종사자 인터뷰	- 사전사후 자립 긍정도 등의 인식변화 (자립의 이해, 심리적 변화, 인식변화 등)
사후 참여자/보호자/종사자 인터뷰	
반영사항 및 향후 계획 (담당자 소견)	

7. 결산

항목 및 결산내역	예산	결산	증감	비고
- 체험활동비 50,000원×4일				
- 회의진행비 0,000원×7명×1회				
- 활동지원인력 (0/00~0/00) 16,150원×1명×33시간				
총계				

서식17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서

I. 대상자 기본 정보					
대상자 (장애인)	성명	홍길동	성별	☒ 남 ☐ 여	
	장애유형(중복)			생년월일(만 세)	
	거주유형	☐ 사설 ☐ 재가 ☐ 학대피해 ☐ 기타()			장애 정도(구 2 급)
	주민등록주소지 000도 000군 000읍 00번지				연락처(집/휴대전화) 000-000-0000
조사일	2025.0.0.	조사장소		조사원	☐ 조사자1 ☐ 조사자2 (성명, 소속, 직책)
수립일	2025.0.0.	수립차수	☐ 신규 ☐ 재수립 (00차)	작성자	
II. 자립조사 주요 결과					
자립조사 결과	1) 대상자의 자립의지 및 욕구				
	[☒]매우강함 []강함 []잘모름* []약함 []매우약함				
	* []기타()				
	2) 대상자의 자립의사표현				
	[☒]매우명확 []명확 []반복/무응답* []불분명 []매우불분명				
	* []기타()				
	3) 선호 서비스 우선순위(번호기입 - 3순위까지)				
	[①]나의집/공간 [②]시설밖생활 []여가·문화 [③]일자리/취업				
	[]사회적관계 []일상생활 []자립체험 []의사소통 지원				
	[]질환관리 []행동 및 심리지원 []기타 ()				
4) 지원 필요도 우선순위(번호기입 - 3순위까지)					
[①]생활지원 [②]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활동 [③]건강 및 안전지원					
[]사회활동 []권익옹호 []기타 ()					
대상자의 주요조사 결과	- 기초, 심층 조사의 주요 결과를 작성(당사자의 강점 및 주된 욕구와 선호도 중심)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Ⅲ. 개인별 자원 계획				
자립 목표 및 지원방안	주요 목표	서비스영역	연계자원	지원방법 및 빈도
지원유형	☐ 자립유지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사유 및 지원 내용> 스스로 의식주 관련의 개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자기 의사표현 및 능력이 원활함. 자립 시 일을 하고 싶고 혼자만의 주택과 공간을 원함에 따라 자립지원형으로 선정하였음			
유형별 자원계획	활동지원 추가지원	보조기기	의료비	기타
주거 지원계획	주택공급 등		☐ 공공주택 공급() ☐ 자택 활용 ☐ 기타()	
	주거환경 구성	재원	☐ 자립정착금 ☐ 시범사업비 ☐ 후원 및 자원연계 ☐ 자부담(본인) ☐ 기타 (가족 지원 등)	
		구성 계획	☐ 편의시설() ☐ 가전·가구 등의 초도물품() ☐ 기타()	
Ⅳ. 총평				
총평				

서식18

자립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종류	☐ 대면 ☐ 비대면(영상회의)		
회의종류	☐ 자립대상자 선정 심의 ☐ 자립대상자 지원유형 심의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 사후관리 ☐ 기타 ()		
안건			
참석자	성명/소속/ 직책 / 위원회 역할		
	총 명		
회의내용			
의결사항	대상자 선정 심의		
	대상자 유형변경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등		
진행사진			
기타사항 등			
첨부	* 자립지원위원회 0차 회의록 1부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19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결) 안내서

(앞쪽)			
자립대상자 결정(선정, 변경, 종결) 안내서			
심의 후 7일			
대 상 자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장애유형 및 정도(구, 급)
	주소		연락처(본인이 없을 경우 시설담당자)
수행기관	기관명	담당자(소속/직책/업무)	
	주소	연락처	
주거지	주거 유형(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재가장애인 등)		
	시설(기관)명 *재가는 주소지와 동일		주 보호자(소속/직책/업무)
	주소		연락처
결정(변경, 종결) 일자		결정 지원 유형 ☐ 자립유지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위와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로 결정 (선정, 변경,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장애인·보호자·수행기관·시설 귀하			

서식20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 대상자 선정 여부 [] 지원유형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과 관련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자체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사항	
- 자립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결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1 자립대상자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자립대상자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목록표

성명		생년월일		자립결정 (예정)일	
구분	연계자원	자원 세부내용	준비진행사항(구체적기록)	시행일정	완료 여부
지원기관					
주거					
지원인력					
사회보장 급여					
사회 서비스					
의료지원					
직업					
제공기관					
권익지원					
주말· 휴일지원					
추가자원1					
추가자원2					

대상자			000(남)		생년월일		1900.00.00.(만 00세)			
장애특성			심한장애 (구 지적장애 3급)		거주시설		00재활원 21년 거주 (00시 00구 000동)			
일상생활 영역				건강의료			식사균형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2022 4.1 ~ 현재	활동지원등급 12구간 (가형) 150시간	병원진료 (고혈압, 하지정맥, 허리디스크, 기관지염, 위염)		22. 4.1 ~ 현재	월 1회 병원 진료 진행 중	활동지원 사 지원 (1일 3식)	2022 04.01 ~ 현재	활동지원사를 통한 식사 지원 중/스스로 조리가능
	시비	2022 5.1 ~ 현재	자립 후 3년간 40시간 지원	수면 위장 내시경 진료		22. 09.06.	조직검사완료/ 역류성식도염/ 위장약복용중	-	-	-
	시범	2023.1.	자립지원형 40시간	건강검진		'23 중	건강검진예정	-	-	-
				장애인 치과 진료		11.28	틀니사용			
주된 욕구 및 강점						당사자 요청사항				
-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고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희망함. - 정기적인 은행 방문,금전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음. - 다양한 문화생활(특히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음. - 활동지원사 및 전담인력에게 수시로 전화통화를 시도함.						- 주택 내 자신의 방에 케이블TV 설치 - 국내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				
주택 관리			낮활동 및 사회생활			야간지원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서비스 목록	연계 일자	진행사항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2022. 04.20	5월 설치 완료	00000센터		2022.04.01. ~ 현재	프로그램 부분 참여	응급 알림	2022. 04.20	5월 설치 완료
소방 안전 시설		2022. 3월	2022.03.31. 입주 전 재난대피물품 구매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산책 등)		2022.04.01. ~ 현재	국내여행	IOT앱 사용	22.9	전담인력 확인용
편의 시설		2022. 3월	현관 로비 층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슬라이딩 도어							
재산관리서비스							공공후견인			
연금-재산관리		자립이후 즉시	재정상황표 구조화서식으로 전담인력이 관리(월2회)					수행기관측에서 지원중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22

자립대상자 인수인계 확인서

대상자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정도		
	주거형태	☐ 시설 ☐ 재가 ☐ 학대피해 ☐ 기타()	주소		
	대상자 결정일자		지원유형	☐ 자립유지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주택입주 (예정)일		주거환경 조성내용		
인수 인계 사항	인계자	성명		소속 및 직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인계자	성명		소속 및 직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대상자 건강 및 특성 관련 (예시)	- 대상자 건강 관련 인수인계(건강진단서, 소견서, 약복용, 이용병원 정보, 검진일정) - 대상자 특성 관련 인수인계(장애특성, 습관, 식사 상태 및 지원, 가족 상황, 지인 관계, 선호 활동 등) *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최근 건강검진결과, 진료 관련 등)는 반드시 확인			
	대상자 개인 물품	* 대상자 개인물품 등 인수인계(통장 및 도장, 카드, 개인 자료 등)			
	첨부	1. 개인물품 목록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전환 하는 000님의 관련 사항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인 소속 / 직책 / 성명 인수인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23 서비스 의뢰 요청서

서비스 의뢰 요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의뢰기관	기관명		연계수단	☐ 공문() ☐ 유선() ☐ 이메일() ☐ 방문() ☐ 기타()
	담당자		(직위/업무)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연계 접수기관	기관명		주요사업	
	담당자		(직위/업무)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의뢰 내용	대상자명		성별	
	장애특성 (유형/정도)		생년월일	
	주요사유		연락처	
세부내용	내용(서비스 의뢰, 협력사항 등)			
※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년 월 일 ○○○ 기관장 귀하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24 자립대상자 개인별 지원 일지

자립대상자 개인별 지원 일지 / 예시

결 재	담당	팀장	부장

서비스이용자	홍길동	생년월일	99.99.99	담당자 (전담인력)	김한국
관리주기	매일	관리주기 변동사항	22.12~23.5 매일 → 23.6월~23.9 주간(일자리 참여) → 23.10월 매일(퇴사)		

연번	일자	시간	사유	주요활동내용	향후 계획
1	2022-12-06	오전 10시	정기	이사지원	이사 등 가구배치와 새로운 환경 적응훈련 실시
2	2022-12-06	오후 9시	정기	취침지원	환경적응을 위해 함께 취침
3	2022-12-07	오전 12시	정기	식사확인	활동지원사 식사지원 식사의 질 등 확인
4	2022-12-07	오후 9시	정기	취침지원	함께 취침
5	2022-12-08	오전9시~ 오후18시	수시	현장체험	장애인복지관 현장 프로그램 참석(단풍놀이)
6					

서식25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자립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지

대상자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장애유형 및 정도		자립 선정일자	
모니터링 담당자	성 명		대상자 지원 시작일	
	소속 및 직책		연락처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모니터링 주요 내용		심리적	- 활동지원사와의 마찰 발생으로 변경 요청 있음. 재상담 추진 예정	
		신체적	- 당뇨로 인해 000병원 0월 0일, 00시 정기진료 예약사항 안내, 일 2회 당뇨약 복용 잘하고 있음	
		서비스	- 장애인일자리000복지관 근무 상황 확인 시 동료들과 관계 원만하고 일자리 만족도도 높음	
		주택	- 보일러 고장, 미온수가 나오질 않아 빠른 수리 요청	
		기타	- 활동지원사와의 추가상담 및 제공기관 의견 전달 예정	
모니터링 상담 및 조치사항		000 님은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와 정기적 병원진료(당뇨) 등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나 2개월 전에 매칭된 활동지원사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여 추가 상담 및 모니터링 필요함. 더불어 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나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아 수리 의뢰가 필요하여 조치할 예정임		
향후계획 (추가상담, 서비스 변경계획 여부, 서비스 추가 연계 예정 등)		- 1주일 내(~2024.0.00까지) 보일러 수리 요청 예정 - 정기적 병원 진료 동행 예정(000병원 0월 0일, 00시, 관내차량 지원 예정) - 활동지원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상담 예정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26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지

자립대상자 재사정 평가지

대상자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성 별		연락처	
	장애유형 및 정도		자립 선정일자	
	지원유형	☐ 자립유지형 ☐ 자립지원형 ☐ 집중지원형		
	시범사업 지원현황	☐ 활동지원서비스 총 : 시간 * 시범사업 추가지원 ()시간 국비 ()시간 도비 ()시간 시·군비 ()시간 ☐ 주택지원 : LH매입·전세임대, 지자체공사, 민간 등 ☐ 주거환경개선 : 항목, 금액, 지원횟수 등 ☐ 보조기기 : 항목, 금액, 지원횟수 등 ☐ 건강검진 : 항목, 금액, 지원횟수 등		
재사정 평가 주요 내용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내용 참고		주요목표 및 달성정도		
		연계 자원 (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주거	
			건강	
			일자리	
			⋮	
재사정 평가 상담 및 내용				
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 유형 변경 필요성, 지원 재수립,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연계 예정 등				

서식27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28 자립대상자 종결심사서

대상자명		생년월일		종결심사 사유	☐ 이새(타 지역) ☐ 자발적 거부 ☐ 기타()
주 담당자 (작성자)		소속/직급		연락처	
개인별 지원 목표 및 달성 정도	*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목표 달성 및 주요 성과				
자립 지원의 대상자 변화 (성과)					
종결심사 의견 (개인별 지원회의 결과)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자원 내용 기재				
첨부서류	1. 종결신청서 2. 종결심사 회의록 3. 사후 개인별 지원 계획서				
년 월 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서식29 자립대상자 삶의 질 만족도 조사지

- 거주시설에서의 삶의 질 또는 재가장애인(입소대기자 등)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직전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 요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나요? -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지원을 받으면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가요?					
○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 음식, 의복, 여가활동, 물건구입, 주간활동 등을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나요?					
○ 가족관계 - 현재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시나요? 만나는 횟수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친구들과의 관계 - 주변사람과 잘 지내시나요? -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하나요?					
○ 외부활동(밖에 나가기, 외출하기) -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습니까?					
○ 내가 하루 동안 하는 일 -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 않은지, 본인에게 맞는지, 낮 동안의 활동에 만족하나요?					
○ 음식 - 평소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나요? 만족스럽습니까?					
○ 행복 - 요즘 기분이 좋거나 즐겁습니까? -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습니까?					
○ 편안함 -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것은 있나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까?					
○ 안전 - 화재나 사고가 생길 경우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나에 대한 존중/대우 -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 -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 등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사생활 -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있습니까?					
○ 전반적인 삶의 질 - 내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Center for Outcome Analysis에서 개발된 거주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도구 Personal Life Quality Protocol(COA-PLQ), 박숙경 2021의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질 변화 중단 연구」 참고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30 자립대상자 주택 안전 관리 점검표

□ 주택 개요

주택주소	000주공 3단지 000동 000호	담당자 (연락처)	000
자립대상자		지원인력	000의 지원자(활동지원사) 000
			000의 지원자(활동지원사) 000
자립지원 전담인력		점검자	(인)
		점검일시	0000. 00. 00. (요일) 시간

□ 점검항목

구분	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등
가스 점검 · 화재 예방	- 가스(자동)차단기 누수 및 작동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보일러(배기통) 누수 및 환기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소화기(분말, 투척용), 단독경보형 작동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전기장판 및 선풍기, 전동휠체어 충전 등의 전원 확인	☐ 양호 ☐ 불량	
	- 가스사용, 보일러 사용, 화재 시 대피와 신고 등의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 양호 ☐ 불량	
보일러실 배기 및 환기	- 보일러실 배기 상태 및 환기구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충분한 환기 확인	☐ 양호 ☐ 불량	
기타	※ 주택 관리 및 특이사항 * 위급상황 대응훈련 시 기재(일정, 참여대상, 진행방법 등 간략기재, 대응훈련실시계획안 및 결과보고 별도 첨부)		

서식31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					
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고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자			사고시각	(오전 / 오후) 시 분	
사고유형 (중복체크)	☐ 화상 ☐ 베임/찢어짐 ☐ 금전사기 ☐ 찰과상 ☐ 호흡곤란/쇼크/질식 ☐ 도벽/손해배상 ☐ 염좌/골절/탈구 ☐ 물체에 끼임 ☐ 성추행 등 ☐ 낙상/추락/강타 ☐ 뇌경색/뇌출혈 등 ☐ 연락두절 ☐ 압박 ☐ 수술/입원 등 ☐ 기타()				
발견자(목격자)			조치사항		
보호자 연락	☐ 안함 ☐ 연락함 ☐ 해당없음 (※ 고지내용 기재)		연락시각	(오전 / 오후) 시 분	
소방서(경찰서) 등 신고	☐ 안함 ☐ 신고함 (오전 / 오후) 시 분				
사고 발생 장소	☐ 주택-거실 ☐ 주택-복도, 계단 ☐ 주택-화장실 ☐ 주택-부엌 ☐ 주택-커뮤니티실 ☐ 수행기관 ☐ 직장() ☐ 서비스이용장소() ☐ 기타()				
사고 당시 활동 내용	☐ 직장활동 ☐ 이동 ☐ 외출 등 ☐ 주택 내 활동(식사) 등 ☐ 연계기관 ☐ 기타()				
조치내용	(일시 및 장소, 조치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사고발생 건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의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00수행기관장/000 지자체장 (인)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32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향후 일부 변동 가능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시설 기준	입지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등)으로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	현장관찰		
	안내표시	수행기관을 알리는 간판, 유도표시 등 외부표지가 있다.			
	사무공간 및 상담실	사무공간 및 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시)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음성경보기, 보도블럭, 초인종, 자막안내 등			
조직 및 운영 실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위원 구성 및 개최 여부	위원회 회의록, 명단, 증빙서류		
		위원회 해당 구·군 소속의 담당 공무원 포함 및 참석 여부			
	인력운영	전담인력 운영의 적정성 ※ 지원유형별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업무분장표, 근무일지, 인사철 등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여부			
	(선임)전담인력 채용의 공정성	채용기준 명시화 및 공개채용 여부	채용서류철, 인사파일철, 근무대장 및 일지 등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여부			
		근로계약서, 인사철, 근무대장 등 비치여부			
	급여 및 수당 등 지급 적정성	검직 여부 및 급여 이중지급 여부	급여대장 등		
		수당 지급 (명절, 가족수당) 지급 여부			
		지침에 근거한 급여 지급 여부			
	직원교육	관리자를 포함한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 실시 여부	관련 계획서 및 평가 서류 등		
		직원교육 결과보고 실시 여부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예산 및 회계	수입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처리(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절한가?	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 통장		
	지출	계정 별도계리, 회계장부 별도 비치, 관리 여부			
		예산 편성 항목 적정성 여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2] 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목 편성 적정성 여부			
		목적사업과 무관한 지출 발생 여부 ※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수료, 경조사비 등			
		지출 서류 적정성 여부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산출기초조사서, 영수증 등 첨부 여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 적정성 및 지급 시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인적사항,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			
		강사 수당 등 원천징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회계관련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예·결산서, 통장내역 등 확인)		
		인건비 지원받는 직원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적립 및 적정 사용 여부			
		예산계획상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비율대로 집행 여부			
		예산 전용 규정 준수 여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 여부, 업무추진비 총당을 위해 다른 비목에서 전용 여부 등 확인			
		당초 보조금 편성비목 외 지출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 적립 여부 및 시설운영에 적정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점검영역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내용	점검결과	
				자체	구·군
사업 운영 정도	운영실적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노력 및 계획 대비 운영 실적 정도	사업 관련 문서 (계획서, 이용자 개인파일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실적 정도			
		지역사회 내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정도			
	주택관리	주택 및 시설물 관리 상태 정도	시설물관리 대장 (비품관리 대장), 주택 안전관리 점검표 등		
		집기 및 편의시설 관리 정도			
	안전체계 관리	안전체계 및 관리 정도(안전관리자 지정,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수립 등)			
		위급상황 등 교육 시행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만족 정도	대상자 개개인별의 계획 수립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이용자 참여방식 및 정도)	사업 관련 문서(계획서, 결과보고서, 대상자 개인파일 등)		
		서비스 만족도 점검 및 평가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이용자 참여방식 및 정도)			
		관련 회의체 여부 및 운영 정도			
		평가 및 환류(재사정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정도			
점 검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관련 서류 확인 후 작성 요망

서식33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0000시)

I. 점검개요

☐ 점검반 구성

○

☐ 점검 실시 일자

○

II.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기관명	지적사항	지적사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비고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Ⅲ. 총평 및 건의사항

☐ 점검결과 총평

☐ 우수사례(1건 이상 필수)

☐ 건의사항

서식34 시범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표

1. 모니터링 주요 지표

* 향후 일부 변동 가능

주요 지표		지표 설명
시범사업 지원체계 조성	지자체의 적극 행정 노력	- 자립지원 정책 시행 또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달체계(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인력 등) 및 민관협력(자립지원위원회 등), 안전지원체계 등의 구축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지역사회 내 시범사업 홍보 -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자립관련 정보제공
대상자 발굴	자립육구조사, 자립조사	- 자립희망자 발굴 및 자립신청과 상담과정 등의 경로 조성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및 대상자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 대상자 특성 및 선호 등을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선정된 장애인(대상자)과의 별도 상담내용 확인
	대상자 심의 등 선정	- 대상자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유형 등 심의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지자체) 등
	주택계약 및 입주(이주)지원	- 주택계약 및 입주(이주)지원 등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준비
	대상자 지원	-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 모니터링
	주거환경조성	- 대상자 특성 및 선호 등을 반영한 주거환경 조성
개인별자립 지원	지역정착 상황	- 대상자 선호도,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이용자 특성 반영한 상담진행 - 계획수립에 근거한 주거생활서비스 구성 및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만족도(건강상태, 적응정도 등), 주택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는 점검 과정 -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재수립 및 변경 신청 이력,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의견수렴	시범사업	- 시범사업 의견수렴
행정관리		- 수행기관 행정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 시범사업 관련 서류철 관리 및 보안체계 - 자산취득 관리 여부 - 예산집행 부진 시 향후 집행계획 마련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35 시범사업 평가지표(안)

* 향후 일부 변동 가능

영역	해당지표	설명
I. 시범사업 운영	I-1.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조성	I-1-1.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I-1-2. 지역 내 자립지원 체계 조성 및 연계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I-1-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I-1-4. 전담인력 전문성과 역량강화 • 직원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함
		I-1-5.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자립희망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서비스 연계상황 등 적정성을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I-1-6. 대상자 발굴 경로 조성 및 자립육구 조사 운영 • 대상자를 발굴 하기 위한 경로 조성, 자립육구 조사 표준화 운영 등
	I-2. 대상자 선정 및 지원	I-2-1. 자립신청 및 자립희망자 등 관리 • 자립 신청 및 접수 절차, 자립희망자, 자립 비희망자 등 발굴을 위한 자립지원 대기자 목록 관리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I-2-2.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 • 자립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사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따른 실천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I-2-3. 개인별 지원의 안정적 운영 • 지역사회 자립이 결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개인별 자립 지원이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함
		I-2-4. 주거환경조성 • 장애특성에 따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II. 시범사업 성과	II-1. (수행)서비스 제공기관 성과	II-1-1. (자립 장애인) 사업목표량 달성 • 사업목표량 달성 여부를 평가함
		II-1-2. (자립조사) 사업목표량 달성 • 사업목표량 달성 여부를 평가함
		II-1-3. (주택확보) 사업목표량 달성 • 사업목표량 달성 여부를 평가함
	II-2. 장애인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II-2-1.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적절성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평가함
		II-2-2. 정기적 모니터링 및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 변경 이력 • 정기적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등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변경 이력 관리 여부를 평가함

영역	해당지표	설명
Ⅲ.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Ⅲ. 회계 및 복무관리	Ⅲ-1. 사업계획 기반 예산 집행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지침 기반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내용 평가함
		Ⅲ-2. 직원 복무관리규정 준수 • 직원들의 복무관리규정 준수여부 평가함
Ⅳ. 지자체의 노력	Ⅳ. 지자체 노력 및 우수성	Ⅳ-1. 별도의 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 지자체의 별도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 노력을 평가함
		Ⅳ-2. (수행)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적절성 및 체계적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의 적절성 및 체계적 관리 여부를 평가함
		Ⅳ-3. 시범사업을 위한 적극 행정 노력 •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 행정 노력 여부를 평가함
Ⅴ. 가산점	Ⅴ. 전문성 평가	V-1. 자체평가의 정확성 확인 • 자체평가의 정확성을 평가함
		V-2. (중간관리자 인터뷰) 시범사업 운영 전반 파악 • 시범사업 운영 전반을 평가함
		V-3. (전담인력 인터뷰) 서비스의 질적 수준 파악 • 시범사업 수행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서식36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

*

☐ 기 추진 중인 자립지원 현황

○

-

*

☐ 시범사업 지원인력 현황

○ 총괄

(‘24.1.1. 기준)

구 분	직급	인원	직급	인원	비고
지자체					
수행기관					

☐ 조례 및 기본계획

○

□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관련 단체 등 현황

○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그룹홈, 단기 등 포함)

시설명	대표자 (임기)	정원 (현원)	주요 기능	설립일자

○ 관련 단체 등

단체명	대표자(임기)	주요 기능	설립일자

○ 체험홈(시설/자립 구분), 자립주택, 시범사업 주택 현황

구분	운영주체	수량	운영사업자	주요 기능	입주 지원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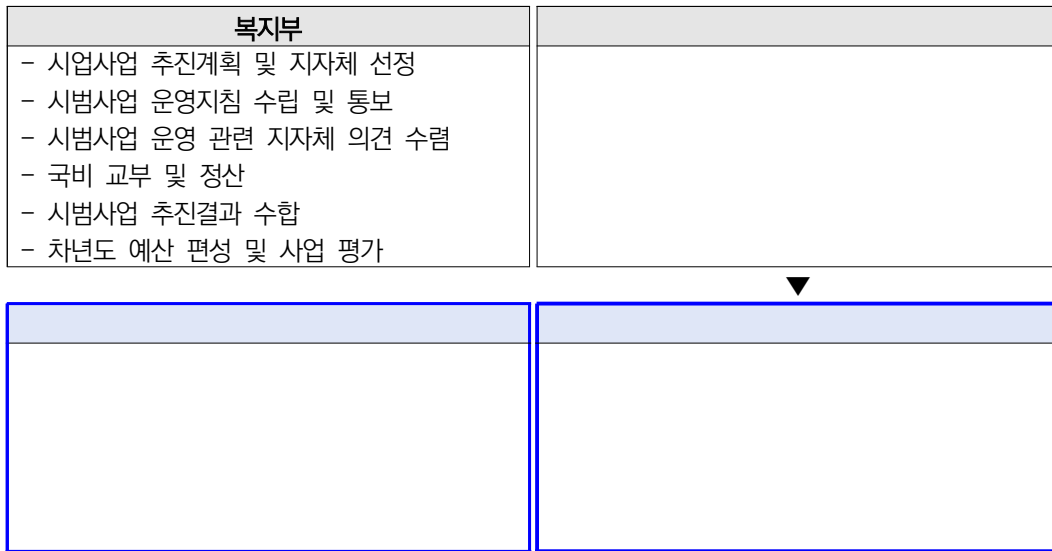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 사업운영 체계

- 운영 모형 : 지자체 주도형, 민관협력형(통합, 분리) 중 택1

< 운영 체계 흐름도 >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위)	성명	장애유무	자격기준	비고
위원장			유 (지체)	학계 전문가	
위원				거주시설 대표	민간
			유 (지체)	IL센터 대표	민간
				공무원	공무원

Ⅱ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1 2024년 주요 성과

□

○

—

*

2 2025년 추진계획

□ 사업 목표

(기간: '25.1.1.~'25.12.31.)

자립조사(명)	사업대상자 발굴(명)	자립지원위원회 개최(횟수)	신규 대상자 지원 (‘25년 신규, 명)
지역사회 자립 (누적, 명)	주택확보(호)	전담인력(명)	단기체험(명)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 월별 추진계획

분기	월	추진 내용
1분기	1월	
	2월	
	3월	
2분기	4월	
	5월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목표량, 대상자 발굴, 주거확보방안, 대상자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측정가능하도록 계량화하여 작성

○ 대상자 발굴방안

- 읍면동을 활용한 시범사업 신청 창구 마련

*

-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대상 간담회 추진

*

- 지역사회 내 홍보, 시설 협조, 단기체험 운영 등

*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 분기별 추진 등

*

- 주택 확보 계획 및 운영방안
 - LH지역본부, 지역공사 간 협업 계획 및 주택 확보 목표량, 확보된 주택 수량 및 내용(주소, 전용면적, 편의시설, 방 개수, 커뮤니티실, 체험주택 등 용도)
 - *
-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방안
 - 거주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협업체계, 정보제공 등
 - *
- 서비스 지원방안
 - 장애인 건강주치의/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시설 연계, 직업상담 및 교육,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연계, 활동지원 등
 - *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방안
 - 야간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소방서·경찰서 등 지역기관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 *
- 수행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 강화 방안
 - 채용 및 배치 등, 야간 대응 등
 - *
- 기타 - 지역별 추가 지원 등
 - 활동지원 추가지원 00시간, 자립정착금 00백만원 등
 - *

III 예산 현황

□ 전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계획(안)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기부담금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내역	보조 비목	보조세목	25년 예산	산출내역
합 계				
인건비	소 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운영비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		
	여비	국내여비		
사업비	소 계			
	사업비	활동지원		
		주거환경조성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기타		

서식37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025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담당자		
시도	부서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 E-mail:)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 E-mail:)
수행기관	기관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 E-mail:)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자	○○○○○○○(대표자 : ○○○)		
사 업 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5. ○○. ○○ ~ 2025. 12. 31.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국비	천원 (%)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추진내용 및 주요결과	○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대상, 추진결과(계량화) 등		
주요성과	○ (사업이 국가, 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추진 미흡사유 및 개선사항	○ ○		

2 사업 주요 실적

자립조사(명)	사업대상자 발굴(명)	자립지원위원회 개최(횟수)	신규 대상자 지원 (‘25년 신규, 명)
지역사회 자립 (누적, 명)	주택확보(호)	전담인력(명)	단기체험(명)

3 세부사업 추진성과

추진 내용	세부내용	실적(명or회or건)		사업비 (단위:천원)	주요성과
		실	연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4 자체평가

사업내용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주요결과

2 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액	비 고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기부담금					

2 비목별 총괄 집행 내역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합 계						
인건비	소 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운영비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				
		○○○○				
	여비	국내여비				
사업비	소 계					
	사업비	활동지원				
		주거환경조성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단기체험				
		기타				

3 일자별 집행내역

○ 인건비(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 운영비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 사업비 : 활동지원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 사업비 : 주거환경개선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 사업비 : 보조기기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 사업비 : 의료지원비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 사업비 : 단기체험과정 지원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계			

4 보조사업비 변동 현황

(단위 : 원)

당초 보조비목	변경 보조비목	변경 예산액	주요 변경사유	승인일자	비고 (공문번호 등)

5 비품구입 및 자산취득 내역

(단위 : 원)

연번	내용	예산비목	구입 일자	수량	구매처	구매방식	금액	구입사유 및 배치장소	비고
예시	데스크탑	자산취득비	23.0.0.	5	(주)이룸	나라장터 공개입찰	4,000,000	전담인력 업무용, 사무실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부록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 3. 1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11. 3. 30.]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4. 11. 4., 2016.

12. 30., 2017. 3. 27., 2018. 6. 19., 2018. 12. 31., 2021. 6. 29.)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8. 6. 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7. 10. 31.>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본조신설 2012. 1. 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1. 8. 31.>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6.>
-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2023. 9. 26.>

부록2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신청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 화장· 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3. 28.>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가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 2. 3., 2020. 12. 29.>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부록3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11개 대분류 35개 중분류>

□ 복지자원 표준분류표(대분류 11종, 중분류 35종)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 경제 (현금중심) (8)	1-1. 일자리 관련 비용지원	6. 일자리 (4)	6-1. 직업(유지)상담 및 알선
	1-2. 주거 관련 비용지원		6-2. 직업(유지)교육 및 훈련
	1-3. 의료비 지원		6-3. 일자리사업지원
	1-4. 일상생활 관련 비용지원		6-4. 창업지원
	1-5. 보호·돌봄·요양 관련 비용지원	7. 보육 및 교육 (3)	7-1. 양육지원
	1-6. 보육 및 교육 관련 비용지원		7-2. 학습지원
	1-7. 법률지원 관련 비용지원		7-3. 진로지도 및 상담
	1-8. 문화·여가 관련 비용지원	8.관계	*육구-자원 매칭을 위해 구성 (실제 분류 없음)
2. 신체적 건강 (5)	2-1. 건강증진	9. 안전 (2)	9-1. 안전 교육·점검
	2-2. 의약품·의약외품지원		9-2. 학대·폭력피해지원
	2-3. 검진 및 선별검사	10. 법률 및 권익보장 (2)	10-1. 인권교육
	2-4. 진단 및 치료		10-2. 법률상담
	2-5. 재활	11. 문화 및 여가 (2)	11-1. 문화복지
3. 정신적 건강 (4)	3-1. 정신건강 증진		11-2. 평생교육
	3-2. 검진 및 선별검사		
	3-3. 진단 및 치료		
	3-4.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4. 주거 (2)	4-1. 주거환경관리		
	4-2. 주거지 제공 및 이주 지원		
5. 일상생활 (3)	5-1. 일상생활 유지·돌봄지원		
	5-2. 시설보호		
	5-3. 경제생활 지원		

출처 : 행복이음 복지자원관리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 복지자원 표준분류 예제 및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1. 경제	1-1. 일자리 관련 비용지원	1-1-1 직업교육비 지원	- 학원등록비지원, 내일배움카드지원, 직업교육재료비지원, 자격증취득비지원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 등
		1-1-2. 자립비용지원	- 자립정착금지원(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원 등), 취약계층가구 경제적자립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창업자금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청년내일키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일이룸학교 등
	1-2. 주거 관련 비용지원	1-2-1. 주거비지원(임대료)	- 전세비지원(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등), 월세비지원(청년월세지원 등), 주거보증금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지원, 비주택거주자임차보증금지원(주거사다리지원사업, 비주택거주자주거상향사업 등), 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등
		1-2-2. 관리비지원	- 상하수도요금지원, 전기요금지원, 가스요금지원 등
		1-2-3. 이사비지원	- 기초수급자이사비용지원, 저소득장애인이사비지원, 주거약자 보금자리이사 서비스(보금자리이사비지원), 공인중개수수료 지원 등
		1-2-4. 냉·난방비지원(난방유 포함)	- 중장애인가구 냉·난방비지원, 사랑의 난방비사업(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지원(에너지바우처), 난방유지원, 보일러교체지원금 등
	1-3. 의료비 지원	1-3-1. 의료비	- 간병비, 의료비지원, 검사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난임 부부수술비지원), 정신과진료비용지원, 심리치료비용지원, 의료비감면, 출산비용지원(긴급복지해산비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등), 보건의료 현금지원(긴급복지의료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생아난청진단의료지원, 장애 입양아동의료비지원, 의료급여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 및 중독현금지원(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치료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진단검사비용지원 등), 신체건강현금지원(임산부건강관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노인안전검진및개안수술지원 등), 저소득장애인등록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지원, 종합건강검진비지원, 인공관절수술(비)연계 등
		1-3-2. 약제비	- 약제비지원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1-4. 일상생활 관련 비용지원	1-4-1. 생필수품비지원	- 식품품·비주류음료비, 주류·담배비, 의류·신발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상품·서비스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후원(지정기탁)현금, 공동모금회예치금(시군지정기탁), 장애수당, 각종후원금지원 등
		1-4-2. 조세공과금비	- 사회보장부담금, TV수신료, 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경감, 주민세면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국제감면(저소득층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등
	1-5. 보호·돌봄·요양 관련 비용지원	1-5-1. 가족돌봄비 지원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코로나19), 장기요양비, 요양비용지원 등
		1-5-2. 시설비 지원	- 보호시설비지원, 양로시설비지원, 요양시설비지원 등
	1-6. 보육 및 교육 관련 비용지원	1-6-1. 보육비지원	- 아동수당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보육료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양육비지원, 학교밖아동지원금(아동양육한시지원금(코로나19) 등), 학교밖청소년수당, 학교밖청소년교통비지원, 학교밖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코로나19), 다문화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등
		1-6-2. 교육유지비지원	- 장학금지원, 학원비지원, 급식비지원(학교급식비지원, 어린이집급식비지원 등), 교복비지원, 수학여행비지원,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1-7. 법률지원 관련 비용 지원	1-7-1. 법률지원 관련 비용 지원	- 법률구조대상자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료법률지원(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제증명서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재등록비지원(주민등록거주불명자재등록비지원, 주민등록알소자주민등록재등록지원) 등
2. 신체적 건강	2-1. 건강증진	2-1-1. 교육 및 상담	1-8. 문화 및 여가 관련 비용지원
			- 문화활동비용지원, 여가활동비용지원, 가족기념사진촬영, 가족여행비지원(어르신돌봄, 발달장애인 등) 등
			- 금연교육, 금연상담전화, 금주교육, 절주교육 및 학교금주교육, 영양교육, 영양 상담, 영양·식생활교육, 예비부모교육(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예비부부교실 등), 구강교육, 아토피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 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체성분석사 및 운동상담, 건강상담(인터넷건강상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동상담실, 건강한밥상, 튼튼한아이이유식상담 등), 보건 및 질병예방교육, 질병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위생교육,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 가정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질환상담, 건강정보제공, 보건정보 안내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2-1-2. 건강증진 프로그램	- 보건소금연클리닉, 병의원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대상별 운동프로그램, 순환운동프로그램, 취약아동 건강프로그램, 비만치료, 비만관리(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 비만예방관리, 임신부교실, 산전·후관리(산전·후간강관리), 임신·출산(축하/육아)용품지원, 임신부영유아영양보충,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후도우미, 투약관리, 건강관리(청년맞춤형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서비스(서울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헬스리셋프로젝트 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자조모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 건강행태 개선, 임신부·신생아 및 영유아건강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찾아가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 등) 등
		2-1-3. 예방접종	- 예방접종지원, 예방접종안내(영유아, 성인 등) 등
		2-1-4. 기타 건강증진활동	- 재난(코로나19) 상담 및 검사지원 등
	2-2. 의약품·의약외품지원	2-2-1. 건강·응급·의약외 의약품 지원	- 파스지원, 핫팩지원, 건강용품지원, 한혈증지원, 구급함지원, 안경지원, 보청기지원, 틀니지원, 기저귀지원, 여성위생용품(생리대지원, 저소득층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등), 마스크 등
		2-2-2. 의약품·한약 지원	- 영양보충제지원, 구충제지원, 알레르기질환지원, 보습제지원, 비상약품지원, 한약지원, 빈혈제지원 등
	2-3. 주거관련 비용지원	2-3-1.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조기진단, 발달검사(영유아발달검사) 등
		2-3-2. 학령기 건강검진	- 이동청소년검진, 발달검사(학령기), 학교박청소년건강검진 등
		2-3-3.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노인건강검진, 난청조기진단(노인) 등
		2-3-4. 암검진	- 암검진 등
		2-3-5.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선별검사	- 방문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검사, 활력증후측정 등
		2-3-6. 기타검진	- 특수질환건강진단 등
	2-4. 진단	2-4-1.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심혈관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 가정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 등
		2-4-2. 응급의료 연계	- 응급의료서비스, 응급이송지원, 응급실 등
		2-4-3. 외래진료 연계	- 일반진료, 촉탁의진료, 아토피치료, 저신장치료, 환경성질환 치료, 알레르기질환지원, 치과진료, 한방진료, 유전자검사 등
		2-4-4. 입원진료 연계	- 병동, 중환자실, 입원진료, 신체장애진단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2-5. 재활	2-5-1. 지역사회 재활	- 보건소프로그램(재활운동프로그램,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집콕재활운동교실), 오감만족 공예재활교실 등),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중도시각장애인/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등
		2-5-2. 외래진료	- 재활치료, 물리치료 (예시: 수치료, 감각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적외선치료, 전기치료, 통증치료, 온열 및 냉치료, 운동치료(스트레칭, 요가), 신체기능훈련, 청력훈련 등)
		2-5-3. 입원진료	- 재활치료 등
		2-5-4. 한방진료	- 수지침, 기타 한방치료 등
3. 정신적 건강	3-1. 정신건강 증진	3-1-1. 정신건강교육	- 정신건강증진교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생명존중 등), 우울증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 등
		3-1-2. 중독예방교육	- 알코올중독예방교육, 약물중독/오남용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도박 중독예방교육, 기타중독예방교육(가족치유모임 및 교육, 생애주기별중독예방 등) 등
		3-1-3. 인지기능증진교육	- 치매교육, 치매관리 등
	3-2. 검진 및 선별검사	3-2-1. 정신건강검진(선별검사)	- 우울증선별검사, 일반정신건강검진, 아동정신건강검진 등
		3-2-2. 중독건강검진(선별검사)	- 행위중독 검진/선별검사, 물질중독 검진/선별검사 등
		3-2-3. 치매검진(선별검사)	- 치매검진, 치매조기검진 등
	3-3. 진단 및 치료	3-3-1.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 정신질환자사례관리, 정신건강도탈케어서비스 등
		3-3-2. 정신건강 외래	-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진단검사,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 진단, 심리검사, 행위중독 진단검사(인터넷), 물질중독 진단검사, 특정 정신질환 관련 치료, 행위중독(도박/인터넷 등)치료, 물질중독(알코올/약물 등)치료정신과진료, 심리치료 등
		3-3-3. 정신건강 응급 및 입원 개입	- 정신질환개입, 중독개입, 입원(정신의료기관 입원의뢰, 정신과진료) 등
	3-4.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3-4-1. 상담	- 우울증상담, 자살예방상담, 알콜중독상담, 약물중독상담, 인터넷중독상담, 반려 동물지원(매개치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가족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비대면상담 등), 부부상담(부부친밀감플러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도탈케어서비스, 현장상담(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노인심리상담, 성인ADHD(성인ADHD클리닉, 심리교육, 인지행동치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심리·행동, ADHD), 트라우마치료지원(재난정신건강교육 등),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3-4-2. 집단개입	- 알코올중독재활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음악 치료, 멘토링, 대인관계훈련, 가족관계개선 지원, 놀이, 미술·원예·독서·음악·웃음치료, 복지관 멘토링, 사회적응훈련, 사회성향상지원, 무용치료, 지역내 치료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결연맺기, 말벗지원,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등), 사회적응대인관계 등
4. 주거	4-1. 주거환경관리	4-1-1. 주택개량	- 집수리지원(일반), 화장실개보수지원, 지붕개량지원, 도색·도배·장판지원, 누수·방수지원, 보일러교체·수리, 전기공사 및 점검, 방충망설치·수리, 가스공사 및 점검, 불량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관련서비스연계,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교체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등
		4-1-2. 주거내부 환경개선	- 청소지원(클린케어서비스, 깔끄미 등), 방역서비스, 방역장비 대여서비스, 정리정돈(집정리), 토탈홈케어서비스사업 등
	4-2. 주거지 제공 및 이주 지원	4-2-1. 임시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제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지원 등
		4-2-2. 임대주택지원	-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정 절차지원,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4-2-3. 이사지원	- 행복나눔보금자리무료이사지원, 공인중개사연결·알선 등
5. 돌봄	5-1. 일상생활 유지·돌봄지원	5-1-1. 가사·간병지원	- 가사지원, 식사지원, 도시락지원, 급식지원, 말벗지원, 세탁, 청소, 의류 및 침구관리, 물품관리, 정보기지원, 일상생활훈련 및 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돌봄SOS센터사업 등
		5-1-2. 위생지원(이미용 등)	- 개인위생관리, 목욕, 이마용지원, 위생용품지원(세척제, 위생 물수건, 화장지, 기저귀 등), 용변관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
		5-1-3. 이동지원	- 차량지원, 동행지원, 송영지원, 등하교지원, 실버카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
		5-1-4. 활동지원	- 수화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간호 등), 외국인통역서비스, 물품배송서비스, 개인 활동지원, 행정 및 일상업무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 등
		5-1-5. 보장구지원(의지, 보조기, 휠체어, 정형구두 등)	- 보장구지원(의지, 보조기, 휠체어, 정형구두 등), 보행보조기, 재활기구지원, 보장구대여, 보장구수리,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5-2. 시설보호.	5-2-1. 장·단기시설 보호	-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노숙인,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자), 가족쉼터(노숙인),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등
		5-2-2.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시설(아동, 장애인 등), 야간보호시설(노인, 아동 등), 단기보호센터, 노인/어르신유치원 등
	5-3. 경제생활 지원	5-3-1. 경제교육·정보제공	-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KDI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온라인), KDI경제정보센터 e경제정보, 금융복지상담센터(찾아가는 금융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등
		5-3-2. 생활용품지원 (단순물품지원)	- 가구지원·관리, 가전제품지원·관리, 상품권지원, 출산용품 지원, 청소용품지원, 의류지원, 침구지원, 냉·난방용품, 냉·난방용품관리, 아동·유아용품, 안전용품지원, 컴퓨터지원, 실종예방물품지원, 요양·돌봄관련 물품지원, 기타 생활용품 지원, 북한이탈주민생활필수품지원 사량의 그린PC보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5-3-3. 식료품 지원	- 도시락지원, 급식지원, 밑반찬지원, 쌀지원, 잡곡지원, 떡국 지원, 라면지원, 김치지원, 고기지원, 간식지원, 식·음료품지원, 식사관리, 외식지원, 기타 부식지원, 푸드마켓사업, 푸드뱅크사업 등
		5-3-4. 기타서비스연계·의뢰	- 공동모금회후원(지정기탁)현물, 공동모금회기획사업, 복지서비스정보물 제공, 생계유지활동지원, 생애이벤트지원, 시설대관서비스, 취약계층우대증발급, 공동모금회 후원의뢰 등
		5-3-5. 장제서비스	- 장제 관련 현금서비스(장제급여지원, 장례(비)지원 등), 장제 관련 기타서비스(임종교육, 영정사진촬영 등), 사망이후유류금품처리, 무연고자장제지원, 사후시보증금공탁서비스(무연고자사망시보증금의반환및공탁 등) 등
	6-1. 직업(유지)상담 및 알선	6-1-1. 직업(유지)상담 및 알선	- 직업 및 취업상담, 직업상담, 취업 후 상담, 퇴직 후 직업상담,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취업박람회 개최 등
	6-2. 직업(유지)교육 및 훈련	6-2-1. 직업검사	-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성검사 등
		6-2-2. 직업훈련 및 교육	- 직업 및 직장 체험, 직무교육, 보호작업장지원, 공동작업장지원, 직업재활훈련, 자격증취득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6-2-3. 취업후관리	- 취업자간담회, 취업자자조모임 등
6. 일자리	6-3. 일자리사업 지원	6-3-1. 자활근로사업	-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보장구 등 신체건강 및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물품지원 서비스
		6-3-2. 공공근로사업	- 지역자활센터연계 등

제4편

관련 서식 및 부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6-4. 창업지원	6-3-3. 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사회적일자리사업(공원유지관리사업, 보행안전지도사업, 보행안전도우미, 깨끗한 골목길 조성사업, 스크린교통안전차량 등),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구직등록, 50플러스일자리사업 등
		6-4-1. 창업관련 시설·현물지원	- 창업지원센터 입주서비스(서울),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구축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시설, 자금, 멘토링, 교육, 자원연계 등 지원), 청년등 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활동비용 등 지원) 등
		6-4-2. 창업관련 교육·기술지원	- 창업교육(창업스쿨, e-창업스쿨,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실전창업교육(창업진흥원) 등), 희망가게운영 등
7. 보육 및 교육	7-1. 양육지원	7-1-1. 양육상담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양육상담, 내방(또는 가정 방문)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플래너 등
		7-1-2. 부모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부모교육(클로버부모교육, 포괄적양육정보안내부모교육, 부모양육태도점검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이해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관리부모교육), 발달장애인부모교육지원,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등
		7-1-3. 보육·아동돌봄지원	- 방과후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 드림스타트, 어린이집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7-1-4. 입양상담 및 지원	-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입양부모교육(예비입양부모교육, 난임입양부모교육, 유자녀입양부모교육, 특수육아입양부모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온라인상담,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입양지원 프로그램(찾아가는 '문지방상담', '입양가족적응력 향상' 심리상담, '라이프북' 집단상담, 입양부모집단치유) 등
	7-2. 학습지원	7-2-1. 발달지원	- 인지학습치료, 발달검사, 언어발달지원사업, 점자교육, 수화교육, 장애특수교육, 다문화가정아동정서발달서비스(다문화가족자녀아동발달서비스,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7-2-2. 기초학력지원	- 기초학습지원, 독서논술지도, 학습지지원, 보충학습, 도서(대여)지원, 다문화한국어 교육, 방문학습지원,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교밖청소년맞춤형지원사업,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7-2-3. 비교과 학습지원	- 방과후교실, 봉사학습, 생활교육, 역사교실, 환경교육, 외국어교육, 예체능교육, 각종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지원, 코딩교육,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 집단교육프로그램(나눔교육, 배려교육 등) 등
		7-2-4. 학습용품지원	- 구재지원, 학용품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7-3. 진로지도 및 상담	7-3-1. 진로상담	-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상담, 워크넷 진로상담, 청소년진로상담,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7-3-2. 진로체험활동	- 진로탐색 및 체험, 의사소통능력향상기술지원, 학교생활 적응력향상지원, 아동 자아존중감 향상지원, 사회예절교육, 학업 및 학력복귀지원, 학교밖청소년인턴십지원, 내일아름 학교(학교밖청소년대상맞춤형직업교육) 등
8. 관계	육구 분류체계와 대분류 일치율을 위해 생성한 항목, 별도의 중분류/소분류 없음		
9. 안전	9-1. 안전 교육·점검	9-1-1. 안전교육·정보제공	-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학대 및 폭력예방교육(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회·재난안전정보제공, ICT 데이터 확인·점검 등
		9-1-2. 안전(관리) 확인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기적 안전확인, 지역사회알람서비스, 노숙인시설사후관리, 인적안전망(이장,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용 등), 실종예방물품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독거어르신 생활건강관리 솔루션사업(IoT) 등), 안전도우미 등
	9-2. 학대·폭력피해 지원	9-2-1. 학대 및 폭력피해 신고·접수	- 여성긴급전화1366(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신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연계 등
		9-2-2. 학대 및 폭력피해자 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성폭력상담(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폭력사이버상담, 가정폭력상담, 성매매피해상담 성희롱피해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정신보건센터 상담, 폭력피해자상담 등
		9-2-3. 학대 및 폭력피해자 시설지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시설입소지원, 성매매피해여성시설 입소지원, 폭력피해자쉼터입소지원 등
10. 법률 및 권익보장	10-1. 인권교육	10-1-1. 인권교육	- 아동권리교육, 노인인권교육,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가족 장애인차별인식개선 교육 등
		10-2-2. 권익보장지원	- 노인권익향상지원 등
	10-2. 법률상담	10-2-1. 법률상담 및 지원	-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지원, 신용회복절차지원, 채무상담(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채무상담센터 무료상담 등), 금융상담(공공재무 상담, 찾아가는 금융상담 등), 이혼법률상담, 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무료법률상담), 주민등록회복, 수급권신청, 장애등록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10-2-2. 법률교육·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북한이탈주민법문화교육, 청소년 법교육, 일반인 생활법률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각종법률 정보제공, 기타 법교육(비행청소년법교육, 학생자치법정, 기타 생활법률강의 등) 등
11. 문화 및 여가	11-1. 문화복지	11-1-1. 문화·여가·취미 활동지원	- 영화관람, 공연관람, 스포츠경기관람, 문화예술현장탐방, 문화 예술교육, 문화바우처사업, 미술관, 문화전시관람 등 공연·전시관람 지원, 스포츠바우처, 체육대회참여, 클럽 및 모임지원, 체육활동 물품지원, 생활체육활동 등 체육활동지원, 야외활동 지원, 동물원 및 놀이공원 견학, 캠프 및 여행지원, 체험활동 지원, 호도관광지원, 돌봄여행서비스 여행바우처 등 체험 및 여행지원, 음악교실, 미술교실, 요리교실, 바둑교실, 원예교실, 다도교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문화강좌 참여, 동아리활동, 공예교실, 노인여가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사물놀이, 예체능활동, 종교활동 등 취미활동지원, 인문학 프로그램, 각종 해외연수 및 해외탐방(저소득아동해외문화 탐방, 취약계층, 저소득층청소년해외문화탐방, 저소득층 자녀해외봉사활동지원 등), 다문화·저소득층자녀해외캠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11-2. 평생교육	11-2-1. 평생교육	- 정보화교육,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어르신 유치원, 은퇴준비교육, 외국어교육, 성인한글교실, 한자교육, 경제금융교육, 인문학강좌(노숙인), 예체능교육 등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